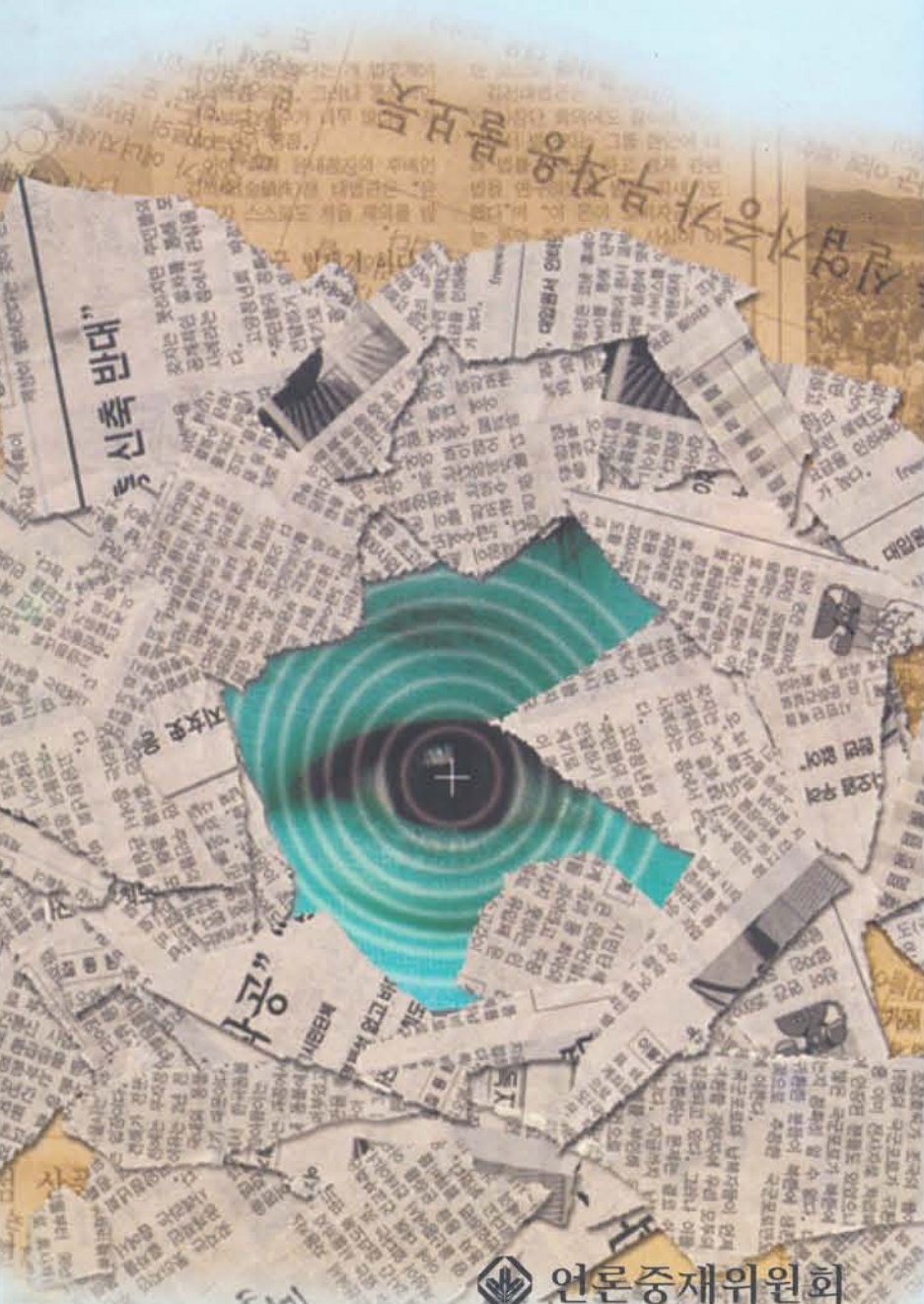


2000년 가을호

# 언론중재



## 특 집

언론윤리와 저널리즘의 위기

- 언론보도에 비친 언론윤리
- 취재현장과 언론윤리강령
- 수용자가 바라본 언론인 직업윤리

## 국내논문

-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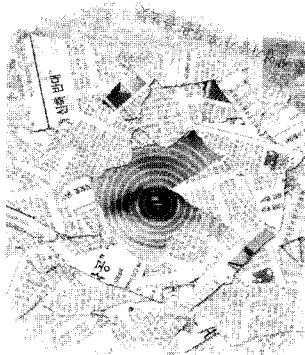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

2000. 가을

차 례



계간/2000년 가을호 • 제20권 • 제3호/통권76호  
 인쇄/2000년 9월 25일 • 발행/2000년 9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이 병 훈  
 인쇄인/김 행 술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정화인쇄주식회사

## 특 집

### 언론윤리와 저널리즘의 위기

- 4 • 언론보도에 비친 언론윤리 • 정걸진
- 16 • 취재현장과 언론윤리강령 • 오상석
- 25 • 수용자가 바라본 언론인 직업윤리 • 채수영

## 국내논문

- 33 •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 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 조준원

## 지방토론회

- 54 • 부산지방토론회  
오보의 발생과 대책 • 서정우

## 위원칼럼

- 62 • 인성이 더 요구되는 언론의 길 • 최광일

## 해외동향

64

## 자료

- 72 • 언론중재신청사례
- 108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38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60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위원회 소식

166

## 지상중계

168 • On-Line 중재상담실

-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특 집

언론윤리와 저널리즘의 위기

## 언론보도에 비친 언론윤리

### I. 서 언

언론이 지니고 있는 여러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보도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기능은 언론이 갖가지 다양한 사건이나 사실을 취재해 뉴스나 해설이라는 기사로 작성해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바로 이 언론매체가 보도하는 주요 사건이나 사고들에 관한 사실이나 내용을 읽고, 보거나 또는 듣는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기자들이 취재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한 뉴스를 접하고 사회현실을 인식한다.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뉴스를 통해 별다른 의심 없이 사회현실을 보는 것은 언론이 사회의 현상들을 올바르게, 진실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공정하게 전달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기자와 독자·시청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기자들은 독자·시청자들에게 사건이나 사고에 관한 보도를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공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독자나 시청자는 기자들의 보도가 '정직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보도'되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합의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읽고,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sup>1)</sup>

기자과 독자·시청자와의 묵시적 합의는 법적인 합의가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이면서도 윤리적인 합의이며, 나아가 언론과 국민과의 윤리적 합의이다. 국민은 언론을 믿고 사회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묵시적 합의로 언론에 맡겼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국민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의 힘으로 직접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대신해서 언론이 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해 주도록 그 역할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위임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계약서상의 책임이 아니라 신뢰와 신의를

### 정 결 진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조, 미국 미주리대 신문학 박사
- KBS, TBC 시청자 위원, 영남일보, 경상북도 자문위원
- 저서 : 『지역사회와 언론』(공저), 『글로벌 시대의 광고와 사회』(공저)
- 현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Mencher, Melvin. *News Reporting and Writing*, 6th ed. (Madison, Wisconsin: Web Brown & Benchmark Publishers, 1994), p.2.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언론에 대한 신뢰감 마저  
위기에 처해 있어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인 책임이다. 국민은 언제나 언론이 무엇보다 사회환경의 감시와 비판에 필요하고 또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러리라고 믿고 있다. 국민이 언론을 신뢰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항상 진실에 가까이 접근해서 최대한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을 국민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책임을 지고 있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을 언론은 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책임은 동시에 기자들의 책임인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기자가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기자들 자신의 양심만이 판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이나 사건을 진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는 책임은 기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윤리성이 강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런데 최근 들어 언론인들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의구심과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언론인의 직업윤리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양심과 윤리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언론인이라면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언론인 관련 비리사실들에 대해 지금 윤리강령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망연자실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어느 기자는 사전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는가 하면 다른 기자

는 기업의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챙기고, 언론사 사장이 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어느 주필은 땅 투기의 의혹을 사기도 하는가 하면, 지방의 모 방송국의 보도국장인 기업의 신제품을 홍보해주고 그 대가를 챙기기도 하고, 제작장비 구입과 관련해 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 모 방송국 기자의 경찰서 행패사건, 스포츠지 기자의 업체 여직원 성추행 의혹사건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사장에게 주식 양도를 요구해 많은 차익을 얻은 한 케이블 텔레비전 기사사건 등이 줄지어 발생했다. 무료 해외여행, 골프접대, 지역 건축업자를 공갈, 협박하여 이권에 개입한 지방지 기자들의 구속사태 등과 같은 사건도 올해 들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sup>3)</sup> 한마디로 언론인 비리사건들이 전에 없이 자주 터져 나와 우리 언론에 적신호가 켜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언론에 대한 신뢰감 마저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언론인이 관련된 비리사건을 넘어 언론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윤리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기사 가로채기, 기사 및 사진의 무단 도용, 기사내용의 표절, 광고 수주와 관련된 의도적인 비판기사를 게재한 사건 등이 언론 전문지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 사건 관련 기사 연출의혹과 환자사망 조작기사, 한

2) 팽원순, "보도와 기자윤리," 『언론인의 직업윤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87, pp. 98-99.

3) 언론인 비리관련기사는 언론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오늘』 2000년 8월 24일, 7월 27일, 7월 6일, 6월 29일, 6월 8일, 3월 9일, 2월 3일자 신문과 『기자협회보』 2000년 5월 29일, 2월 21일자 신문에 그 내용들이 보도되어 있다.

국전쟁 첩보요원 사진 오보 등 언론의 기사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sup>4)</sup>

언론인이 관계된 비리사건이나 기사내용을 왜곡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언론인이라면 지켜야 할 직업적인 사명감과 윤리의식의 결여, 더 나아가 언론인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 책임의식마저 망각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윤리의식과 도덕적 책임의식의 결여 뒤편에 감추어진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언론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언론인이 이권에 개입했을 경우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언론사 내에서의 제재, 혹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제나 처벌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표절이나 조작, 의도적 비판기사나 오보 등은 언론사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상업주의가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언론인들이 반드시 지켜 가야 할 국민과의 묵시적 합의의 근간이 되는 윤리적 책임과 그 책임이 허물어져 가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 언론보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1) 이해상충과 2) 기사의 표절문제를 중심으로 언론보도에 비쳐지는 언론 윤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언론인의 이해상충과 윤리

### 1. 언론인의 이해상충 상황

언론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권 개입의 유혹은 늘 있게 마련이다. 취재과정, 또는 보도과정에서 일반인들과는 달리 정보접근과 이용에서 그 우위에 있음이다. 때문에 언론인들은 기업을 비롯한 다른 이권당사자들이 유혹의 손길이 뻗치는 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때로는 자신이 언론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알게 모르게 이해관계에 얽혀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언론인들은 그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라는 상황에 놓여있게 된다.

언론인들이 처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해상충의 상황은 독자나 시청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언론사를 위해서 또 때로는 언론인 자신만을 위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때도 생겨난다. 독자나 시청자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흥미도가 많지 않는 기사이지만 기자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선택했을 때가 해당된다. 각종협회나 단체가 언론 보도에 대한 시상을 한다고 할 때 유혹의 손길은 있게 마련이다. 풀리처상을 수상하기 위해 어느 사진기자는 사람들이 죽어 가는 현장에서 보도할 사진을 찍는 데만 몰두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가

4) 기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진실되고 정확한 보도를 가로막는 내용을 다룬 기사는 『미디어 오늘』 2000년 7월 6일, 6월 29일, 6월 8일, 5월 25일, 5월 11일, 3월 23일, 3월 2일, 2월 24일, 1월 6일자 신문과 『기자협회보』 2000년 7월 3일, 6월 26일, 5월 29일자 신문에 그 내용이 보도되어 있다.

최근의 언론인 윤리 문제는 항응이나 무료여행의 수준을 넘어 미공개 주식정보의 이용이나 언론활동에서 발생한 본의 아닌 금융소득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점점 확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나 각종활동에 대한 취재 보도를 할 경우나 취재원과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은 있다.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기자 등 언론인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 기자로 있으면서 부업을 갖거나 영리행위에 종사하는 것, 문화나 스포츠단체에 임원으로 관여하는 것, 이권이나 청탁에 끼여드는 것 등도 이해상충에 해당된다. 또 기자라는 신분으로 잡지나 다른 미디어에 글을 쓰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국회에서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 등도 역시 이해상충과 관계되어 있다.

또 대개의 광고주들은 홍보성 기사를 실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종용하거나 자사의 기업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호의적으로 기사를 다루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광고주들은 또한 기꺼이 다양한 종류의 촌지를 건네거나 항응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물 게재와 관련된 압력을 행사한다.<sup>5)</sup> 정부기관도 크게 예외는 아니다. 이런 경우 기자에게는 이해상충이라는 윤리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최근 한 연구조사는 언론인의 65.6%가 한가지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사 편집 혹은 보도국 기자 3명 중 2명이 어떤 형태로든 촌지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촌지의 종류 중 항응과 접대가 39.5%로 가장 많았고, 선물 형태의 촌지도 32.9%로 나타나 항응·접대 및 선물이 촌지의 일반적 형태였다. 금전을 받은 기자는 18.9%, 무료티켓

15.5%, 취재관련 무료여행 9.7%, 취재와 무관한 외유성 여행 3.4%의 순으로 나타나 기자들이 윤리적 이해상충의 만연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외국의 경우도 크게 예외는 아니다. 광고주 혹은 조직기관의 촌지나 압력과 관계된 마이어(Meyer)의 조사보고는 조사에 참여한 언론인들 가운데 47%가 매년 수 차례에 걸쳐서 광고주의 촌지를 비롯한 직·간접적인 압력 때문에 윤리문제로 고민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런 압력은 광고의 의존도가 높고 언론사들 간의 광고경쟁이 심할 때 더 강화된다고 한다.<sup>7)</sup>

근래 들어 언론인들의 이해상충 상황은 항응이나 무료여행의 수준을 넘어 미공개 주식정보의 이용이나 언론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본의 아닌 금융소득에 이르기까지 그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sup>8)</sup>

언론인으로서 금융시장의 깊이와 넓이를 파악하고 있는 금융전문기자들은 금융문제와 증권투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에서 얻은 금융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유리한 정보를 보도하려는 유혹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중앙일보 기자가 보도자료를 입수한 직후 동생 명의로 그 주식에 투자한 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로 처벌을 받았고, 미국의 스마트 머니(Smart Money)지의 칼럼니스트 제임스 크래머(James J. Cramer)가 자신의

5) 김정기, "언론윤리의 발상전환," 『관후저널』, 제 72호, 1999년 가을, pp. 186-187.

6) 황치성, "한국언론인의 윤리식-제6회 언론인 의식 조사결과", 『신문과 방송』, 제 345호, 1999년 9월, pp.20-24.

7) Meyer, Phillip., *Ethical Journalism*, (New York: Longman, 1987), p.57.

8) 김정기, 앞의 글, p.193.

칼럼에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특정회사의 주식을 살 것을 추천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경우도 있었다.<sup>9)</sup>

언론인의 촌지 수수나 취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은 '이해의 상충'이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왜냐하면 이해의 상충이라는 상황에서 언론인이 윤리적 판단을 잘못할 경우 그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쳐 기사를 통해 표출되기 때문이다. 촌지를 건넨 광고주나 기관에 대해서 기사는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보도보다는 무엇인가 우호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사에 반영된다. 피해는 결국 언론인들과의 묵시적 합의를 믿고 있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 2. 이해 상충과 윤리강령

언론인들이 마주치는 '이해상충'의 상황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적인 규제보다는 윤리적인 판단과 도덕적 책임이 우선시 되고 있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타율적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이행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남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언론인이 스스로 책잡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언론인들에게 윤리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해상충'과 관계되는 윤리성의 강조

는 우리 나라는 물론 많은 나라들의 언론단체나 언론사들이 정한 윤리강령에 빠짐없이 규정되어 있다. 이해의 상충에 관해 한국기자협회는 그 윤리강령에서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언론 윤리강령 제15조 2항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한 증여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한 증여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금융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행동윤리에 대한 지침은 한국언론윤리강령 14조 조에서 기술하고 있다. 제14조 1항은 "기자는 편집자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기자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경우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한국언론윤리강령에 기술되어 있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조항들은 언론인으로서 기사의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 이해상충의 상황에 사로잡힐 경우 그것은 곧

9) Newman, K., "Walking tightrope," *American Journalism Review*, 18, 1996, pp.34-37.

언론인이 마주치는 이해상충의 상황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적인 규제보다는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이 우선시

보도되는 기사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해상충에 관해 미국 전문언론인협회의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언론인은 공중의 알 권리 이외의 다른 이익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부업을 갖거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공직이나 사회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 등은 언론인 자신과 신문사의 위신을 해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피해야 한다. 언론인은 현실적이든 외형적이든 이해의 충돌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생활도 영위해야 한다. 공중에 대한 그의 책임은 지상의 것이며 그것이 그들 직업의 성격이다.

영국의 전국기자연맹 행동강령에도 "언론인은 뇌물을 받아서도 아니 되며 기타 다른 유혹수단들이 그의 직무상 임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도 아니 된다. 언론인은 그의 임무 중 입수한 정보가 공포되기 전에 그러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의 언론인 윤리규정이나 행동강령에는 어떤 형태로든 언론인이 취재와 보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에 얽혀 들지 말 것을 선언해 놓고 있다<sup>10)</sup>

이들 주요 각국의 언론윤리강령에서 이해상충과 관련해 자세하게 나름의 지침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언론이 행해야 할 책무인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보도를 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이 쌓아

온 신뢰와 명성을 지켜가고 언론인들의 품위를 스스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언론의 보도에서 보다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언론이 기사를 보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막아보자는 의도이다.

### 3. 이해 상충에 대한 제재

언론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주요 언론사들은 나름대로의 이해상충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sup>11)</sup>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국내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여기고 있는 식사접대를 뇌물의 형태로 보고 있으며, 선물의 상한선도 5달러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그 이상의 선물은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선물제공자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어 언론인의 보도와 관계된 이해상충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를 비롯한 해당 조치를 내리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85년 주식관련 인기 칼럼을 연재해 오던 포스터 워너즈가 사전정보를 자신의 친구에게 제공해 주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이 밝혀지자 해고를 했고 신문에 사과문을 신기까지 했다. 밀워키 저널의 한 기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주식을 구매한 후에 그 회사에 대해 글을 쓰지도 않았지만 그 전에 기사를 쓴 적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최근의 사례는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 지의 칼럼니스트

10) 세계 각국의 윤리기구의 현장 및 강령과 유명언론사의 직업윤리강령은 한국언론연구원에서 펴낸 『언론인의 직업윤리』 자료편과 미국편집인협회의 웹사이트 ([www.asne.org/ideas/codes/codes.htm](http://www.asne.org/ideas/codes/codes.htm))를 참조할 수 있음.

11)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직업윤리』, pp. 125-247.

트인 놀란이 상장 되기 전의 회사 주식을 산 뒤 상장 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이유로 무기정직을 당했다. 뉴욕 타임스, 로스 앤젤리스 타임스, CBS, CNN 등도 소속된 언론인이 이해상충과 관련 그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를 하고 있다.

또 어떤 언론사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사건에 자사기자가 연루된 경우 진상조사와 더불어 자사 신문에 상세히 공개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아이 신문은 91년 12월 전후 최대의 경제범죄라고 일컬어지는 '이또망 사건'에 자사 기자 11명이 연루되자 사내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취재기자들은 물론 모든 관계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니혼게이아이는 이 조사결과를 자신의 신문 1면에 자세하게 보도했다.

많은 유명 언론사들이 이와 같은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보도에 영향을 미쳐 언론사의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언론사의 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 때문에 언론인에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특권과 특혜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권이나 특혜는 언론이 사회와 공중에 대해 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언론인이 그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언론인으로서의 특권을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한다면 그것은 곧 언론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

이다. 결국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해상충의 상황에서도 언론인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III. 표절과 언론윤리

뉴스가 되는 사건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지만 그 사건을 보도한 뉴스 기사는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기자가 그 뉴스 사건을 보도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은 저작권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과 연계되어 있는 작품은 표현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기자가 사실을 수집해서 보도한 기사는 저작권에 해당된다.<sup>12)</sup>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기자가 보도를 하기 위해 수집하는 사실이나 사건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들 사건이나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된다. 신문에 보도된 기사나 사진, 방송에 게재된 기사는 엄격히 말하면 저작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 게재된 기사는 함부로 인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다만 그 이용이 공공 혹은 교육의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sup>13)</sup>

12) Pember, Don R., *Mass Media Law*, 3rd ed. (Dubuque, Iowa: Wm. C. Brown Publishers, 1984), pp.419-424.

13) *Ibid.*, pp. 424-434.

대부분의 미국 언론사는 특종을 보도한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윤리강령이나 행동지침에 명시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보도기사의 경우 사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견지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의 범위 밖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면에 게재되는 뉴스기사나 인사기사, 사망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기사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해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붙여진 것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여겨진다. 또한 단순한 시사보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진에 학술,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사진은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sup>14)</sup>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기사, 사진 등은 원칙적으로 보면 저작권에 해당한다. 때문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표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표절은 결국 법적인 소송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가령 타 언론사가 특종 보도를 할 경우 대부분의 미국 언론사들은 특종을 보도한 언론사 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윤리강령이나 행동지침에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인터넷 취재행위가 보편화되면서 표절행위나 전자메일의 사용이 새롭게 부각되자 대부분의 언론사가 인터넷에서 취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취재원이나 자료원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15)</sup>

이 같은 윤리강령이나 지침은 외부기사의 출처와 기자이름까지 밝히는 '외부기사 실명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인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가 깔려있지만 도덕적이고 직업적인 윤리의식을 우선시해 언론 스스로의 신뢰와 언론사간의 신의를 지켜가려는 노력을 기자들이 솔선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 더 강하게 담겨져 있다.

그러나 한국언론의 윤리강령에는 표절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 25조에 "언론사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또는 비평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보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4조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이든 아니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이든 간에 타인의 저작물을 그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출처표시와 관련해 중앙일보 기자 윤리강령의 세부지침에서 만이 공정보도를 위해 "모든 기사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의 한 실행방법으로 외부기사의 출처와 기자이름까지 밝히는 '외부기사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국일보는 외부사진을 받을 경우 크레디트에 출처를 밝히는 '제공사진 실명제'를 명시하고 있는 정도

14) 안상운, "보도기사와 저작권", 『저널리즘비평』, 제28호, 1999년 9월, p. 54.

15) 이재진, "언론인과 언론사의 관계 보다 명확하게", 『신문과 방송』, 제 345호, 1999년 9월호, pp. 25-29.

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표절이나 출처표시에 대한 언급이 없다.

#### IV. 한국언론보도와 이해상충 그리고 표절

##### 1. 보도기사와 이해상충의 윤리

우리 언론과 언론인은 과연 '이해의 상충'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우리 언론의 신뢰성을 위하여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투철한 직업적 의식을 가진 언론인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언론현상에서 윤리강령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실천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풍토가 짙다. 실제로 88년 한겨레신문의 윤리강령 제정을 시작으로 중앙 일간지들과 방송사들이 앞다퉀 개별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나 그 실천적 의미에서 지금은 대부분이 사문화 되었다.

더구나 강령내용 또한 몇몇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경제부 기자들의 주식투자 제한 규정조차 없을 정도로 취재와 보도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이해상충에 관한 뚜렷한 지침을 정해 놓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가 기자윤리강령에서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에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연합뉴스는 '취재보도 등 회사업무와 관련해 입수한 뉴스와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KBS 역시 '직위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수준이다. 특히 공정정보와 관련해서는 외

부압력 배제,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 보호, 반론권 보장 등을 명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없다.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을 적극적으로 피해보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언론이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은 언론이 곧 힘이라는 역학논리에서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그에 따르는 윤리적이고도 도덕적인 책임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인의 이해관계가 문제시 될 경우 언론 스스로 그 비난을 무마하는 홍보 수단으로 자처하는 조짐마저 있다. 더구나 언론사가 경영 문제에 부딪칠 때 언론은 권력이나 광고주와 유착해 기사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또 취재기자가 출입처의 취재보류요청이 있는 사안을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를 요구한 사례가 드러나는가 하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다 입건되기도 하고, 일부 기자들은 여러 증권사 직원들의 정보모임에 참석하고 이 모임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가족의 이름을 빌려 증권거래의 계좌를 개설하는가 하면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기업체의 세금포탈을 도와주기도 하고, 기업체를 간접 홍보해주면서 제작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우리 언론이 이해상충과 관련해 보여주는 윤리적 책임의 상실은 물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권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

엄격히 말하면 출처와 관련,  
우리 언론의 보도기사는 대부분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해

리 언론의 윤리강령과 그 실천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 윤리강령이 있되 현실적으로 해당 언론사에 속하는 언론인들조차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내의 관습적인 논리가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sup>16)</sup>

우리 언론의 이런 윤리의식에서 나오는 보도기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향을 받은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즉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진실이 담긴 기사가 독자·시청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적고 또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 2. 보도기사와 표절 그리고 윤리

우리 언론의 표절문제는 보도기사를 개인의 자산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재산으로 간주하고 기사의 저작권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용, 공공사용의 원칙이 너그럽게 적용되는 것 그리고 발표저널리즘, 출입처제도, 때거리 저널리즘 등 바람직하지 않는 취재제도 관행에 의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sup>17)</sup>

최근 연합뉴스의 한 조사는 하루 평균 123건의 기사가 도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8)</sup>

그런데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라온 표절 건 중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sup>19)</sup>

이런 현상은 언론보도와 관련된 표절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

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을 해 놓고 '아이디어의 차용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오히려 항변하는가 하면 사진보도와 관련해서는 제공처를 빼고 자사기자 이름으로 게재를 한다. 사진을 공동으로 나누어 쓰기로 해 놓고 제공처를 은폐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난다. 공동으로 취재해 보도시점을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보도해 기사를 가로채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를 조작하거나 연출하는 사례도 있다.

더구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처를 밝혀야 하는 조항을 적용한다면 모두가 규제 대상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의 출처문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의 대부분이 문제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 언론사가 독창적으로 자사의 스타일과 포맷으로 작성한 기사가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아주 엇비슷하게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 출처를 명확히 기사 내에서 밝히는 보도기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출처와 관련해 엄격히 말하면 우리 언론의 보도기사는 대부분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의 언론들이 다른 언론사와 내용상 같은 기사를 보도할 경우 그 언론사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서 스스로없이 보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사의 표절은 언론윤리를 저해하는 문제점

16) 이재진, 앞의 글, p.25.

17) 기자협회보, "표절 막기 위해 법적 장치 필요", 『기자협회보』, 2000년 5월 29일, p.3.

18) Ibid.

19) Ibid.

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나라의 윤리강령에는 기사표절이나 지적소유권에 관한 항목이 없다. 몇몇 언론사가 '출처표시'를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언론사가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워싱턴 포스트가 "다른 신문과 다른 매체로부터 나온 자료의 출처확인완전해야 한다. 표절은 언론의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하나다."라고 표절을 죄악시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보도기사의 표절이 빈번히 일어나는 원인은 언론사간의 지나친 경쟁이다. 언론사의 특종욕과 낙중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존심이 표절을 하게 하는 원인이다. 또 취재인력의 부족과 제작관행, 표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표절에 대한 세부 규정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것은 표절에 대한 언론인들의 윤리의식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언론인들이 표절에 대한 태도나 인식은 거의 무감각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언론인의 사명은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내용을 사심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이해관계라는 사슬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해상충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편에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직업적 윤리의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선언적 의미의 윤리보다는 실천하는 윤리의식을 언론인 스스로가 가져야만 한다. 언론인과 언론의 존재와 신뢰가 바로

이 실천적 윤리의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언론인들의 윤리 실천의식은 단순히 선언적 어떤 행사로는 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입장만을 내세우는 윤리강령의 선언은 이해상충의 상황에서 사문화 되기가 쉽다. 세계 각국들의 유명 언론사들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 언론사들도 언론인들이 이해상충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지침을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지침의 제정과 더불어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명문화하고 그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 언론사에 '이해상충위원회'를 구성해 언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고 상의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이해상충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존의 심의실에 이 기능을 부가해 실질적인 이해상충문제를 다루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현장에서 일어나는 이해상충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해상충의 문제는 규제나 처벌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실천이다. 윤리적 내용의 자발적인 실천은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사 때 교양강의 성격으로 언론의 윤리나 실천강령에 대해 한 번 들어볼 정도의 교육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바꾸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부딪치거나 또는 경험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언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해상충문제를 충분히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의식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상충은

이해상충과 관련된 윤리의식 제고와 그 실천,  
표절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언론인 자신이 존재한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

언론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언론인들이 이해상충의 상황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언론인 자신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관련되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책임을 언론인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실천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따르는 특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권에는 언론인이 이권에 개입해도 좋다는 조항은 없다. 오로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언론인들이 겪는 이해상충은 이 조항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 위협적인 이해상충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언론인은 올바른 취재와 보도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한 묵시적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이 묵시적 약속을 어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론의 신뢰성을 무너지게 할 뿐이다.

표절도 분명히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기사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없애 궁극적으로는 언론존재의 당위성에 위협이 된다. 공익을 추구하고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언론이 표절시비에 끊임 없이 휘말려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을 스스로

하고 있다면 언론은 믿을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다.

언론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나아가 언론인의 품위를 위해서, 보다 직접적으로는 언론인 자신을 위해서도 언론인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창의를 진작시키고 언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표절시비에서 언론인 스스로가 도덕적 의식과 직업적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언론인의 직업적 특권은 언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언론인들은 언제나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언론사의 경영진이나 간부들이 앞장서 언론윤리를 정립해 가려는 의지를 가져야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상충과 관련된 윤리의식의 제고와 그 실천 그리고 표절시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언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나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언론인 자신이 존재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언론인의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언론인 본연의 임무를 생각해야 한다. □

# 특 집

언론윤리와 저널리즘의 위기

## 취재현장과 언론윤리강령

“윤리강령이란 게 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아마도 촌지 같은 거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겠지.”

“입사해서 교육받을 때 한 번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봤을 정도다.”

“내용이 잘 기억 안난다. 그런데 그거대로 지키는 기자가 얼마나 있겠나.”

윤리강령에 대해 질문을 받은 기자들이 솔직하게 밝힌 우리나라 언론 윤리강령의 현주소는 이렇다.

1988년 <한겨레신문>이 창간되면서 개별 신문사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만든 이래 1991년 이른바 ‘보사부(보건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촌지사건’이 터지자 각 중앙일간지와 방송사는 앞다투어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면서 이런 윤리강령들은 거의 사문화됐다는 게 언론인과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 보사부 촌지사건

각 언론사에 윤리강령을 만들도록 한 것은 그 유명한 보사부 촌지사건이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1991년 추석을 전후해 보건사회부에 출입하는 신문·방송·통신기자단이 제약·제과·화장품회사 등 업계와 대우재단, 현대그룹의 아산재단 등의 단체로부터 9천여 만원의 돈을 걷어 나눠 쓴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은 기자사회에 만연되어 온 촌지수수 관행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한겨레신문>에 이 기사가 크게 보도되자 각 언론은 이를 보도하면서 이례적으로 ‘독자들에게 사과한다’는 기사나 사고

### 오 상 석

한겨레신문 사회1부 차장

- 전국언론노련 조직국장,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 등 역임
- 일본 게이오대학교 산업연구소 방문연구원
- 현 한겨레신문 사회1부 차장
- 저서 : 『일본의 신문·방송과 언론 노동운동』

시일이 지나면서 윤리강령은  
거의 사문화 됐다는 게 언론인과  
일선 현장 기자들의 일반적인 반응

를 함께 실었다.

그 글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보사부 기자단의 부끄러운 사건에 본지 기자도 끼어 죄송스럽다”거나 “본사 기자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보사부 출입기자단 금품 물의 / 본사기자 사과드립니다’ (동아일보), ‘보사부 출입기자단 금품 물의 / 본사기자 관련 사과, 자정계기로’ (조선일보) 등이다.

이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자사 기자들이 기자단에서 탈퇴하거나 가입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조선일보, 기자단 탈퇴 결의’라는 제목의 사고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은 3일 오후 본사 편집국에서 비상국회를 열고, 자정문제를 광범위하게 협의, 언론계의 해묵은 관행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각 출입부처 기자단을 전면 탈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중략) 1991년 11월 3일 조선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이라는 내용의 사고를 보도했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날 동아일보의 모든 기자들에게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런 결의는 호지부지되어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를 포함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기자들도 모두 출입처 기자단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 그때 근무했던 대부분의 기자들이 당시 기자단 탈퇴를 결의한 적이 있는지조차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기자단 탈퇴’는 언론사의 홍보효과만을 높인 채 없던 일이 되었다.

어쨌든 당시 각 언론사들은 일제히 보사부사건을 계기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갖고 ‘타락·부정·부패를 거부하고 부단한 자기 혁신과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켜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

##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촌지 사건

이런 얘기가 있다.

모 출입처 기자실에 아가씨(기자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가 새로 왔다. 마침 촌지가 봉투에 넣어져 돌려지고 있는 때였다. 대개 기자실 간사가 기자들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게 보통이어서 간사는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에게는 모두 나눠줬지만 만나지 못해 미처 전해주지 못한 기자가 한 사람 있었다. 그런데 간사가 불일이 있어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 간사는 금일봉(金一封)이라고 한자로 쓰여져 있는 촌지봉투를 새로 온 기자실 아가씨에게 맡기면서 이 봉투를 ○○일보 기자가 오면 주라고 했다. 아가씨는 나중에 그 기자가 오자 “김일봉 기자님, 간사님이 이 봉투 전해 드리래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가씨는 봉투에 쓰여 있는 한자를 옥편까지 동원해 찾아서 그 기자 이름을 김일봉(金一封)으로 알았던 것이다.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이렇게 기자실에서 촌지봉투를 공공연히 돌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보사부사건은 언론에 경종을 울려 이후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촌지수수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즉 기자실 등에서 촌지봉투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리던 관행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곳에서 모인 촌지를 기자실의 운영위원(간사)이 모았다가 적당히 나눠서 기자실에서 분배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지만 이런 모습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사부촌지사건이 있는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잊혀질만 하면 터져, 지면 한구석을 장식하곤 했다. 이것은 언론계의 촌지 관행이 뿌리깊고도 없애기 힘든 것이라는 걸 말해준다.

지난해 9월, 한국언론재단이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를 보면 촌지 실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5.5%가 지난 1년 동안 금전, 선물, 향응접대, 무료티켓, 취재관련 무료여행 등 적어도 한 가지는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향응 접대가 39.5%로 가장 많았고, 선물이 32.9%, 금전 18.9%, 무료티켓 15.5%의 순이었다. 취재관련 무료여행과 외유성 취재여행도 각각 9.7%, 3.4%나 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지 설문조사일 뿐 얼마나 객관적인 현실을 말해주는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아마 편집부나 국제부 등 일부 내근기자들을 제외하고는 명절 때 출입처의 장이나 고위간부 등으로부터 집으로 선물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고, 또 평소에도 술이나 식사대접을 전혀 받지 않는 기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기자들이 출입처 간부들이나 출입처 산하단체장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현안을 얘기듣기도 하는 것은 아주 당연스런 일로 생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추석 때 집으로 배달되는 선물이나 평소의 점심식사, 간혹 있는 술대접 등을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처음 촌지를 받았을 때 무척 당황했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어떤 기자는 선배기자와 상의하기도 하고, 몇 번을 거부했으나 끈덕진 수수요구에 마지못해 받기도 하고, 받은 뒤 되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촌지 수수가 익숙해지며 일부기자들의 경우 명절 때 촌지가 없으면 '기다려지는' 상황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많은 기자들은 "촌지 때문에 기사를 몇 바퀴먹지는 않는다"거나 "우리 사회풍토에서 촌지를 무조건 거부하기가 사실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론사의 윤리강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윤리강령

모 중앙일간지의 윤리강령을 보면 크게 셋으로 나뉜다. 윤리강령과 세부지침, 그리고 윤리위원회 규약이 그것이다. 모두 8조로 되어있는 윤리강령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 언론자유수호 -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2 조 공정정보도 - 우리는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조 품위유지 - 우리는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특혜를 받지 않는다.

세부지침에는 좀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즉 촌지(현금이나 유가증권)는 어떠한 경우에도

많은 기자들이 자기 돈을 쓰지 않고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식사와 술대접 등은  
거리낌 없이 당연스레 받고 있어

받지 않고 회사내의 누구도 취재용이 아닌 일반적인 무료입장권이나 상품권, 회원권, 무료숙식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요구하지 않으며, 골프 접대 등의 특혜를 강요해서도 안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현장에서 이와 같은 윤리강령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많은 기자들이 자기 돈을 쓰지 않고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식사와 술대접 등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당연스레 받고 있다.

또 외근기자들이 이런저런 해외취재 명목으로 1, 2년에 한 번 이상은 출입처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도가 심한 경우이다. 같은 기자들이 보기에 심한 경우만 사건화되거나 언론전문지 등을 통해 사건화되고 있는 것이다.

## 주식관련 비리

99년 5월 서울지검 특수 1부는 중앙일보 경제부 길모 차장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하고 그의 동생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길 차장은 98년 8월 (주)신동방이 무세제세탁기를 개발해 다음날 시연회를 개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보도하기에 앞서 동생에게 전화로 이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길 차장의 동생은 정보를 입수한 뒤 바로 신동방 주식을 주당 3,000~3,590원씩에 3만 4천여 주를 매입했고, 이후 예상대로 이 주식은 1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9월 8일까지 주당

최고 2만 6천원이나 받고 매각했다는 것이다. 불과 20여 일도 채 안돼 챙긴 시세차익은 모두 4억6천4백만원.

검찰은 “길 차장의 경우 동생이 그동안 주식투자들 통해 1억여 원의 손실을 본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 정보를 판 것이 아니고 본인은 시세차익을 보지 않아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매일 수조원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거래되는 증시는 촌각을 다투는 정보전의 현장이다. 정보가 곧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미리 알게된 기업정보 하나로 짧은 기간에 엄청난 투자이익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때문에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직원은 물론 해당 기업의 임직원, 분석가 등도 ‘내부자’로 규정해 주식거래를 일절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기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고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금지할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기자들이 주식을 사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받는다면 이를 제지하거나 추적할 법적 근거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들의 주식투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기자들의 주식취득을 무조건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자기 업무가 증권과 무관한 기자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처럼 매년 초 기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개하거나 금액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이고도 실천가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기자가 미공개된 정보를 증시에 이용케

해 문제가 된 첫 번째 케이스로서 화제가 되었다.

벤처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경우도 있다.

케이블방송의 한 현직 PD가 지난해 2월프로그래밍 제작을 위해 만난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분 참여를 요구했고, 결국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400주를 한주당 2만5천원에 매입했다.

언론전문지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 관계자는 “그 PD가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해 주식을 달라고 요청해 사장이 마지못해 주식을 줬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 PD는 다음 쪽에서 산 주식 중 일부를 회사 동료와 선배 등 3명에게 자신이 산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받은 주식은 같은 해 6월께 다음커뮤니케이션쪽의 액면가 분할로 1만4천주가 됐으며 이 주식값은 11월께 10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급등했다. 이들은 코스닥 등록 이후 보유주식을 대부분 처분해 엄청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참 코스닥 열풍이 불어닥칠 때는 비슷한 사례가 많았었다.

당시 제3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모 벤처기업이 한 일간지에 소개된 뒤 이 회사에는 몇몇 신문과 방송사의 기자들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 “우리도 보도를 해줄 테니 주식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코스닥 열풍에 한몫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언론이었다. 언론은 업종전문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벤처를 부각시켰고 벤처만이 살길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언론인과 벤처기업간의

주식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간간이 나왔었다.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 “아직도 촌지를 돈으로 받느냐”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벤처기업도 일간지나 경제지, 방송 등에 자기 기업 기사가 큼직하게 나가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기자가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받을 경우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자기가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다룰 때 과연 그 기자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기자가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불공정한 기사를 쓰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자들과 벤처기업간의 유착은 경계해야 할 주요 언론비리로 꼽히고 있다.

## 기자의 비금전적 비리

이렇게 금전과 관계된 언론인 비리는 아니지만 올해 7월에는 MBC 기자의 ‘취중행패 사건’이 화제가 됐다.

MBC 보도국 사회부의 최모 기자가 지난 7월 1일 수습을 마감하는 회식을 끝내고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폭언과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다.

최 기자는 술에 취해 새벽 3시께 자신의 출입처인 남대문서로 들어가려다 당직근무자가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이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부정한 이득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불공정한 기사를 쓰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자들과 벤처기업간의 유착은 경계해야

최기자의 소란이 계속되자 폭행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던 차모 경장이 “소란을 계속 피우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경고했고, 이에 대해 최기자가 욕설을 계속하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최기자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것이다.

손이 뒤로 돌려진 채 수갑이 채워진 최 기자는 이때부터 책상 위에 놓인 팩시밀리를 비롯해 컴퓨터와 집기 등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이런 소란 끝에 최기자는 오전 7시께야 남대문서 형사계를 빠져나왔다.

역시 기자가 힘이 셸다. 사건 직후 형사들만 조사 받고 문책을 받게 됐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당시 당직 근무했던 형사들은 서울경찰청 감찰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최 기자에게 수갑을 채웠거나 실랑이를 벌였던 경찰들은 모두 다른 경찰서 관할 파출소들로 전보 조치됐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것으로 끝날 사건이었으나 이번엔 달랐다.

이때 전보 조치됐던 한 경찰의 아들인 대학생이 이 사건의 전말을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올렸고 이를 본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결국 MBC는 뒤늦게 최기자를 전보발령내는 등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기자와 관련해 올해 있었던 주요 사건으로 스포츠지 기자의 업체 성추행 의혹사건을 들 수 있다.

언론전문지 <미디어오늘>의 지난 6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지의 한 기자가 화장품, 패션, 인터넷 관련 업체에 출입하면서 업체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물품들

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 스포츠지 기자가 지난해 봄 지방에 갈 일이 있다면서 편하게 입을 옷 폴세트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으며 또 미국 출장을 간다며 접퍼를 요구해 보내줬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학생 명예기자들에게 준다며 티셔츠 30장을 요구하는가 하면 속옷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이런 물품 요구 외에도 출입하는 업체의 여직원을 끌어안으려 하거나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는 성추행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렇게 기자 개인이 저지르는 비리 외에 회사 차원에서 자사 이익을 위해 무리한 기사를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종합일간지인 7일보는 롯데 쪽에서 광고를 안주자 7 번이나 롯데백화점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신문은 6월 28일 <롯데백화점, ‘납품업체 횡포’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7월 5일 <롯데, “쉽게 돈벌자” 독과점 횡포> 기사까지 7 번이나 롯데백화점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이 실은 롯데백화점 비판 기사는 <롯데백화점, 부상 아르바이트생 “나 몰라라”> (6월 29일), <롯데백화점 소매치기 극성> (7월 1일), <롯데백화점, 강남에 셔틀버스 - 불법 주정차 심하다> (7월 3일), <롯데백화점 ‘안전불감’> (7월 4일) 등이다.

이 신문의 이런 보도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의도성 짙은 기사가 다수’라고 반발했다. ‘납품업체 횡포 조사’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정기적인 백화점 직권조사를 마치 롯데에만 해당되는 일처럼 과장하고 '아르바이트생 부상, 나 몰라라' 기사도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산재사고를 뒤늦게 보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백화점 쪽은 이런 보도들이 이 신문의 광고국장이 광고 문제로 롯데를 방문한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보복 기사'라고 주장했다.

이 사례는 신문들의 치열한 살아남기 경쟁에서 나온 불공정 보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신문도 광고와 관련해 비슷한 압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해외취재

기자윤리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남의 돈으로 가는 해외취재다.

부처에서 국제회의가 있다거나 하면 기자들이 한두 명씩 포함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고, 아예 기사실 전체가 부처나 관련 단체의 돈으로 해외취재를 가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런 해외취재의 경우 불요불급하지 않은 외유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취재를 빙자한 외유는 그 비용을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취재할 것이 있으면 정부나 기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직접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일선 기자들은 "주요 국가에

특파원이 나가 있어 기사처리를 하고 출입기자가 꼭 가야 할 정도의 주요 사안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라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으면 기자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물론 회사에서 비용을 주고 해외취재를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형편상 그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못나가게 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단체 등에서는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해외취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스스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회사를 설립해 취재비용을 타내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취재의 경우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일선 기자들의 시각에 큰 괴리가 있다.

골프접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무원들에 대해 '접대성 골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자들의 골프접대는 공공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6월 8일자에서 5월 재경부와 금융권 출입기자들이 은행권의 홍보성 나들이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자들에게 골프접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 받은 은행은 산업은행과 조흥은행, 한빛은행 등으로 이들 은행은 대우해외매각과 합병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어 골프접대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됐다.

다른 은행들도 '은행경영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금융권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기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이 되었다.

일부 출입처에서는 일부 기자들이 골프를 치기

우리 언론의 윤리 불감증은 '촌지'가  
국제적인 오명의 대명사가 되었는데도  
아직 근절되지 않는데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어

위해 출입처 고위간부나 산하단체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거나 부킹을 부탁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중앙일간지나 방송사의 기자 월급이 적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골프장에 나가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한 번 필드에 나가는 데 15만~20만원이 드는데 개인부담으로 매주 운동(골프)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기자들에게 술대접을 하기 위해 룸살롱이라도 가면 수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골프대접이 돈도 적게 들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효과적이라는 점에 부처나 기업 관계자, 그리고 기자들은 모두 공감한다. 폭탄주 먹고 속아픈 것 보다 야외에 나가 좋아하는 운동을 즐기는 것이 훨씬 실속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기자들은 골프를 쳐야 고위층 인사들과 스스럼없이 많은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어 골프야말로 고급정보를 캐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자들 가운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 언론인의 윤리불감증

우리 언론인의 윤리불감증은 이른바 '촌지'가 국제적인 오명의 대명사가 되었는데도 아직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데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촌지는 총체적 부정부패에서 빚어지는

'떡고물' 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촌지가 지금보다 성행하던 시절 기자들 기자들이 자조적으로 하던 말이 있다. 촌지 모 모아서 부자된 기자 못 봤다는 것이다. 노력 없이 쉽게 들어오는 돈은 쉽게 나가는 법. 대부분 기자들이 촌지를 받으면 술값이나 기자실에서 의 고스톱 비용 등으로 써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떼땀치 못한 돈이기에 후배들에게 술이라도 한 잔 사면 맘이라도 편할 거 같아 촌지를 받으면 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날려버린다는 기자들도 있었다.

일선 기자들은 물론이고 언론계 안팎에 있는 사람들 중 촌지가 썩은 이를 뿔뿔 근절될 수 있다고 낙관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언론인 촌지가 크게 문제될 때마다 언론사들은 '다시는 촌지주문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쏟아내고 언론단체들은 자정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정작 일선 기자들 중 상당수는 이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게 사실이다.

일부 기자들은 '미디어오늘'이나 '기자협회보'와 같은 언론전문매체들이 '촌지 수수'나 '외유성 해외취재' '골프접대' 등 깔끄러운(?) 문제를 기사화 하는 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언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심하게 비판만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각 언론사마다 윤리강령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언론사가 윤리성이 부족한 사람만을 골라서 채용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은

그 윤리강령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즉 현실적인 것인가와 오랫동안 쌓여왔던 관행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타파해야 하는가로 좁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윤리강령이 제정될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거나 문제될 가능성이 없었던 영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한국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서 “물질적·정신적임을 막론하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품격조항을 채택한 이후 한국일간신문발행협회, 한국통신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모두 비슷한 조항을 둔 윤리강령을 제정한 바 있으나 그야말로 ‘선언’에 그쳐왔다.

이후 보사부 춘지 사건이후 각 방송과 신문이 회사별로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춘지거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나 이후 잘 실천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윤리강령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강력하고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명분용’에

불과해서 오랫동안 관행이 돼 춘지수수에 길 들여진 기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설령 처벌규정을 두어도 기자들의 의식개혁과 도덕성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때, 개별적이고 음성적인 춘지거래는 근절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기자사회에서 춘지척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용기’를 낼만한 풍토도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나라에 와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언론사 특파원들은 “기자가 취재원에게 현금을 받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럴 때는 당장 해고감”이라며 한국 언론계의 춘지수수 관행이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현상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과거 보사부사건과 같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언론인 윤리를 다잡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확실히 하면서 대대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벌일 경우에만 우리언론에서도 춘지수수와 같은 부끄러운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일부 기자들의 진단이다. □

# 특 집

언론윤리와 저널리즘의 위기

## 수용자가 바라본 언론인 직업윤리

### I. 머리말

우리 사회에서 종전부터 존경받던 직업이나 명예직이라고 생각되어 지던 직업들이 그 직업으로 벌어들이 수 있는 수입액수로 그 직업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천민자본주의의 가치관과 존경과 권위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특별한 대우나 취급을 받는 특정직업이 존재하여서는 안된다는 하향식 평등주의의 영향으로 점차 그 입지를 잃어 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직업에 몸 담았던 구성원들도 다른 가치들에 휘둘려 종전 선배들이 의연히 지켜왔던 명예나 자부심을 유지하지 못한 채 점차 잃어 가고 있는데 언론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최근 여러 비리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 정치적 야심을 가진 언론인들이 권력과 유착하는 이른바 권언유착은 물론 출입처로부터의 향응이나 촌지를 수수하는 일, 언론사간 상호 기사 및 사진을 무단으로 베끼기, 광고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광고주에 대하여 보복성 기사를 보도하는 일, 취재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영리를 누리기 위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일, 최근에는 벤처기업을 홍보해주고 벤처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는 이른바 벤언유착까지 언론인들의 비리가 불거져 나오면서 언론인의 직업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언론은 국가권력을 포함한 사회제반 세력에 대하여 언론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비판과 감시기능으로 인하여 사회의 목탁 이라고 불리우고, 언론에 종사한 언론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적 수준을 요구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위와 같은 언론인들의 비리는 단순한 윤리적 금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일부 범죄행위에 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언론인들의 비리 중에서도 언론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용자들에 대하여 저질러 온 비리와 횡포는 일찍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논리와 언론계의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윤리를 언급할 수준을 넘었음은 물론 범죄

### 채 수 영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법학석사 )
- 미국 Northwestern School of Law, LL.M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현 변호사,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실행위원

행위까지 이르러 왔고 지금도 그러한 횡포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글은 먼저 그러한 비리와 횡포를 가능하게 한 언론의 연혁적 배경을 먼저 생각해보기로 하고, 여러 형태로 터져 나오고 있는 언론의 비리와 횡포 중에 언론이 수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만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언론과 언론인의 윤리의식에 한정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 II. 언론의 발달과 지위변화

수용자에 대한 언론의 비리와 횡포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천민자본주의와 하향평등주의의 등장에 앞서 일찍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는 언론이 그 존립근거이자 존립기반인 국민과 유리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당초 자유시민사회가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절대군주가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던 통치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리를 삼권으로 분립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이러한 삼권분립제도는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로 자리잡으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세기, 20세기를 걸쳐 자유시민사회가 확립되고 종전의 절대군주정치가 퇴조하면서 민족주의, 국가절대주의의 열풍과 함께 당초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던 삼권분립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점차 퇴색하게 되었다. 이에 다시 국민이 주체가 된 언론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

관함으로써 퇴색한 삼권분립제도의 목적을 보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또한 20세기에 들면서 국가권력 외에 새로이 등장하게 된 각종 사회제반세력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권력과 사회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언론은 독재정권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각종 억압과 탄압을 받으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이념 하에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독재정권과 투쟁하면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 및 비판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우리 언론인들은 그러한 투쟁과정에서 나름대로 강한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비교적 사회가 안정되고 언론이 제도권내에 안착,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제4부로서 권력의 다른 한 모퉁이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언론이 제도권내에 편입되어 마치 새로운 권력분립제도의 한 부분이 되어 통치권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면서 원래 언론이 가지고 있던 국가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와 비판기능이 퇴색되어 버린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다중사회의 불가피성 때문에 간접대의정치제도가 국민을 주권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통치권행사의 대상으로 더욱 가깝게 자리매김하게 되듯이 언론 역시 다중사회의 대중매체(mass media)로 발달하면서 국민이 언론의 존재이유와 목적이 되는 주체라기 보다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일정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는 매체의 수용대상으로 여기

## 보도대상의 이름이나 나이 심지어 성별까지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게 되면서 국민들과 유리된 것이다. 즉 언론은 국민을 매체의 수용대상으로 여기게 되면서 언론전문가인 언론인들로 구성된 독자적인 조직과 성향을 가진 권력집단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언론이 존립기반으로 내세웠던 당초 목적과 취지로부터 점차 멀어져 국민과 유리되는 길을 걷게 된 것으로 보인다.

### Ⅲ. 언론의 윤리규정과 위반

일부 언론기관 및 단체는 위와 같은 국민과의 유리를 의식한 듯이 이른바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고 이에 언론자유수호, 공정보도, 품위유지, 정당한 정보수집, 올바른 정보사용, 사생활보호, 취재원보호, 오보의 정정,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및 인권존중, 사생활보호 등을 표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용자로서 취재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은 언론이 끊임없이 침해하고 심지어 범죄행위에 이르는 인권존중 및 사생활보호 규정이다.

#### 1. 부정확한 보도와 사생활침해

우리가 언론의 보도를 접함에 있어 그 정확성에 대하여 너무도 아쉬울 때가 많다. 누구나 한 번쯤 직접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어 본 사람이면 그 보도내용에서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얼마나 엄청난 오류가 있는지 겪어 보았을 것이다. 보도대상 수용자의 신성

한 이름은 물론 나이 심지어 성별까지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고 다소 복잡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의 부정확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 진다. 사건의 경위는 물론 그 원인이나 책임에 관한 보도는 지나치게 단정적인 경우가 많고 나아가 그 내용의 부정확성은 거의 픽션의 수준인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허위보도로 인하여 보도대상이 된 수용자가 개인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는 경우에 따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도 있다.

아무리 저널리즘이라고는 하지만, 어쩌다 일정한 업적을 나타낸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면 그는 언제나 어려운 역경을 견뎌내고 성공한 영웅이고, 어쩌다 실수를 하게 된 사람은 악마의 화신으로 표현하는 과장기사는 고질에 가깝다. 이는 종전 우리가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문학도들이 생계유지수단으로 보도기사를 겸하면서 문학적 표현이 가득찬 보도기사를 써왔던 전통이 아직도 면면히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부정확한 보도는 기자의 부실한 취재와 과장보도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법조계에 대한 보도 중 중요한 내용이 담긴 판결선고에 대한 보도는 고질적인 허위보도인 경우가 많다. 흔히 별 관심없이 보고 듣고 흘리겠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보면 언론의 보도에 의한 우리 법원은 종종 토요일 또는 심지어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법원의 판사님들은 주말도 없이 일요일에 조차 법정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인지? 이는 법조 출입기자들

이 뒤늦게 찾아 낸 보도대상 판결문을 마치 보도전날 선고한 듯이 보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자들의 태만을 은폐하기 위한 명백히 의도적인 허위보도이다.

보도자가 보도사실을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면 차라리 옛날 보도에서 볼 수 있었던 “...하였다더라”는 식의 표현이 더 정직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 2. 피의사실공표와 미성년 피의자의 신원공개

우리 언론이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대표적인 인권침해사례는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다.

모든 범죄혐의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받고, 형법으로도 범죄수사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사단계에, 심지어 범죄발생 직후에 피의자의 실명을 밝히거나 또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보도를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된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는 수사종사자이기는 하나 사실 취재자가 수사종사자를 중용,협박(?)하여 피의사실을 알아내어 보도함으로써 피의사실의 공범, 교사범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나중에 보도된 피의사실이 피의자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보도대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피해는 더욱 막심하게 된다.

어떤 범죄사실이 공익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갖거나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범죄사실을 마치 불구경하듯이 일상적인 취재활동의 대상으로 삼거나 나아가 재미거리로 취재, 보도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통상적인 범죄의 발생사실은 언론이 그리고 급하게 국민들에게 보도하여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3. 피해자의 신원공개

우리 언론이 쉽사리 저지르는 인권침해사례의 다른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성폭행 같은 범죄는 법조차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수사 또는 범인의 처벌을 보류하는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범죄 발생 즉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다면 당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예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함은 물론 앞으로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언론에 의하여 자신들의 신원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고소권을 포기하는 등 고소권을 행사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위험성을 낳게 된다.

최근 대부분의 언론들이 피해자의 보호를 의식하여 익명처리하는 것이 관행이기는 하나 보도기사 중 가해자의 인적 사항 및 기타 다른 관련사실들에 대하여 그들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미루어 알아 낼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는 문제점(예를 들면, 한국대학교 화학과 홍길동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조교 모양 이라고 보도하면 사실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그 학과 나아가 그 학교 재학생이라면 피해자를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게 된다.)

확인되지 않은 설이나 소문을 기사화하는  
빛나간 관행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은 아직도 지적할 만한 점이다.

#### 4. 범죄의 상세한 내용과 방법공개

우리는 보도에서 종종 범죄내용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상세한 보도를 하는 경우를 접하곤 한다. 각종 강·절도 등 강력사건의 범죄행위의 수단은 물론 특히 분드 등 유해화학물이나 마약 등의 이름을 상세히 밝히거나 이를 흡입, 투약하는 양 및 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크나큰 부작용이 있게 된다. 특히 유해화학물이나 신경정신계 약물은 그러한 약물을 모르던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종종 어린이를 유괴하는(정확한 법적 명칭은 '약취'이다.)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곧 이어 다른 유괴사건이 따라서 유행처럼 발생하는 예를 보아왔고 최근 보험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사건도 유행처럼 여러 사건 발생한 것을 보았다. 지난 해 어느 탈주범의 경우와 같이 엄연히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탈주한 범인을 마치 영웅화하는 저널리즘의 부작용도 보아 왔다.

#### 5.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신원공개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사건을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관련범죄로 인하여 보복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법에 의하여 신원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이러한 법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까닭인지 종종 언론을 통하여 그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련범죄로 인한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안타깝게 보게 된다.

#### 6. 확인되지 아니한 소문을 기사화

우리 언론의 또하나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는 밑도 끝도 없는 설과 소문을 확인도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설과 소문은 그 자체로서 취재의 단서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기사로 둔갑하는 것은 큰 무리와 위험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기사는 마치 전통처럼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급지를 자부하는 중앙언론에서조차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보도자세는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다. 중앙지, 지방지 모두가릴 것 없이 소문이나 설을 가지고 기사화하는 데는 우리 언론이 사실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빛나간 관행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입증자료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아니한 설을 바탕으로 허위보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도대상 당사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보도는 공직자들의 언행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그 공직자들에게 돌아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정당한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보도라기 보다 오히려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는 보도라고 할 것이다. 기자들의 확인취재와 검증정신이 다시 한번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 7. 제목편집에 있어 오보

신문의 경우 최근 지면도 많이 늘어나고 독자들이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신문을 꼼꼼히 보는 사람이 드물고 대부분 바쁜 일과 속에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만 보게 되거나 제목만 대충 훑어 보는 식으로 보게 된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가판대에 전시되거나 타인이 읽고 있는 신문의 제목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연유로 신문의 편집담당자들은 어떻게 하면 독자들의 주목을 얻을 수 있을 지 갖은 묘안과 아이디어를 짜내 가장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목을 찾아낸다. 제목이 강렬하면 눈길을 끌게 되어 관련기사가 읽히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나아가 신문의 구입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종전에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는 정도의 대특종기사 제목이나 쓰일 크기의 활자가 최근 가판에서 판매되는 신문에는 보통의 중요기사의 제목 크기에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언론은 위와 같이 눈길을 끄는 제목만을 찾다가 종종 무리수를 범하게 된다. 언론은 좀 앞서 나갔거나 약간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변명할 지 모르지만 이렇듯 선정적으로 작성된 기사제목은 사안에 따라 상당한 파괴력을 갖는다.

특히 스포츠지나 여성잡지는 단정적이거나 선정적인 무리한 제목을 달아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왕왕 있다.

## 8. 보도기사의 목살

수용자로서 알 권리를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보도하여야 할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왕왕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야 할 경우 당해 보도 대상자 및 관련자들이 그러한 내용의 보도를 극구 막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촌지나 기타 다른 향응이 오가는 일도 없진 않겠지만 이렇듯 알려져야 할 보도가 수용자가 알지도 못한 채 사라져가는 것 또한 수용자에게는 알 권리를 침해하는 엄청난 비리임에는 틀림 없다.

## IV. 주요 원인

1) 우선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중요한 귀책사유 중 하나는 언론인의 개인적인 게으름과 무책임이다. 취재한 보도내용을 끝까지 정확하게 취재하지 아니하는 게으름과 끝까지 취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도해버리는 무책임이 부정확한 보도의 원인이다. 언론인이 수용자를 단순한 취재대상으로 생각하고 수용자들의 명예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한 것도 문제 중의 하나이다.

2) 부정확한 보도 및 불공정한 보도는 취재기자의 기사를 언론사에서 앞서서 요리하는 이른바 데스크에 의한 무리한 지시나 일방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권위주의적 명령식 지휘체계

언론은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현재 심각하게 손상된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야

가 갖추어진 언론사의 편집국 또는 보도국의 분위기에서 데스크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취재기자의 취재물을 기사화시키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심지어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논조를 심할 경우에는 정반대로 바뀌 버릴 수도 있다.

기자들은 기획취재를 하면서 일정한 보도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취재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설정한 보도방향에 맞추어 반드시 필요한 정확한 자료들을 취재하고 이를 엄밀히 분석하여, 설정된 보도방향이 올바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도방향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엉뚱한 자료를 취재하거나, 보도방향과 다른 자료를 취재하고도 억지로 취재방향에 꿰어 맞추려는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3) 언론사간의 지나친 상업주의적 경쟁으로 인하여 좀 더 수용자들의 일시적인 시선을 주목시킬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와 정확한 확인을 거친 보도보다는 다른 언론사들과의 속도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데 우선권을 둔 취재, 보도성향에서 부정확한 보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가 나오게 된다.

## V. 언론의 윤리의식 제고방안

1) 최근 권리의식에 투철한 일부 수용자들이 언론에 대하여 법적 대응 등 비판과 저항을 시작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결과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은 현재 이

러한 수용자들의 비판과 저항과 관련하여 상당한 액수의 소가를 기록한 여러건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 일부 언론사는 법원으로부터 상당액수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개혁과 자정의 대상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과 자정을 성공한 예를 별로 보지 못하여 왔고 이는 결국 다른 세력에 의한 개혁과 숙정을 부르게 됨을 의미한다. 언론은 다른 세력에 의한 개혁과 숙정을 부르는 비극이 오기전에 스스로 자정과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언론인들은 보도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자신들의 안일한 보도자세로 인하여 보도대상이 된 국민들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이 마치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보도자료를 수집하고 부지런히 확인하는 언론인으로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보도에 임한다면 많은 부정확한 보도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안일한 보도자세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윤리의 성질상 언론인들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지만 국민들이 언론의 보도에 참여하여 감독, 감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본다.

3) 언론사들은 상호 지나친 상업주의적 경쟁이나 속도경쟁을 자제하고 선정적인 보도등으로 수용자들의 일시적인 시선을 주목

시킬 수 있는 보도를 삼가고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사들은 내부적으로 권위주의적 명령식 지휘체제를 타파하고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취재, 보도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언론사는 항상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현재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수용자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 VI. 맺음말

최근 직업윤리를 실종해 가고 있는 언론에 대하여 일부 향상된 참여의식 및 권리의식을 가진 수용자들은 보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구독거부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선 한편, 일부 네티즌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수용자들은 최근 발달한 인터넷상의 매체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매체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정보가 왜곡되거

나 부정확한 정보가 난무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등 기존 언론보다 더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직접 언론의 주체가 되어 일정한 정보 및 지식을 생산, 교환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엄청나게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터넷매체가 기존 언론에 대한 대안매체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하여 무너져 가는 모습과도 너무도 유사하다.

언론이 외부적, 타율적 법률이 적용되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수동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언론은 수용자, 국민들과 유리됨으로써 그들의 존립기반이 무너짐을 깨닫고 자율적인 규범인 윤리를 굳건히 지킴으로서 언론의 본래적인 모습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전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천민자본주의로부터 새로운 인본주의의 싹을 틔우고 키우면서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조 준 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사연구팀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의 증가는 1990년대 우리 나라 언론계를 특징짓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만 해도 언론자유가 전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뉴미디어 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통제라는 변수가 점차 약화되어 언론의 자유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언론의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언론 자유의 확장은 국민의 권리신장과 개인법익에 대한 인식전환의 한 계기가 되었지만, 언론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상업주의적 경쟁의 격화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았다. 이러한 언론환경 변화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법원 소송사건 증가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sup>1)</sup>

소송의 증가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전 논의는 아직까지 명예훼손소송판결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판결 수와 배상액, 승소율 등에 대해 체계적,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언론관련 소송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의 결여는 부분적 사실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을 낳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론 관련 소송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소송과 판결의 경향을 진단하고 판결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법사회학 연구의 관점에서 1990년대에 내려진 명예훼손소송판결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법사회학은 법현상 즉 재판, 법원, 법조인단, 법학교육, 범죄를 포함한 범법현상 등을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sup>2)</sup> 법해석학이 법의 규범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즉 법의 해석을 목표로 하는 것인 반면, 경험적·분석적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법을 둘러싼 여러 현상을 기술(describe)

1) 줄고,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 분석", 『신문과방송』, 1998년 10월호, p.109.

2)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5.

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3)</sup>

## II. 기존 연구 검토

명예훼손소송의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sup>4)</sup> 지금까지 국내연구는 판결 해석과 법리의 적용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예훼손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법학 연구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 최대권 교수는 세상이 변화여도 법조문만 보고 형식논리적으로 법을 도출하는 법학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제간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나 시점에서 유독 우리 나라 법학만이 인접 학문분야와의 대화나 교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sup>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은 개별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소송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며, 법적 절차과정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태도, 변호사들이 제시한 조언의 유형, 손해배상의 종류와 액수, 소송동기, 승소한 유형 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이렇게 양적 접근방법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행한 국내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무엇보다도 관련 판결 수집이 용이하지 않고 정리,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sup>7)</sup> 아울러 법학연구와 사회과학적 방법의 접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 요인도 있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성과를 가진 미국에서도 법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연구방법(approaches to knowledge)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sup>8)</sup>

연구결과의 부록이나 참조용으로 명예훼손 소송판결을 정리한 사례<sup>9)</sup> 외에 명예훼손판결을 양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로는 필자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 가운데 상급심판결을 기준으로 51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액과 원·피고 승소율 등을 분석한 연구<sup>10)</sup>와 임유진이 공인 관련 판결 내용분석을 행하여 법원의 '공인'의 인식과 그 보도의 한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 등이 있다.<sup>11)</sup>

임유진은 1919년부터 1996년까지 피고가 언론인 또는 언론사인 민·형사 사건판결의 최고심 판결을 기준으로 50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원이 원고의 지위를 일관성 있게 고

3) 앞의 책, p.50.

4) 정진석은 1990년대 언론법제연구 동향을 분석한 "언론법제연구 동향", 『언론중재』, 1999년 겨울호에서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추이를 분석하는 논문도 많이 나왔다. 중재신청과 소송이 늘어나면서 피고소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 일선 기자들이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언론전문지에서도 명예훼손, 윤리 등의 특집을 자주 다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5) 최대권 외,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5, pp.18-19.

6) Randall P. Bezanson, Gilbert Cranberg, John Soloski, *Libel Law and The Press - Myth and Reality*, The Free Press, London, 1987, p.235.

7) 줄고, 앞의 논문, p.119.

8) Jeremy Cohen & Timothy Gleason, *Social Research in Communication and Law*, Sage, 1990, p.11.

9) 이상경,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2년 봄호; 윤철홍,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사법적 구제", 『법과사회』 제14호, 창작과비평사, 1997.

10) 줄고, 앞의 논문.

11) 임유진,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판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 1998.

려하지 않고, 공인에 대한 개념도 명료하게 정의하지 않았으며 공인의 개념이 판결과정에서 고려는 되고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기준으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원고를 직업별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법원이 공인으로 인정한 판결을 분석하여 공인으로 인정한 판결의 언론사 승소율 등을 조사하였다.

일본에서는 平山信一의 연구<sup>12)</sup>를 비롯한 몇몇 명예 관련 민사소송판결 분석한 결과가 있으며, 미국의 연구는 보다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Jeremy Cohen과 Timothy Gleason은 법학의 주류를 이루는 판결분석방법에 근거한 개별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미시적 접근방법과 구별하여, 불법행위(tort)와 밀접한 법학의 연구분야를 “소송의 사회학(sociology of litigation)”으로 개념짓고 이를 명예훼손에 대한 거시적 접근방법(macro approach)이라 명하였다.<sup>13)</sup>

소송연구에 사회과학방법을 적용한 가장 야심적인 시도는 위스콘신 민사소송연구프로젝트(Wisconsin Civil Litigation Research Project)를 들 수 있다. 이 연구 데이터는 5개 연방법원구역의 1,300여 명의 변호사를 인터뷰한 자료와 5개 지역에서 무작위 추출한 2,000건의 민사소송에 관련된 3,8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민사소송에 관련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과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과 소송의뢰인에게 얼마나 생산적인 투자가 되었는가 즉 다시 말하면 소송투자비용의 가치문제를 연구과제로 설정했다. 민

사소송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위스콘신 연구프로젝트는 사회과학연구방법의 사용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불법행위(tort)의 유형 연구에도 이용되었다.<sup>14)</sup>

Marc Franklin 법학 교수는 1976년부터 1979년까지의 534건의 명예훼손소송판결을 분석하고 이후 291건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하였다. Franklin교수는 명예훼손판결에 있어 법 자체뿐만 아니라 정책(policy)도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Times판결과 Gertz판결에도 불구하고 주 항변(state defenses)이 명예훼손소송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심원들이 원고에 대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항소심에서 원고보다 언론사의 승소율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Franklin은 분석단위로 개별사건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명예훼손소송의 체계적 조사로 개별적 사실 이상의 결론을 도출하였다.<sup>15)</sup>

또 다른 소송의 사회학적 접근연구를 시도한 Dennis Hale 언론학 교수는 Warren 재판장과 Burger 재판장 시기의 판결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는 Warren 재판장 시기에는 피고(언론사) 승소율이 87%인데 반해 Burger재판장 시기에는 4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Hale 교수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은 간단치 않으며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판례의 구성요인의 차이점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즉 Warren 재판장 시기 제기되었던 소송사건의 3/4 이상이 요직의 정부관료이거나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sup>16)</sup>

12)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pp.306-307.

13) Jeremy Cohen & Timothy Gleason, *Ibid*, p.85.

14) Randall P. Bezanson, Gilbert Cranberg, John Soloski, *Ibid*, pp.235-236.

15) Jeremy Cohen & Timothy Gleason, *Ibid*, p.86.

16) *Ibid*, p.86.

Anderson은 1791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195년 동안의 고등법원 판결 데이터를 통해 재판(justices)에 이르기 전의 모든 언론매체 관련 명예훼손소송에 대해 경험주의 연구를 행하였다.<sup>17)</sup>

1974년부터 1984년까지 10년 동안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소송을 연구한 Bezanson Randall, Gilbert Cranberg, John Soloski는 언론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64명의 원고와 피고로 제소된 61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원고의 신분(legal status)을 공적인물, 공직자, 사인으로 분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언론보도로 인한 주요 침해내용, 소송목적, 소송동기, 소송비용, 소송기간, 소송전 언론매체와의 접촉 유무와 요구 사항 및 그 만족도, 원고의 나이, 결혼유무, 학력, 수입, 직장경력, 소송에 연루된 매체 유형 등 세부적인 분석유목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sup>18)</sup>

이밖에 Gillmor와 Melanie Grant가 1982년부터 1988년까지 Media Law Reporter에 게재된 언론매체가 피고인 명예훼손소송판결을 분석한 연구<sup>19)</sup>와 LDRC(Libel Defense Resource Center)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 연방 및 50개 주의 언론관련소송의 판결 동향 자료 등이 있다.

한편 언론인과 판사 그리고 일반인 세 집단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판결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추출될 수 있는 다양한 명예훼손적 상황을

설정하여 각 집단의 명예훼손에 대한 관점을 조사한 연구도 있다.<sup>20)</sup> 이 연구는 사실과 의견의 차이, 공인과 사인에 대한 차이, 철회 또는 사과의 영향력 등에 대한 세 집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인은 사실과 의견 내지 논평에 대한 차이점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보였으나 “음탕한 여자(slut)”와 같은 진술과 같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관련한 진술에 대해서는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언론인은 의견면책특권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취소, 철회 등의 영향력에 대해 낙관적으로 사고하는 반면 세 집단 가운데 판사들은 언론사의 취소, 철회와 같은 기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제3자 효과이론(Third-Person Effect)이 명예훼손적 보도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sup>21)</sup>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 사례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의 관점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법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한 것이다.

17) *Ibid.*, p.87.

18) Bezanson, Randail, P. Gilbert Cranberg, John Soloski, *Ibid.*, 1987.

19) Donald M. Gillmor, *Power, Publicity, and the Abuse of Libe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129-152.

20) John Dillon & Eric Covil, "What journalists, judges and public consider defamatory", *Newspaper Research Journal*, 1998, spring.

21) Jeremy Cohen, Timothy Gleason, *Ibid.*, pp.96-97.

## 2.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비롯한 인격권 침해와 재산상 피해 등을 이유로 언론매체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에 이른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소송이나 조정이 성립된 사건 등은 제외하였다.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이다.

## 3. 자료수집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행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1집-제7집)과 『언론중재』, 법원도서관에서 제작한 CD-ROM <법고를 LX 7.5>에 실린 판결을 기본 자료로 하였다. 아울러 관련 문헌이나 신문기사에 소개된 판결을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나 인터넷 사이트<sup>22)</sup>등을 검색하여 조사대상 판결을 추가하였다.

관련 문헌 가운데 1998년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이 정형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언론보도 관련 1996년 이후 손해배상청구현황<sup>23)</sup>>과 1999년 국정감사 자료 <언론사 상대 98년 1월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sup>24)</sup>>이 최근 소송 판결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법원이 작성한 자료에서 일부 누락된 판결이 발견되어 그 어느 자료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었다. 따라서 (1)『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집-제7집, (2)1998년, 1999년 국회에 제출된 국정

감사자료, (3)대법원도서관에서 제작한 CD-ROM 법고를 LX 7.5, (4)언론보도와 『언론중재』, 『언론과 명예훼손』<sup>25)</sup> 등 각종문헌, 법률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교차확인하여 총 141건의 판결을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2건의 판결을 제외한 139건을 조사대상 판결로 선정하였다. 총 139건의 판결 가운데 1심 판결이 85건, 2심 판결이 37건, 대법원 판결이 17건이었다.

<표 1> 분석대상 판결 사례 수

| 연도   | 판결수 | 1심            | 2심            | 3심            |
|------|-----|---------------|---------------|---------------|
| 1990 | 5   | 4             | 1             |               |
| 1991 | 3   | 2             | 1             |               |
| 1992 | 6   | 6             |               |               |
| 1993 | 7   | 5             | 2             |               |
| 1994 | 9   | 4             | 4             | 1             |
| 1995 | 10  | 9             | 1             |               |
| 1996 | 18  | 10            | 7             | 1             |
| 1997 | 20  | 12            | 6             | 2             |
| 1998 | 37  | 18            | 11            | 8             |
| 1999 | 24  | 15            | 4             | 5             |
| 계    | 139 | 85<br>(61.2%) | 37<br>(26.6%) | 17<br>(12.2%) |

## 4. 분석유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의 (1)판결건수, (2)

22) www.netlaw.co.kr, www.yeslaw.com 등 법률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였다.

23) 『기자통신』, 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재단, 1999년 5월호, pp.56-57에 게재.

24) 『기자통신』, 1999년 11월호, pp.150-151에 게재.

25) 차형근 외, 『언론과 명예훼손-판례연구』, 나남출판, 2000 : 최근 발간된 이 책은 1984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 방송, 통신, 잡지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소송 판결문을 수록하고 있다.

원·피고 승소율, (3)인용액, (4)상소율, (5)원고 분류, (6)피고, 즉 언론매체 분류 (7)청구원인, (8)문제된 기사 유형 내지 프로그램 유형 등이다.

판결내용분석을 행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여 기존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거나 참고할 수 없어 세부항목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승소율은 원고의 청구내용 가운데 일부가 인용된 판결도 원고승소로 분류하였으며, 원고나 피고(언론매체)가 복수인 경우 한 언론매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판결도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인용액은 복수의 피고가 손해배상 지급을 명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복수의 피고 가운데 언론매체 혹은 언론인이 아니거나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액수는 제외하였다.

피고(언론매체)분석은 매체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 개인이 피고인 경우 그 개인이 속한 언론매체로 분류하였다.

원고는 공적 인물, 사인, 기업체, 일반단체로 분석단위를 정하였다. 개인이 일반단체(5건)나 기업체와 같이 소를 제기한 경우(2건)는 일반단체나 기업체로 분류하였으며, 기업체와 일반단체가 공동원고인 경우 기업체로 분류하였다.

원고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에 따른 유목 체계는 법원의 판단과 일반적 통념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어 그 명확히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법원은 언론에 의한 공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도 일반 사인과 같은 차원에서 심리하고 있으며,<sup>26)</sup> 공적 인물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을 찾을 수 없고 개별 인물에 대해 공인, 사인 여부만을 밝히고 있는 정도이다.<sup>27)</sup> 따라서 법원이 공인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통념과 미국의 공인이론을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유목체계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가장 컸던 항목은 원고의 지위에 따른 분류와 청구원인이었다. 상호배제적이면서 어느 유목이든 분석내용이 남김없이 분류되어 속할 수 있는 유목체계를 갖추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 IV. 연구결과

### 1. 연도별 판결건수 및 상하급심 판결 경향

1990년대 10년간 전체 판결건수는 139건, 연평균 13.9건으로 1996년부터 증가추세를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1995년까지 10건 이내였던 판결 수가 1996년 18건으로 급증하더니 1997년부터는 매년 20건 이상의 판결이 있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6년간은 평균 6.6건에 불과했으나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의 평균 판결건수는 24.8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취하한 사건을 제외한 개별 소송판결건수를 반영한 1심판결은 86건으로 1심판결을 기준으로 보아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5년까지 평균 5건에 지나지 않던 판결이 1996년부터 매년 10건 이상의 소송판결이 있

26) 박선영,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익성과 진실성 및 현실적 악의”, 『언론중재』, 1998년 겨울호, pp.44.

27) 출고, 앞의 논문, p.121.

어 4년간 평균 13.8건으로 증가한 사실은 소송사건 수의 전체적인 증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하급심별 승소율을 살펴보면 1심판결 85건 가운데 원고가 승소한 사건이 59건으로 69.4%의 승소율을 보인 반면, 2심에서는 75.7%, 대법원 판결에서는 82.4%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즉 상급심으로 갈수록 언론매체가 법정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며 이 또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는 단 1건<sup>28)</sup>에 불과했다.

한편 판결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심과 3심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심판결 결과는 판결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996년을 기점으로 원고 승소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995년까지 6년 동안의 평균 원고 승소율은 73.3%였으나 1996년과 1997년도 2년간 평균 원고 승소율은 54.5%로 저하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원고 승소율은 다시 높아져 1998년부터 1999년 2년간 평균 원고 승소율은 77.0%를 기록했다. 1심판결에서 원고 승소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8년의 83.3%였으며 가장 낮았던 해는 1997년도의 50%였다.

조사대상 판결 139건 가운데 1심 판결이 85건, 2심판결이 37건, 대법원 판결이 17건으로 대략적인 항소율과 상고율을 엿볼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항소율 43.5%, 상고율은 45.9%로 나타났다.<sup>30)</sup>

〈표 2〉 언론관련 손해배상소송 상하급심 판결 분포

| 연도   | 판결건수 | 인용건수         | 1 심             | 2 심             | 3 심             |
|------|------|--------------|-----------------|-----------------|-----------------|
| 1990 | 5    | 4            | 4(3)            | 1(1)            |                 |
| 1991 | 3    | 3            | 2(2)            | 1(1)            |                 |
| 1992 | 6    | 4            | 6(4)            |                 |                 |
| 1993 | 7    | 6            | 5(4)            | 2(2)            |                 |
| 1994 | 9    | 6            | 4(3)            | 4(2)            | 1(1)            |
| 1995 | 10   | 7            | 9(6)            | 1(1)            |                 |
| 1996 | 18   | 12           | 10(6)           | 7(5)            | 1(1)            |
| 1997 | 20   | 12           | 12(6)           | 6(4)            | 2(2)            |
| 1998 | 37   | 28           | 18(15)          | 11(8)           | 8(5)            |
| 1999 | 24   | 19           | 15(10)          | 4(4)            | 5(5)            |
| 계    | 139  | 101<br>72.7% | 85(59)<br>69.4% | 37(28)<br>75.7% | 17(14)<br>82.4% |

( )안은 인용건수

## 2. 연도별 원·피고 승소율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보도내용으로 언론매체가 손해배상소송에 연루된 경우 배상책임을 진 경우가 평균 72.7%로 나타났다.

연도와 원·피고 승소율을 교차분석한 결과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다만 1997년을 정점으로 피고 언론사의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지난 2년간 평균 피고 승소율은 23.0%로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피고 승소율 30.8%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변화가 법원 판결경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가장 많은 판결이 이루어졌던 1998년의 경

28) 서울고법 95나39467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원고가 승리하였다.

29) 물론 이 연구는 소송제기가 아니라 판결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항소 내지 상고를 하고 취하한 경우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반영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우 판결건수 37건 가운데 28건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여 76.3%의 원고승소율을 보였고 1999년도에는 79.1%의 원고 승소율을 나타냈다. 원고 승소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평균 60%를 기록한 1997년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도별 원·피고 승소율

| 연도   | 판결건수 | 인용건수 | 원고승소율 | 피고승소율 |
|------|------|------|-------|-------|
| 1990 | 5    | 4    | 80    | 20    |
| 1991 | 3    | 3    | 100   | 0     |
| 1992 | 6    | 4    | 66.7  | 33.3  |
| 1993 | 7    | 6    | 85.7  | 14.3  |
| 1994 | 9    | 6    | 66.7  | 33.3  |
| 1995 | 10   | 7    | 70.0  | 30.0  |
| 1996 | 18   | 12   | 66.7  | 33.3  |
| 1997 | 20   | 12   | 60.0  | 40.0  |
| 1998 | 37   | 28   | 76.3  | 23.7  |
| 1999 | 24   | 19   | 79.1  | 20.9  |
| 계    | 139  | 101  | 72.7  | 27.3  |

### 3. 연도별 손해배상 인용액 추이 변화

#### 1) 인용액 분포

지난 10년간 인용된 판결의 손해배상액 분포를 살펴보면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25.5%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이 18.4%,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각 17.3% 순이었다.

3천만원 미만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한 판결이 전체 인용판결의 57.1%를 차지해 전체 인용판결의 과반수를 넘었다.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판결은 1996년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1심판결에서 4억원 지급을 명한 이래 지금까지 총 8건이 있다.

〈표 4〉 손해배상 인용액 산정 분포

| 연도   | -5백만원 미만 | -1천만원 미만 | -2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비고        |
|------|----------|----------|----------|----------|----------|---------|---------|-----------|
| 1990 | 3        |          | 1        |          |          |         |         |           |
| 1991 |          |          |          | 2        | 1        |         |         |           |
| 1992 |          |          |          | 2        | 2        |         |         |           |
| 1993 |          | 2        | 1        | 1        | 1        | 1       |         |           |
| 1994 |          | 1        | 1        | 2        |          | 2       |         |           |
| 1995 |          | 1        | 2        | 3        |          | 1       |         |           |
| 1996 |          | 1        | 3        | 2        | 3        | 2       | 1       |           |
| 1997 |          | 1        | 2        | 2        | 3        | 3       | 1       |           |
| 1998 |          | 1        | 3        | 7        | 6        | 5       | 4       | *미확인 2건제외 |
| 1999 |          | 3        | 5        | 4        | 1        | 3       | 2       | *미확인 1건제외 |
| 계    | 3        | 10       | 18       | 25       | 17       | 17      | 8       |           |

\* 1998년과 1999년의 미확인 3건은 국정감사자료에 수록되었으나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한 판결이다.

#### 2) 연도별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 및 중앙값 인용액

지난 10년간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은 3,702만원, 중앙값(median) 인용액은 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평균 손해배상액은 1996년도의 5,950만원이나 중앙값 인용액은 1997년과 1998년도 두 해에 기록된 3,000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도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이 급증한 것은 김현철 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 4억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전체적인 기록을 높인 것이라 생각된다.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은 1996년 이래 계속 3,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인용액이 다소 상승했다고 볼 수 있으나 중앙

값 인용액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동안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중앙값과 달리 평균 인용액이 증가한 것은 특정 개별 사건에서의 거액 손해배상액이 평균값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극단값(extreme data)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술평균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술평균의 약점을 피하기 위해 중앙값을 함께 고려하여 인용액의 증가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증가 추이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중앙값 인용액이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몇몇 특징적인 사건을 제외한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손해배상액은 물가상승율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금액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평균 인용액 및 인용액 중앙값  
(일부인용판결 대상)

단위: 만원

| 연도   | 평균 인용액 | 중앙값 인용액 | 비고         |
|------|--------|---------|------------|
| 1990 | 520    | 400     |            |
| 1991 | 2,667  | 2,500   |            |
| 1992 | 2,750  | 2,500   |            |
| 1993 | 2,833  | 1,500   |            |
| 1994 | 2,833  | 2,400   |            |
| 1995 | 2,028  | 2,000   |            |
| 1996 | 5,950  | 2,500   |            |
| 1997 | 3,550  | 3,000   |            |
| 1998 | 4,658  | 3,000   | *미확인 2건 제외 |
| 1999 | 3,228  | 2,000   | *미확인 1건 제외 |
| 계    | 3,702  | 2,050   |            |

한 법학자는 법원이 책정한 이러한 낮은 위자료액의 문제점에 대해 언론에 의해 치명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며, 가해자측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이러한 위자료액은 언론기관에 사전 주의의무와 사후 시정 조치를 더욱 소홀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sup>30)</sup>

### 3) 고액 배상 판결 경향

1990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의 인용판결 30건 중 단 8건(26.7%)만이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나 1996년부터 1999년 4년간은 71건 가운데 34건(47.9%)이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총 25건으로 전체 인용판결의 25.5%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25건의 판결 가운데 3건을 제외한 22건이 1996년 이후에 내려진 것이었으며, 1억원 이상의 고액 손해배상 판결 역시 1996년 이후에 8건이 있어 1996년 이후 손해배상액의 고액 판결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그동안 보상적 손해라는 개념만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정도의 배상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이 일부 참작되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sup>31)</sup>

## 4. 피고(언론매체) 분석

### 1) 소송대상 언론매체 수 및 유형

30) 윤홍철, 앞의 논문, p.88.

31) 황덕남, "언론피해소송 추이와 판결경향, 언론피해구제제도", 『명예훼손소송과 언론자유』,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토론회 주제논문집, 1999, p.7.

발행언론사가 아닌 매체유형을 기준으로 일간신문, 방송, 주간지, 월간지, 통신매체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1990년대 10년간 소송에 연루된 언론매체 수는 197개였다. 전체 판결 수 139건보다 언론매체 수가 많은 이유는 다수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197개 매체 가운데 일간신문이 108개 매체로 54.8%를 차지했으며, 방송매체가 47개(23.9%), 월간지 24개(12.2%), 주간지 14개 매체(7.1%)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에 연루된 일간신문 가운데 지방일간지는 29개 매체였다.

방송매체를 상대로 소송이 1997년부터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의 경우 전체 언론매체 21개 가운데 방송매체가 9개 매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90년대에 방송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의 68.1%가 1997년 이후에 내려진 것이었다.

## 2) 매체별 승소율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 언론매체별로 승소율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지나 월간지의 기사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고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지는 14개 매체 가운데 단지 1개 매체, 월간지는 24개 매체 중 2개 매체만이 승소했을 뿐이다.

소송사건의 피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일간신문의 경우 41.7%의 피고 승소율을 보였으며, 방송매체는 일간지보다 다소 낮은 36.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지방신문의 경우 41.4%의 승소율을 보여 중앙일간지나 별 차이가 없었다.

〈표 6〉 손해배상소송사건 피고(언론매체) 분류

| 연도   | 판결  | 일간신문             | 방송              | 주간지           | 월간지           | 통신          | 계                |
|------|-----|------------------|-----------------|---------------|---------------|-------------|------------------|
| 1990 | 5   | 2(1)             | •               | 1             | 2             | •           | 5(1)             |
| 1991 | 3   | 1                | •               | 2             | •             | •           | 3                |
| 1992 | 6   | 7(1)             | 1(1)            | 2             | •             | 1(1)        | 11(3)            |
| 1993 | 7   | 10(7)            | 2               | 2             | •             | 2(1)        | 16(8)            |
| 1994 | 9   | 8(7)             | 2(1)            | 1             | 3             | •           | 14(8)            |
| 1995 | 10  | 15(6)            | 5(3)            | 1             | 1             | •           | 22(9)            |
| 1996 | 18  | 22(13)           | 5(1)            | 2             | 2             | •           | 31(14)           |
| 1997 | 20  | 8(3)             | 9(5)            | 1             | 3(1)          | •           | 21(9)            |
| 1998 | 37  | 25(5)            | 10(3)           | 2(1)          | 9(1)          | •           | 46(10)           |
| 1999 | 24  | 10(2)            | 13(3)           | •             | 4             | 1           | 28(5)            |
| 계    | 139 | 108(45)<br>41.7% | 47(17)<br>36.2% | 14(1)<br>7.1% | 24(2)<br>8.3% | 4(2)<br>50% | 197(67)<br>34.0% |

\* 기자, 발행인, 자유기고가 등이 피고인 경우 소속 언론사에 분류

\* ( )은 피고승소건수

## 3) 매체별 손해배상액

언론매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언론매체에 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액을 비교해 보면 다른 매체보다 월간지를 상대한 한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간신문이나 방송매체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2,100~2,600여 만원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간지와 월간지의 배상액은 다소 높게 조사됐다. 주간지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3,100만원이었으며 특히 월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판결에서는 평균 4,845만원으로 이는 일간신문이 부담한 평균 손해배상액 2,154만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처럼 일간신문이나 방송매체보다 주간지나 월간지의 손해배상액 부담이 높은 것은 법원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월간지는 "일간신문이나 방송과는 달리 취재시간에 상당한

여유가 있다”<sup>32)</sup>거나 “월간지이므로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언론매체보다 신중한 사실확인의 노력이 필요”<sup>33)</sup>하다고 보는 견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매체별 손해배상액은 미국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412,500달러인 반면 인쇄매체는 189,000달러로 방송매체가 인쇄매체보다 상당히 높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4)</sup>

우리 나라의 경우 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간의 손해배상액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법원이 매체의 성격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 언론매체별 손해배상액

| 매체유형 | 평균인용액 | 비 고             |
|------|-------|-----------------|
| 일간신문 | 2,154 | 63건 중 미확인 4건 제외 |
| 방 송  | 2,683 | 30건 중 미확인 1건 제외 |
| 주간지  | 3,100 |                 |
| 월간지  | 4,845 |                 |
| 통신   | 500   |                 |

단위:만원

#### 4) 기자 개인이 공동피고인으로 제소된 판결의 결과

전체 조사대상 판결 139건 가운데 57건이 기자나 객원기자, 발행인, 편집인, 자유기고가 등 언론인 개인이 공동피고로 제소되었으며 그 비율은 4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인 개인이 공동피고로 제소된 57건 가운데 단지 9건만이 언론인

에게 면책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즉 언론인 개인이 피고로 제소된 경우의 승소율은 15.8%로 전체 피고 승소율 27.3%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 개인이 소송에 연루된 비율도 높게 나타났지만 판결에 이른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는 조사결과는 일선 기자들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가 배상액을 전액 지불하던 관례가 최근 소송이 증가하면서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변화하고 있어<sup>35)</sup> 현장기자들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표 8〉 언론인 개인이 공동피고인 판결 현황

| 연 도  | 판 결 수 | 언론인 공동피고인 사건수 | 언론인 승소건수 |
|------|-------|---------------|----------|
| 1990 | 5     | 3             | •        |
| 1991 | 3     | 2             | •        |
| 1992 | 6     | 3             | 1        |
| 1993 | 7     | 1             | •        |
| 1994 | 9     | 3             | •        |
| 1995 | 10    | 5             | 1        |
| 1996 | 18    | 4             | 1        |
| 1997 | 20    | 7             | 2        |
| 1998 | 37    | 18            | 3        |
| 1999 | 24    | 11            | 1        |
| 계    | 139   | 57            | 9(15.8%) |

#### 5) 문제된 기사(방송) 유형

소송을 유발한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와

32) 서울지법 1996. 8. 22.판결 94가합98592

33) 서울지법 1998. 12. 4.판결 97가합90841

34) www.ldrc.com/damag00.html

35) 천원주, “명예훼손소송, 언론사대비책은”, 『신문과방송』, 2000년 4월호, pp.63-64.

통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예상했던 바대로 대부분이 스트레이트 기사로 밝혀졌다. 전체 명예훼손소송의 대상 150개 보도 가운데 스트레이트 기사가 127개로 84.7%를 차지했으며, '인터뷰 및 사진'이 7건, '기사와 사진' 그리고 '평론'이 문제된 경우가 각 4건, 사설 및 칼럼이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진이 문제된 경우가 8%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었다.

특이한 점은 사진을 포함하는 보도내용이 소송판결에까지 이른 경우 언론사 패소율이 다른 기사유형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사진이 문제된 12건 가운데 단지 2건만이 언론사 면책으로 법원이 판단하였다.

만평으로 인한 소송판결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경향신문 만평을 문제삼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풍자만화의 고유한 특징인 풍자, 과장, 은유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필자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sup>36)</sup>

〈표 9〉 소송대상 기사 유형

| 기사유형     | 판결 수    | 비중    |
|----------|---------|-------|
| 표제 및 기사  | 2(2)    | 1.3%  |
| 사진 및 기사  | 5(0)    | 3.3%  |
| 사설 및 칼럼  | 3(2)    | 2.0%  |
| 만평(만화)   | 2(2)    | 1.3%  |
| 평론       | 4(1)    | 2.7%  |
| 인터뷰 및 사진 | 7(2)    | 4.7%  |
| 스트레이트기사  | 127(41) | 84.7% |
| 계        | 150(50) | 100%  |

( )안은 피고측 승소 건수

방송매체의 경우 소송대상 프로그램 중 뉴스프로그램이 59.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21.3%, 드라마가 12.8% 순이었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언론사측 승소율을 비교해 보면 시사고발프로그램이 문제된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이 문제된 10건 가운데 단지 1건만이 언론사 면책 판결이 내려진 반면 드라마가 문제되어 판결에 이른 경우는 6건 가운데 3건이 언론사가 승소하였다.

사회고발 프로그램 내지 탐사프로그램이 문제된 경우 매체 승소율이 가장 낮은 한 요인은 사회고발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회고발프로그램과 같은 기획프로그램은 "속보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사전에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오보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다른 언론매체보다 사전에 방영,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실성의 확인에 대하여 훨씬 무거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sup>37)</sup>

개별 사건별로 살펴보면 시사고발프로그램이 문제된 개별 사건은 총 6건이며, 드라마는 2건이다. 드라마가 연루된 사건은 한국방송공사가 1995년 8월 5일부터 방영한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 프로그램에서 김구 선생의 암살을 선동·배후조종한 것으로 묘사된자의 유족이 소를 제기한 사건<sup>38)</sup>과 문화방송이 방송한 "김형욱 청문회"제목의 논픽션 다큐멘터리 라디오드라마 내용을 문제삼은 사건이었다.<sup>39)</sup>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 프로그램

36) 서울지법 1998. 8. 12.판결(98가합15397), 서울고법 1998. 12. 24.판결(98나47575)

3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8. 3.판결 (94가합14378)

38) 대법원 1998. 2. 27.판결(97다19038)

39) 대법원 1998. 5. 8.판결 (97다34563), 『언론중재』, 1998년 가을호, pp.159-161.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사건 드라마 내용이 그 진실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억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암살사건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과 국회조사보고서 기록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표 10〉 소송대상 방송프로그램 유형

| 프로그램유형   | 판 결 수  | 비 중   |
|----------|--------|-------|
| 시사고발프로그램 | 10(1)  | 21.3% |
| 드 라 마    | 6(3)   | 12.8% |
| 정보프로그램   | 3(1)   | 6.4%  |
| 뉴 스      | 28(12) | 59.6% |
| 계        | 47(17) | 100%  |

( ) 피고측 승소 건수

## 5. 원고 분석

### 1) 원고의 신분

원고의 유형화는 먼저 개인과 기업체, 일반단체로 먼저 나누고 개인의 신분에 따라 공인과 사인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복수의 원고가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고의 유형화 기준을 따라 분류했음을 밝혀둔다.

· 일반단체와 개인이 공동 원고인 경우 :

일반단체로 분류

· 기업체와 개인이 공동 원고인 경우 :

기업체로 분류

· 유명인과 사적 인물이 공동원고인 경우 :

유명인으로 분류

현재 우리 나라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공적 인물 여부는 판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초상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나 익명보도원칙,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법원 판단에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기에 원고의 신분에 따른 분석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판결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을 찾을 수 없고 개별 인물에 대한 공인, 사인 여부만을 간헐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도이다.<sup>40)</sup>

따라서 원고의 지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법원이 원고의 신분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행연구와 미국의 ‘공적 인물(public figure)’ 이론을 참조하여 공인을 크게 유명인과 공직자(public official)로 분류하였다.

한상범 교수는 한국법상의 공인·유명인을 정치인, 공무원, 공인, 기업인과 사회단체 지도자, 유명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공인의 범주 안에 또 다른 공인을 분류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위로 보아서 공공인(公共人)이 되는 사례 즉,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교원, 변호사, 의사, 약사, 언론인, 성직자 등이 해당한다고 보았다.<sup>41)</sup>

판례에 나타난 공인을 분석한 앞서 소개한 연구에서는 공인을 공무원, 정치인, 공직자의 친인척, 연예인, 언론인, 기업인, 기타로 구분하였다.<sup>42)</sup>

40) 줄고, p.121.

41) 한상범, “보도와 공인·유명인”, 『언론중재』, 1986. 여름, pp17-19.

42) 임유진, 앞의 글, pp.39-42.

미국의 '공적 인물' 이론에 따르면 New York Times 사건과 Garrison v. Louisiana 사건에서 공직자에 대한 민·형사적 명예훼손에 있어서 표현행위자의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1967년 Gerts 사건에서 공적인 인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즉 공적 인물을 아주 광범위한 명성을 얻어서 모든 면에서 공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일반적 공적 인물(general purpose public figure)"과 특정한 공적인 논쟁에만 자발적으로 뛰어들어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공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 purpose or vortex public figure)"로 분류된다.<sup>43)</sup>

하지만 제한적 공적 인물은 가장 논란되는 모호한 개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명확한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판례에 나타난 공적 인물의 제 유형을 참조하기로 하였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일반적 공적 인물은 저명한 작가나 배우, 운동선수, 백만장자, 전국적 인기프로그램의 앵커맨, 대기자 등을 들 수 있다.<sup>44)</sup>

한편 미국법리에서 현실적 악의의 입증요구되는 공직자는 정부의 문제를 통제할 실질적 책임을 가지거나, 그러한 책임을 가진 것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는 공직 체계 내의 사람이라고 1979년 미 연방대법원이 Rosenblatt v. Baer 사건에서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선거직 공무원은 그 업무의 중요도에 비추어 예외없이 현실적 악의의 입증이 요구되는 데 반하여 임명직 공무원의 경우는 직급이 아주 낮은 공무원과 같이 공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된다.<sup>45)</sup> 판례는 공직에 대한 입후보자, 법관, 검사, 경찰 및 군의 고위 간부, 대통령과 지방의 정책 결정위원, 교육계 고위 행정관 등을 공직자로 본다.<sup>46)</sup>

위와 같은 미국의 공직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원용하여 대통령, 검사, 전·현직 국회의원, 도의원, 선거입후보자를 공직자로 분류하였다. 한편 유명인은 유명 작가(공지영), 유명 연예인(김성희, 최유리, 진희경), 임수경, 줄리문, 서울방송 앵커,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의 아들 등을 유명인으로 분류하였다.<sup>47)</sup>

## 2) 원고 유형별 판결 수와 승소율

앞서 제시한 기준으로 소송판결의 원고를 분류한 결과 사인이 원고인 경우가 전체 137건의 판결 가운데 58.4%인 80건으로 조사됐으며 유명인이 28건(20.4%), 공직자가 12건(8.8%), 일반단체가 11건(8.0%)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 즉, 유명인 혹은 공직자가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이른 사례가 29.1%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최근 2년간 공직자가 제소한 판결이 전체 판결 12건 가운데 66.7%인 8건으로 공직자 소송판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 유형별로 승소율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에서 90% 이상 승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공직자가 언론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12건의 판결 가운데 1건을 제외한 11건에서 일부 승소하여 91.6%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43) 표성수, 앞의 책, pp.42-43.

44)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p.282 ; 표성수, 앞의 책, p.101.

45) 표성수, 앞의 책, p.99.

46) 박용상, 앞의 책, p.288.

47) 영화배우 윤정희 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영화계를 은퇴하여 프랑스에서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96가합31227) 제외하였다.

이는 사인이 원고인 경우 75%, 유명인이 67.6%, 기업체 66.6%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승소율이다. 일반단체는 가장 낮은 45.5%의 승소율을 보였다.

〈표 11〉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원고 분류

| 연 도  | 공 인           |                 | 사 인           | 기업체           | 일반단체           | 판결수               |
|------|---------------|-----------------|---------------|---------------|----------------|-------------------|
|      | 유명인           | 공직자             |               |               |                |                   |
| 1990 | 1(1)          |                 | 3(3)          |               | 1              | 5(4)              |
| 1991 |               |                 | 3(3)          |               |                | 3(3)              |
| 1992 | 2(2)          | 1(1)            | 2             | 1(1)          |                | 6(4)              |
| 1993 | 3(2)          |                 | 4(4)          |               |                | 7(6)              |
| 1994 | 3(2)          | 1(1)            | 5(3)          |               |                | 9(6)              |
| 1995 | 2(2)          | 1(1)            | 7(4)          |               |                | 10(7)             |
| 1996 | 6(5)          |                 | 10(6)         | 1             | 1(1)           | 18(12)            |
| 1997 | 3(1)          | 1(1)            | 13(10)        | 1             | 2              | 20(12)            |
| 1998 | 7(3)          | 5(4)            | 16(14)        | 3(3)          | 6(4)           | 37(28)            |
| 1999 | 3(3)          | 3(3)            | 17(13)        |               | 1(0)           | 22(19)            |
| 계    | 30(21)<br>70% | 12(11)<br>91.6% | 80(60)<br>75% | 6(4)<br>66.6% | 11(5)<br>45.5% | 139(101)<br>72.7% |

( )안의 수치는 원고 승소 판결

### 3) 원고 유형별 인용액

원고 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원고가 복수인 경우 이를 먼저 원고 유형별로 분류하고 인용받은 경우에 한하여 1인당 인용액을 분석하였다. 공직자나 유명인은 복수 원고인 사건이 없었으며 여러 명이 함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사인이 대부분이었다.

원고별로 1인당 손해배상액을 분석한 결과 사인과 유명인 및 공직자의 인용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는 평균 약 5,400만원, 유명인은 약 4,190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 받은 데 반해 일반 사인은 평균 1,613만원

에 불과하였다. 공직자의 승소율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90%가 넘으며 그 인용액 또한 다른 원고들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인이 소를 제기하여 인용받는 금액은 공직자 인용액의 1/3 수준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용액 평균이나 중앙값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체는 3,500만원, 일반단체는 2,647만원으로 조사됐다. 기업체가 소를 제기한 사건 가운데 언론보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경우는 없었다. 재산상 손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건은 개인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기업체의 인용액이 재산상 손해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표 12〉 원고 유형별 1인당 인용액 차이

| 원고분류    | 평균인용액 | 비 고         |
|---------|-------|-------------|
| 유 명 인   | 4,191 |             |
| 공 직 자   | 5,409 |             |
| 사 인     | 1,613 | 108인 공동원고   |
| 기 업 체   | 3,500 | 4인 공동원고     |
| 일 반 단 체 | 2,647 | 17개 단체 공동원고 |

단위: 만원

### 4) 청구원인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은 명백한 개별권익만으로 제기되기보다 각각의 권익이 결부되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목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법현상에 있어서의 정의나 이념의 문제 같은 것은 실증적 자료를 들어 증명한다는 것이 지난(至難)한 문제이며 이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sup>48)</sup>이 새삼 느껴

48) 최대권, 『법사회학』, p.18.

지는 분류 작업이었다. 또한 선행 국내 연구가 미비하여 이를 참조할 수도 없었으며 외국문헌의 유사사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Franklin은 범죄사건 관련 피해(Criminal activity), 도덕적 실추(moral failing), 사업 혹은 직업적 피해(business or professional incompetence) 이상 세 항목으로 원고의 주장을 유형화하였다. Bezanson, Randall, P. Gilbert Cranberg, John Soloski는 기사내용에 대한 원고와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사생활 침해(personal or private activity), 사업·직업적 활동에 대한 피해(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y), 공공 혹은 정치적 활동에 대한 피해(public or political activity), 범죄사건 관련 피해(criminal activity)로 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였다.<sup>49)</sup> Gillmor는 1)명성, 2)사회적 지위, 3)사업, 4)명성 및 사회적 지위, 5)명성 및 사업, 6)사회적 지위 및 사업, 7)사회적 명성·지위 및 사업, 8)기타로 분류하였다.<sup>50)</sup>

Franklin의 소송동기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기사내용의 허위성(story was false) 65.4%, 직업·전문가로서의 명성에 대한 피해(damaged business or professional reputation) 20.4%, 개인 명성의 실추(damaged personal reputation) 6.8%, 사생활침해(violated privacy) 4.3%, 기타 3.1%로 조사하였다.<sup>51)</sup>

또한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main legal theory)을 1)명예훼손, 2)사적 사항공표, 3)도용(appropriation), 4)허위공표, 5)침입(intrusion), 6)사적사항 공표 및

침입, 7)사적사항 공표 및 왜곡, 8)허위공표 및 도용, 9)사적사항 공표 및 도용, 10)기타와 같이 10가지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 명예훼손이 7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사적사항 공표가 6.4%, 도용이 5.7%, 허위공표가 2.7% 순으로 나타났다.<sup>52)</sup>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항목이 있으나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분석 항목을 배제하고 원고주장과 주요 법적 쟁점 등 판결내용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피의사실공표, 신용훼손, 기타의 범주로 청구 원인 항목을 구분하였다. 이를 다시 명예훼손은 1)명예훼손, 2)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3)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세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집단명예훼손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상대적 개념으로서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단체 또는 법인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면서도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집단만을 표시하는 명예훼손을 의미할 수도 있다.<sup>53)</sup> 여기서는 호스텍스 출신 여학생 수기사건을 비롯, 전자의 사례와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이 사건은 한 여성월간지가 “호스텍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이라는 제하로 전주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의 여학생이 운동권 선배와의 연애 끝에 배신당한 후 겪은 호스텍스 생활을 수기형식으로 게재하자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49인 중 15인이 명예훼손

49) Bezanson, Randall, P. Gilbert Cranberg, John Soloski, Libel Law and the Press : Myth and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87, pp.12-13.

50) Gillmor, Ibid, p.138.

51) Bezanson, Randall, P. Gilbert Cranberg, John Soloski, Ibid, p.21.

52) Ibid, pp.240-241.

53) 한위수, “집단명예훼손소송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1998년 여름, p.57.

손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sup>54)</sup>

사생활침해는 사적사항공표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그 범주로 하였으며<sup>55)</sup>, 피의사실공표는 범죄사건보도와 관련하여 보도대상이 된 혐의자나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사항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항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 명예훼손이 65.4%로 가장 많았으며, 피의사실공표 15.4%, 사생활 침해 13.2%, 신용 및 명예훼손 5.1%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총 7건 가운데 5건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지만 정신적 손해부분만 인정했을 뿐 실제로 재산상 손해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았다.

우리 법원은 보도로 인한 영업방해를 인정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피해 금액의 상당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sup>56)</sup>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여 도산지경에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매출액의 감소가 문제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57)</sup>

청구원인별 원·피고 승소율을 조사한 결과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피고측(언론사)의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언론사 승소율은 5.6%에 불과하여 대부분 패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의사실공표와 같이 범죄사건보도가 문제된 경우 23.8%의 언론사 승소율을

<표 13> 연도별 청구원인

| 연도   | 명예훼손 |               |                 | 사생활 침해 | 피의사실공표 | 신용 및 명예훼손 | 알권리 방송기대권 | 판결수        |
|------|------|---------------|-----------------|--------|--------|-----------|-----------|------------|
|      | 명예훼손 |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 집단(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        |        |           |           |            |
| 1990 | 3    | 1             | 1               |        |        |           |           | 5          |
| 1991 | 3    |               |                 |        |        |           |           | 3          |
| 1992 | 3    | 1             |                 |        | 2      |           |           | 6          |
| 1993 | 2    | 1             |                 | 1      | 3      |           |           | 7          |
| 1994 | 3    | 2             |                 | 1      | 2      | 1         |           | 9          |
| 1995 | 5    |               |                 | 2      | 3      |           |           | 10         |
| 1996 | 9    |               | 3               | 2      | 4      |           |           | 18         |
| 1997 | 10   |               | 1               | 4      | 1      | 3         | 1         | 20         |
| 1998 | 16   | 1             | 9               | 5      | 2      | 2         |           | 35미확인 2건제외 |
| 1999 | 15   |               |                 | 3      | 4      | 1         |           | 23미확인 1건제외 |
| 계    | 69   | 6             | 14              | 18     | 21     | 7         | 1         | 136        |

54) 서울지법 1995. 5. 14.판결 94가합91515

55) 한위수 판사는 "우리 나라는 독일, 일본에서와 같이 초상권, 성명권 등을 프라이버시권과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나 초상권, 성명권은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1999년 여름, p.49.

56) 부산지법 95가합18232, 부산고법 97나3873 판결.

57) 서울고법 1998. 7. 9.판결 97나47790

보였다. 한편 신용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28.6%,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는 32.6%의 승소율을 기록, 상대적으로 언론사 승소율이 높았다.

〈표 14〉 청구원인별 원·피고 승소율

| 청구원인      | 원고승소율 | 피고승소율 |
|-----------|-------|-------|
| 명예훼손      | 67.4% | 32.6% |
| 사생활침해     | 94.4% | 5.6%  |
| 피의사실공표    | 76.2% | 23.8% |
| 신용 및 명예훼손 | 71.4% | 28.6% |

## V. 요약 및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수반되지 않은 채 제기되는 선입견과 편견을 불식하고, 법원의 판결경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1996년 이후 언론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5년까지 매년 평균 6.6건에 불과하던 판결 건수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 동안 평균 24.8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상급심으로 갈수록 언론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언론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여 승리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였다.

둘째, 언론사의 승소율은 27.3%로 언론매체

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판결에 이른 경우 10건 가운데 7건은 언론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피고의 연도별 승소율의 뚜렷한 변화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최근 2년간의 원고 승소율이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상급심 판결과 공인 관련 판결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지난 10년간 평균 손해배상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용액의 중앙값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인용된 배상액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0년간 평균 배상액은 3,702만원, 인용액의 중앙값은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몇몇 사건에서 1억원이 넘는 배상결정을 내린 판결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인용액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다.

넷째, 일간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 승소율도 통신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방송매체를 상대로 한 소송 판결이 199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매체별 승소율은 주간지와 월간지가 가장 낮았다. 한편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일간신문이나 방송매체보다 주간지나 월간지의 손해배상 부담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월간지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일간신문의 2배가 넘는 높은 금액으로 조사됐다.

기자 개인이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는 전체 판결의 40.1%에 달하며, 이 경우 피고측의 승소율은 16.4%로 전체 피고 승소율 27.9%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소송 대상 기사 내지 방송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정기간행물은 사진이 문제된 경우 언론사 패소율이 다른 기사 유형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방송의 경우 시사교발프로그램이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난 10년간 사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 2년간 공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의 승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가 소를 제기한 12건 중 11건이 승소했으며, 인용액도 평균 5,409만원으로 일반인의 평균 인용액 1,613만원보다 3배가 많았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피의사실보도를 문제삼은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문제된 경우 언론사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2.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1990년대 후반들어 판결건수가 급증한 것은 명예훼손소송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피고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물론 몇몇 사건에서 고액의 손해배상판결이 있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원의 위자료액은 일부 언론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그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만큼 고액화의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본질에 대해 전통적인 손해배상설의 입장에서 손해의 전보적인 의미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사적 제재의 성격을 가미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재적인 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자료액을 현재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sup>58)</sup>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인 특히 공직자의 언론소송 제기 경향과 소송결과는 언론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과 권한, 영향력, 매체 접근 가능성 및 용이도 등에 비추어 일반 사

인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많은 주장들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법원은 공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도 일반 사건과 동일한 차원에서 심리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알 권리를 내세워 공인에 대한 모든 것을 보도할 수 있다는 언론의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공인이라 하여도 공적 직무영역과 구별되는 사사로운 내밀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대비책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각 언론사는 변호사기사열람제를 도입하거나 명예훼손소송에 대비한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도 했으나 아직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기자 개인이 소송에 연루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기자 본인의 명백한 직무태만이 아니라면 언론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소송노이로제 현상을 보이는 일선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권영성, "자유언론과 책임언론을 위한 언론법제-신문의 경우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8집, 1997.
- 김형진, "언론보도와 인격권" 『정보법학』 제3호, 1999.
- 박선영,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공익성과 진실성 및 현실적 악의",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8. 겨울.
-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 윤철홍,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사법적 구제", 『법과 사회』 제14호, 창작과비평사, 1997.

58) 윤홍철, 앞의 논문, p.97.

이상경,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2. 봄.

이재진,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3-4호, 1999.

이재호, "통계로 본 헌법재판-헌법재판소 창설 3주년을 맞아-", 『헌법재판자료집』 제4집, 1991.

임유진,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판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 1998.

정진석, "언론법제연구 동향",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9. 겨울.

조준원,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 분석", 『신문과방송』, 1998년 10월호.

차형근·조병래·최영훈 편저, 『언론과 명예훼손-판례연구』, 나남출판, 2000.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최대권 외,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5.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한상범, "보도와 공인·유명인",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86. 여름.

한위수, "집단명예훼손소송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8. 여름.

"프라이머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9. 여름.

황덕남, "언론피해소송 추이와 판결경향, 언론피해구제제도", 『명예훼손소송과 언론자유』,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토론회 주제논문집, 1999.

Bezanson, Randall, P. Gilbert Cranberg, John Soloski, *Libel Law and the Press : Myth and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87.

Gillmor, Donald M., *Power, Publicity, and the Abuse of Libe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Jeremy Cohen, Timothy Gleason, *Social Research in Communication and Law*, Sage, 1990.

John Dillon, Eric Covil, "What journalist, judges and public consider defamatory", *Newspaper Research Journal* Vol. 19, No. 2, 1999.

Gyong Ho Kim, Anna R. Paddon, "Uniform Correction or Clarification of Defamation Act : An Alternative to Libel Suits", *Communications and the Law*, Vol.20, No.3, 1998.

Ronald Farrar, "News Councils and Libel Actions", *Journalism Quarterly*, 1986, Autumn.

< 조사대상 판결 목록 >

1990년 (5건)  
 서울지법남부지원 89가합18505, 서울고법 89나36528, 서울민사지법 89가합51612, 서울민사지법 90가합15032, 서울지법 90가합35265

1991년 (3건)  
 서울지법 91가합52649, 서울지법 90가합10957, 서울고법 91나27329

1992년 (6건)  
 서울지법남부지원 89가합13975, 서울민사지법 91가합3033, 서울민사지법 91가합78412, 서울민사지법 91가합82923, 서울민사지법 91가합78429, 서울지법 92가단58180

1993년 (7건)  
 서울지법남부지원 92가합18321, 서울민사지법 93

가합25344, 서울민사지법 92가합48463, 서울민사지법 92가단57989, 서울지법남부지원 93가합2361, 서울고법 92나59071, 서울지법 92나36013

1994년 (9건)

서울민사지법 93나31886, 서울지법서부지원 93가합14585, 서울지법북부지원 93가합3572, 서울민사지법 94가합36754, 대법원 93다36622, 서울지법남부지원 93가합21447, 서울고법 93나39814, 서울고법 93나22236, 서울고법 93나43059

1995년 (10건)

서울지법남부지원 94가합14378, 서울지법 94가합17753, 서울지법남부지원 95가합3788, 서울지법남부지원 95가합13495, 수원지법성남지원 95가합3509, 서울지법 94가합53636, 서울지법 93가합54908, 인천지법 94가합16812, 서울지법 94가합63176, 서울고법 94나35185

1996년 (18건)

서울지법 95가합95910, 서울고법 96나19309, 서울고법 96나5348, 서울고법 96나282, 서울고법 95나41965, 서울지법동부지원 95가합14198, 서울지법 95가합90717, 부산지법 95가합15356, 서울고법 95나39467, 서울지법 94가합91515, 서울지법 95가합91515, 서울고법 95나25819, 서울고법 95나24946, 서울지법서부지원 94가합5021, 대법원 94다33828, 부산지법 95가합9634, 서울지법 94가합98592, 서울지법 남부지원 93가합11471

1997년 (20건)

서울지법남부지원 96가합12130, 부산고법 96나11761, 대법원 97다24207, 서울고법 96나39389, 춘천지법강릉지원 96가합2272, 서울지법서부지원 96가합10010, 서울지법 95가합52012, 서울지법 96가합23110, 서울고법 96나50997, 부산지법 95가합18232, 서울지법 남부지원 96가합12727, 서울고법 96나

4659, 서울지법 96가합82966, 서울지법 96가합31227, 서울고법 97나14240, 서울지법 95가합94047, 서울지법남부지원 97가합8022, 서울지법 95가합112716, 서울고법 96나36700, 대법원 96다38032

1998년 (37건)

서울지법 98가소430962, 서울지법 96가합84238, 대전지법홍성지원 97가합2440, 서울고법 97나43156, 서울고법 98나18577, 서울고법 97나23466, 대법원 98다9892, 서울고법, 97나47141, 부산고법 97나3873, 대법원 97다34563, 서울고법 97나16826, 서울고법 57360, 대법원 98다24624, 서울지법남부지원 97가합6965, 서울지법 97가합96337, 대전지법 96가합11079, 대전고법 98나3021, 서울고법 97나47790, 대법원 96다11327, 대법원 96다36395, 대법원 97다58590, 서울지법 97가합93499, 서울지법 97가합90841, 서울지법 97가합76326, 서울지법 97가합37581, 서울지법 97가합70274 : 97가합70281(병합), 서울지법 96가합72242, 서울지법 97가합88220, 대법원 96다17257, 부산고법 96나8789, 서울지법 98가합15397, 서울고법 98나47575, 서울지법 98가합18280, 서울지법 98가합8290, 서울지법 98가합38307, 서울지법동부지원 97가합15581, 대법원 97다19038

1999년 (24건)

서울지법 남부지원 99가합5638, 서울지법 98가합110179, 서울지법 98가합84102, 수원지법 98가합19427, 서울지법서부지원 99가합1154, 서울고법 99나13432, 서울지법남부지원 98가합16587, 대법원 97다10215, 10222, 대법원 98다31356, 서울지법서부지원 98가합11581, 서울지법북부지원 98가단779, 서울지법 99나49001, 서울지법남부지원 98가합9329, 서울지법 99가합14391, 서울지법 98가합51935, 서울지법 98가합107104, 서울지법남부지원 99가합2318, 서울고법 98나52003, 대법원 99다46898, 서울지법 98가단264437, 대법원 98다40077, 서울지법 98가단24008, 서울고법 99나5066, 대법원 99다62371

## 오보의 발생과 대책

서 정 우 부위원장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9월 26일 부산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서정우 부위원장(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의 주제 발표와 이의자 위원(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논문과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I. 문제의 제기

오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보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보 발생의 영역 또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언론을 현재 가장 괴롭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오보의 발생배경은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언론은 오보의 발생배경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오보 발생 자체를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오보는 계속 확장되고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대사회는 언론으로 하여금 조그마한 실수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구조적 변혁을 현재 경험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거의 극복하는

국제화사회의 등장,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지배적인 가치로 부각되는 지식·정보화사회의 등장, 첨단과학기술사회의 등장, 그리고 매체의 가공할만한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매체환경의 확장 등은 언론으로 하여금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오보를 용납할 수 없게 만든 사회변화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 II. 보도의 중요성과 현대사회의 변화

보도와 언론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의 위상은 바로 언론의 위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론의 위상은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이데올로기와 이론적 전개과정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지만 언론의 본질에 관해서는 이념이나 이론의 차이를 초월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언론의 본질이란 인간의 의사소통욕구(communication need)와 직접적

으로 연관된다. 그러니까 언론이란 인간의 의사소통욕구가 역사 속에서 영글어진 사회적 구현체라는 뜻이다.

보도는 인간과 사회를 위한 의사소통의 채널이며, 신경계통이며, 민주화의 길이다. 우리는 보도를 인간의 의사소통현상과 사회적 신경계통과 국가적 민주화차원으로 이해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보도를 형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본질로서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도는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확장하고 신경계통을 활성화하고 민주화를 촉진하도록 기능해야 한다. 인간과 사회는 보도를 통해서 말하고 듣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과 사회는 보도를 통해서 표현욕구와 정보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궁극적 목적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있다. 보도의 궁극적 목적 또한 의사소통을 확장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 III. 오보발생의 배경

보도에는 바른 보도와 바르지 못한 보도가 존재한다. 바른 보도를 정보(正報)라 한다면 바르지 못한 보도는 오보(誤報)가 된다. 오보를 그릇된 보도(incorrect report)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오보는 다시 부정확한 보도, 불공정한 보도, 그리고 주관적 보도로 유형화될 수 있다. 부정확한 보도는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의미하고, 불공정한 보도는 보도의 균형감각이 상실된 치우친 보도를 의미하고, 주관적 보도는 보도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보도를 의미한다.

부정확한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함안 바둑이 보도사례, 평화의 댐 보도사례, 백선장 보도사례, 김일성 사망 보도사례 등이 있고, 불공정한 보도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삼청교육대

보도사례, 권인숙 양 성고문 보도사례, 광주항쟁 보도사례 등이 있고, 주관적 보도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전두환 우상화 보도사례와 군 우상화 보도사례 등이 있다.

오보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기자차원의 배경, 조직차원의 배경, 사회차원의 배경 그리고 국가차원의 배경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들은 오보를 발생시키는 데 단독적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적으로 얽혀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배경은 직접적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다른 배경은 간접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어떤 배경은 1차적으로 기능하는 데 반하여 다른 배경은 1차 배경이 기능한 후 2차 혹은 3차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어떤 배경은 미시적인 배경인 데 반하여 다른 배경은 거시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오보를 유발하는 기자차원의 배경은 크게 보도기술적 배경, 보도지식적 배경, 보도윤리적 배경, 그리고 보도관행적 배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보도기술적 배경이란 취재·보도에 필요한 기술적 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고, 보도지식적 배경이란 취재대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겸비와 활용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고, 보도윤리적 배경이란 기사를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도덕적·윤리적 자세 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보도관행적 배경이란 오보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재·보도관행 차원의 배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배경은 결국 기사를 취재·보도하는 데 필요한 기자의 전문성차원의 배경으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오보를 유발하는 배경이란 기술적 전문성, 지식적 전문성, 윤리적 전문성, 그리고 관행적 전문성 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기자가 기사를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면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문성이 없든지 혹은 부족하면 바르지 못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른 보도는 보도기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취재·보도기자는 우선 바른 보도를 위해서 취재와 기사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데스크는 바르지 못한 보도내용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하고, 편집기자는 교정에서부터 제목작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사편집에서부터 지면구성에 이르기까지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바른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기자는 수많은 유혹과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을 철저하게 규율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혹과 영향력은 조직 내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조직 외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언론학에서는 기자가 기사를 생산하는 데 작용하는 영향력을 통제로 개념화한다. 따라서 조직 내적인 유혹과 영향력은 내적 통제가 되고, 조직 외적인 유혹과 영향력은 외적 통제가 된다.

보도기자는 하나의 기사를 생산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통제를 감당해야 한다. 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통제로서는 정치적 통제, 경제적 통제, 문화적 통제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통제상황들이 기자로 하여금 오보를 생산케 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 된다.

기자는 보도함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실보도의 책임과 국가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공공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언론의 공공책임은 일반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보다는 엄격하고 가혹하기 때문에 기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진실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진실을 과장, 축소, 왜곡, 편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 IV. 개선방향과 대책

오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자 개인의 문제

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조직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관행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오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오보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인 기자 차원과 언론사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기자충원제도의 개선

바른 기사는 바른 기자가 만들고, 반대로 바르지 못한 기사는 바르지 못한 기자가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오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자의 자질과 전문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좋은 기사를 만들려면 좋은 기사를 먼저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자의 충원과정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란 뜻이다. 따라서 충원방법의 전문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기자를 뽑는 데 국어, 영어, 상식, 논술시험과 더불어 사명감과 동기, 적성과 능력도 함께 테스트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천제나 인턴제도의 효과적 운영도 바람직하고 자격을 대학원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언론이 전문직을 지향한다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에게만 상대적인 고려가 주어지는 게 마땅하다 하겠다.

##### 2) 교육과 훈련의 체계화

정규적인 학교교육과 직장교육이 기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학과 언론사가 바른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산학협동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뜻이다.

학교에서는 예비기자들에게 바른 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사상, 철학, 법과 윤리, 그리고 비교언론분야의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그

리고 무엇보다도 보도의 자유와 책임,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국가의식과 역사의식에 관한 교육도 강화됨이 바람직하다.

바른 기자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학교교육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 학교기관에서 하고 있는 재교육, 외국연수 등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 3) 윤리화의 제도적 정착

우리 사회에는 각종 윤리강령과 윤리기구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강령과 기구들이 전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언론은 언론의 특성상 법에 의해서 규제되기보다는 윤리강령에 의해서 자율규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언론사와 언론계는 윤리강령을 제정한 이상 그것이 준수되도록 독립성과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사와 언론계는 윤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기구가 제도로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리기구가 붕괴되면 그 다음에는 법이 자연스럽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4) 심의기능의 제도화

언론사와 언론계는 다양한 심의기구들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심의기구들이 명실상부하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언론사와 언론계는 더 늦기 전에 기존 심의기구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하겠다.

언론사와 언론계는 우선 심의기능과 기구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바꾸어서 심의기구의 위상을 격상하고, 심의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심의활동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해야 하며,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심의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다.

미국의 Detroit Free Press는 모든 기사에 대하여 독자로 하여금 정확도를 평가하는 설문지를 보내서 응답을 접수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

하면 해당기자는 담당국장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New Yorker는 회사 내에 8명의 기사심사원(fact checker)을 두고 그들이 기사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의 정도를 심사·평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 5) 기사실명제의 확대 실시

현재 많은 언론사들은 기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사는 기사실명제를 모든 기사로 확대 실시할 뿐만 아니라 오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해야 하겠다.

### 6) 자체 정정노력의 강화

선진국의 언론은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정정하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Washington Journalism Review(1984. 6월호, p.27)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신문들은 한 주에 3~5회의 정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보도의 빈도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정보도를 가장 빈번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대표적 신문은 New York Times와 Louisville Courier Journal이다.

### 7) 비평기능의 활성화

우리 사회에는 비평다운 비평문화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기관으로서의 언론은 비평으로부터 가장 해방된 초월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신문은 방송을 비평하고, 방송은 또한 신문을 비평하는 매체횡단적 비평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에 의한 비평, 독자들에게 의한 비평, 사회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학부모단체들에 의한 비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기구들은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비평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언론사내 비평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평은 매체횡단적 비평이라 말할 수 있다. 신문이 신문을 비평하고, 방송이 방송을 비평하고, 잡지가 잡지를 비평하는 동종매체간 비평뿐만 아니라 신문이 방송을 비평하고 방송이 또한 신문을 비평하는 이종매체간 비평문화의 정착은 오보를 줄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언론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

#### 8) 조사·연구기능의 확대

언론은 고도의 경쟁산업이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론에 기초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이 경우, 이론에 토대한 기술과 지식의 활용은 조사·연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이 만나야 한다. 저널리즘과 사회과학방법론이 만나는 정밀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생각하는 기자, 공부하는 기자, 진지하고 성실한 기자,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자들이 오보를 줄이고 바른 기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 9) 대기자제도의 확대운영

New York Times의 James Reston 기자 같이 사장이나 이사직을 마다하고 평생기자나 만년기자가 되고 또한 그러한 기자로서 남기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우리 사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별 언론사와 언론계는 대기자제도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자들도 기자로서 살다가 죽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이러한 대기자가 많을 때 오보는 사라지게 되고 언론은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리라 믿는다.

#### 10) 기자안식년제의 도입과 운영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즘과 비슷

한 활동이다. 아카데미즘에 안식년제가 있다면 저널리즘에도 안식년이 있어야 한다. IMF사태 이후 기자의 노동강도가 위험한 수위에 있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기사를 작성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보겠다.

언론은 정보지식산업이고 정신문화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정보와 지식을 먹고 사는 전문인이란 뜻이다. 그들에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시간적 여유는 바른 기사를 작성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 된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년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V. 맺음말

오보의 질은 악화되고 있고, 오보의 양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보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사회의 신경계통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암적 존재가 된다. 오보는 또한 언론의 주요기능인 정보제공의 기능, 환경감시의 기능, 사회교육의 기능, 문화전승의 기능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이며 반언론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이러한 오보발생의 배경은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오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역시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오보발생의 중심 주체는 아무래도 기자 자신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직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등은 기자문제가 강구된 다음에 검토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르고 책임감 있는 기자를 배출하고 양성하는 노력을 우선해서 검토해야 한다. □

# 토 론

사 회 이 의 자 위원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자 : 장시간 동안 주제논문을 발표한 서정우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깊고 해박한 이론적 배경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명쾌하게 제시했다고 봅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발표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모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오늘 “오보의 발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 중 오보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한 부분에 새롭게 수용할 만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보는 우리 나라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간이 흘러도 유사한 형태로써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오보 사례 및 피해구제과정에 관한 가장 많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나라 언론상황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오보 사례

를 정리하여 제시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승오 (부산국제우체국장) :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일요일에도 신문이 발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면도 평일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일요일자 신문이 거의 발행되고 있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일요일자 신문이 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경우 일요일이라고 해서 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일 (부산방송 부국장) : 언론인으로서 현장에서 세세하게 느낄 수 없는 부분이나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한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역 언론인은 지방의 뉴스를 본사에

송신할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사와의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는 뉴스 중에서도 사건·사고 기사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지역의 중요한 행사

등은 오히려 서울에서의 다른 큰 행사들에 묻혀 외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 언론사에서 지역의 중요한 행사라든지 지역 미담 등 좋은 뉴스거리를 많이 보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발표자 : 지적하신 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지난 19년간 중재신청사건 등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보의 발생배경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최근 사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일요일자 신문이 발행되어야 한다는 문국장님의 말씀처럼 신문은 기본적으로 매일 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별도로 일요일판 신문 제작팀을 조직하여 반드시 신문을 발행하고 있지만, 제작 인력 부족 등이나 광고수주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일요일에 신문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팀을 개편한다든지 지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일요일자 신문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사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중앙에서 지역의 행사라든지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일경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산·경남 지역에서 약 70여 건의 중재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중재신청된 사건을 살펴보면, 언론사에서 장기간의 준비를 거친 기획기사라든지 공공기관 등의 정식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기사에 대한 중재신청은 드뭅니다. 대부분 제보자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급조한 기사내용이 중재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기사 말미에 제보자의 주장 외에 상대방의 반론을 실어준다면 중재신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 :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오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

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면서 시간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속보를 요하는 짧은 사건·사고 기사의 경우는 더욱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기관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경우에도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자세가 필요

백성기 (미디어포럼) : 발표자께서 오보발생의 유형이라든지 개념 등을 잘 정리해주셔서 언론 현상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흔히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이것도 언론이 오보를 낳게 되는 외적 통제의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한국적인 언론상황으로 볼 때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언론 스스로 권력과 유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발표자 : 중재업무를 맡고 있는 중재위원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서 보도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보도할 경우에도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 주장에 대해 충분히 확인을 한 후에 기사를 작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통신문은 오보가 발생할 경우 통신을 송신 받아 보도한 전국의 지방지가 오보를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통신사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통신문의 경우 상당한 주의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의 침해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항정 신성 의약품 관련 보도의 경우 복용량 및 복용 방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 및 데스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스스로 권력과 유착하는 경우

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제 중 새로운 유형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정보수집과 기업적인 이윤을 위해서 스스로 권력과 유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사 스스로 끊임없이 비평하고,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옥주 (전국유권자연합 공동대표) : 기자의 취재 보도 자세에 대한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적인 차원에서 현재 중재업무를 맡고 있는 중재위원과는 별도로 명예 중재위원 제도라든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의 모임 등을 적극 유도하여 시간이나 인력을 요하는 문제에 적극 활용한다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명예중재위원제나 자원봉사자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여정환 (부산서구의회 의장) :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방의회가 뿌리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의회를 방문해보면 언론에서 중점 취재를 하는 등 지방자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의회가 언론의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의 선진의회를 방문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언론에서는 관광성 외유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지방의회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기도 하는데, 언

론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발표자 : 명예 중재위원 제도 발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재위원회에서 맡아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꾸준히 키워나가기 위해서 언론의 사명은 절대적입니다. 언론이 지방자치단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 지금까지 진지하게 발표해주시고 토론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기간행물을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침해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매월 1회 시정권고소위원회를 열어 미성년피의자 및 성폭행피해자, 보복을 당할 염려가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해 누군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보도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사용량, 사용방법, 구입방법 등을 적시하는 경우 등 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심의기준을 벗어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법률이 권고적인 의미에서 시정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적인 강제력은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언론사에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사에서 기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준다면 이같은 사례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 입니다.

사회자 :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변함에 따라 중재신청사건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지방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

## 인성이 더 요구되는 언론의 길

최 광 일

서울중재부 중재위원 · 전 대한매일 이사

언론인의 자질을 새삼스럽게 논하자는 게 아니다.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 가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분야별로 잘 발달된 전문 언론인의 집단이다. 최근에는 전문성이 보다 세분화 되어가는 형상이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현장에 비쳐진 언론상은 때로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갓솜조각처럼 엉성하게 보일 때가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제 언론사는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기사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송사에 얽매이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좀 더 연구하고 다듬어지며 보다 더 전문화되고 세련된 집단으로서의 언론인상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대변화의 속도와 폭이 커 갈수록 표피적인 내용에 집착하기보다 냉정한 이성으로 사실을 직시하는 기자가 요구된다. 앎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되 이를 생활 속에 하나하나 착실히 옮겨가는 인간적인 여유를 갖춘 언론인의 모습이라면 더욱 좋겠다.

지식의 축적이 내면 세계의 풍성함과는 일치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지식인으로 추앙 받는 저명인사의 연설보다 비록 배움은 작지만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용한 얘기가 훨씬 감동적인 경우를 특히 체험한다.

우리는 나서 살아가면서 원하든 아니든간에 배움에 접하면서 성장의 시기를 거친다. 기본적인 삶의 적응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지식습득을 강요 받는다. 사회조직원으로서 최소 단위의 개체가 꼭 지켜야 할 규범과 상식을 위한 교육과정이 뒤따른다. 그 교육은 성장과 함께 차원을 넘겨가면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슬기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 하나 전개시켜준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평균적 자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상식의 수준을 넘어 더 귀한 삶의 해답을 위한 방편으로 전문적 지식습득을 위해 끝없는 도전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각 분야의 지식이 최고 수준에 오르는 전문가와 그들을 한데 묶는 전문가 집단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미담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삶의 이치와 진리에 한 발짝 접근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인류역사 이래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학교나 공공기관의 도서관에 비치된 그 엄청난 책들과 논문, 문서, 간행물들은 지식을 쌓아가는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 낸 결정체들이다. 평생을 바쳐서 각 분야에 최고 권위의 금자탑을 세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인류문명

엄청난 금액의 송사에 얽매이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더 전문화 되고 세련된  
집단으로서의 언론인상을 마련해야

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없었음은 자명하다. 온갖 시련을 딛고 보편적 가치를 증명해 보인 이들의 희생은 오늘의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 냈다. 개인이 축적한 지식의 최고가치를 모두를 통해 평준화 시켜준 것이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정도를 인정 받고 있다. 그것은 사고를 위한 조직적인 훈련을 거쳤다는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삶의 질은 평균적 지식의 습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지식이나 앎의 정도가 사회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습득한 지식을 생활 속에 옮겨가는 훈련이 많이 부족하다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문적 위업을 이룩한 사람들 중에서, 또는 높은 지식인으로 추앙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나친 이기심으로 주위 사람을 아프게 만들거나 의외로 몰인간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는 때가 많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그냥 앎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격변하고 복잡 다기화 되어 간다 해도 사회의 기본 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공적 약속들이 쉽게 깨뜨려지는 현상들은 지식과 행동의 괴리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특히 교육환경의 두께를 증명하는 사회 지도층에게 도덕성이 강조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지식의 축적을 단지 삶의 도구로 삼아 개인의 편리만을 추구해가는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오히려 흔하다. 역사 속에서도 사회가 혼탁할 때 지식인의 허구와 위선이 판을 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고뇌와 고통의 과정을 통해 터득한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긴 귀한 이들의 행적이 우리의 힘이 되어 오래오래 남아 있는 것은 그들의 사고와 행함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으나 바르게 살다간 사람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끈재적은 우리에게 아직도 교훈과 가능성으로 접근해 온다.

가치는 결코 지식의 축적만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높은 지향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는 건강해지고 자정 능력을 되찾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전문가 집단에 속한 언론인이 지적 만족과 함께 만약 그런 삶의 궤적에 충실하다면 여유 있고 편안한 모습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에 피신청인 자격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

## 신문윤리강령(전문)

일본신문협회  
2000년 6월 21일 제정

21세기를 맞아 일본신문협회의 가맹사는 새롭게 신문의 사명을 인식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보편적 원리이다. 이 권리는,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근본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미디어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보장된다. 신문은 이에 가장 알맞는 담당자로 자임하고자 한다.

다량의 정보가 어지러이 나도는 사회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지, 적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신문의 책무는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와 책임있는 논평에 의하여 이러한 요망에 부응, 공공적, 문화적 사명을 다하는 일이다.

편집, 제작, 광고, 판매 등 모든 신문인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또한 독자와의 신뢰관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표현의 자유를 수호함과 동시에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품격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자유와 책임〉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신문은 보도·평론의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그런 만큼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무

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정확과 공정〉

신문은 역사의 기록자이며 기자의 임무는 진실의 추구이다. 보도는 정확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며 기자 개인의 입장이나 신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은 사회에 아첨하지 말고 소신을 관철하여야만 한다.

### 〈독립과 관용〉

신문은 공정한 언론을 위하여 독립을 확보한다.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척함과 함께 이용당하지 않도록 자계(自戒)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신문은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정확·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에는 적극적으로 지면을 제공한다.

### 〈인권의 존중〉

신문은 인간의 존엄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 보도를 잘못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정정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품격과 절도〉

공공적, 문화적 사명을 다하여야 할 신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동등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사, 광고 모두 표현에는 품격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판매에 있어서는 절도(節度)와 양식을 갖고 사람들과 접촉하여야만 한다. □

## 일본신문협회,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는 내용으로 54년만에 새로운 신문윤리강령 제정

일본신문협회는 1946년에 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21세기의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2000년 6월 21일 54년만에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때 늦은 감이 있다는 신문계의 자성속에 마련된 새 윤리강령은, 첫째 '인간의 존엄에 최고의 경의'라는 표현을 '핵심'으로 삼았으며, 둘째 인터넷시대에 적응하는 내용으로 독자와의 쌍방향성을 배려했고, 셋째 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적 원리로서의 '알 권리'를 처음으로 도입한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이 제정에 참여한 신문인들의 변이다.

다음은 신문윤리강령검토소위원회 中馬清福(아사히 신문사 대표이사 편집담당)위원장의 새 강령에 대한 설명이다.

본문의 모두에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사회를 지탱하는 보편적 원리'라고 명기했다. 그러나 알 권리를 제대로 기능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미디어의 존재가 필요하다.

오늘날은 정보홍수의 시대이다. 그 정보홍수 속에서 진위를 전달하는 것은 누구인가.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와 책임있는 논평으로 이러한 요망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공공적, 문화적 사명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신문이다. 이야말로 신시대의 신문의 책무

인 것이다. 그러나 그 공공성, 문화성 때문에 신문은, 신문인은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품격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문에 이어 새 강령은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자유와 책임'. 신문에서 생명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반면 '자유'의 행사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강령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든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문은 보도, 평론의 자유를 갖는다"고 언론의 자유를 유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 21조에는 표현의 자유에 아무런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그것을 따른 셈인데 그 만큼 신문의 책임은 무겁다.

새 강령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익'으로 하느냐 '복지'로 하느냐는 문제로 결단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을 지켜주는 헌법과는 달리 신문강령에는 '복지'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이 '공공의 이익'인지는 각 신문이 판단하여 논진을 펴면 된다고 생각했다.

둘째는 '정확과 공정'. 우선 '신문은 역사의 기록자', '기자의 임무는 진실의 추구'라고 간결하게 정의했다. '역사의 기록'은 정확·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며, '진실의 추구'는 권력의 두터운 벽을 허무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논의가 집중된 것은 지금까지의 강령에 있었던 "뉴스의 보도에는 기자개인의 의견을 삽입해서는 안 된다"와 "사람에 대한 비평은 그 사람의 면전에서 직접 말할 수 있는 한도

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표현의 존치 여부였다.

그러나 삭제하기로 했다. 21세기의 뉴스보도는 어쩌면 지금 이상으로 기자개인의 ‘의견’이 요청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들이었다. 또 하나 비평의 평가기준을 ‘당사자의 면전에서 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두는 것도 역시 이상하다는 의견들이었다.

셋째는 ‘독립과 관용’. 신문이 독립에 구애받는 것은 다른 누구때문도 아니며 오직 공정한 언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세력의 간섭을 배척하는 한편 이용될 수 있는 빈틈이나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문은 공개된 광장이며 이론이나 소수의견에도 개방되어있다. 다만 그것은 정확하고 공정한 책임있는 언론이어야 한다.

넷째는 ‘인권의 존중’.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오보와 정정, 반론권 등은 오늘날 신문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들이다. “신문은 인간의 존엄에 최고의 경의를 갖는다”는 문언을 새로 넣은 것도 그 일환이다.

지금까지의 강령에는 “비난받은 자에게는 변명의 기회를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는 비난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인지, 변명의 기회는 무조건 주어지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모처럼의 규정도 공문화 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새 강령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다섯째는 ‘품격과 절도’. 언제든지, 어디서

든지, 누구든지 동등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신문의 특성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 재판(再販)제도의 유지는 신문계의 비원(悲願)인데 이는 이기주의는 아니다. 같은 수준의 정보를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은 신문이 공공재(公共財)·문화재(文化財)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광고에 대하여는 품격을 따지게 되는 것이며 판매에는 절도와 양식이 요청되는 것이다.

(『新聞研究』, 2000년 8월호 :

『新聞協會報』, 2000년 7월 18일자) □

## 언론기관의 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한 취재·보도와 관련 비판의 목소리 고조

범죄의 피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대중매체에 대해 극히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 여론몰이식 비판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는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므로 냉철하게 수용하는 언론측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2000년 1월, 일본에서 처음 열린 ‘범죄피해자의 모임’ 심포지움에서 범죄피해자 유족의 한 사람은 강압적이고 무신경한 언론의 취재 태도에 강한 분노를 터뜨리면서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대중매체 관계자들은 유엔의 피해자인권

선언의 '피해자에게 동정과 존엄을 갖고 접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주기를 바란다. 경찰이나 검찰의 태도는 서서히 피해자에게 배려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대중매체만이, 그 95%는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10년이 하루같이 변할 줄 모르고 있다”.

1990년 1월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지하철 서린사건 피해자의 피해실태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도가 되면 사건은 퇴색되지 않는다.(46.6%) ▲사건에 관련된 보도를 가급적 보도록 하고 있다.(46.45%) ▲보도하는 쪽에 편리하도록 취재하고 있다.(43.3%) ▲사건을 흥미분위로 취급하고 있다.(41.7%) 라는 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건의 퇴색'을 방지해 준다는 기대감과 '보도하는 쪽의 편익만' '흥미분위'라는 비판이 양분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회답자 중 실제로 취재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20%뿐 이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비난받는 일이 비교적 적었던 사건들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살인사건, 특히 직접 취재의 대상이 되었던 유족이었다면 비판은 더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범죄피해자의 모임' 심포지움에서는 “사건 직후 아무것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마이크를 들이댔다”는 분노의 소리 외에 “얼굴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승낙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살인사건의 유족)” “소년범죄는 취급되는 일이 극히 적으며 정확하게 보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소년에 의한 상해치사사건의 유족)”는 비판과 요망의 목소리도 있었다.

영국의 피해자 지원조직인 'VICTIM SUPPORT'(VS)는 97년의 연차보고서 중 '범죄피해자와 미디어'에서 “피해자나 유족은 범죄보도에 긍정적이지만 거짓이나 각색이 되지않고 공정, 정확하게 보도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를 흥미롭게 하기 위해 범죄와는 관계가 없는 일들을 상세하게 쓴다” “추도식이나 장의(葬儀)의 취재” “우편을 받는 시점에서부터 취재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등의 사례까지 예시한 VS의 조사에 의하면 살인사건의 유족 80명 중에서 미디어의 대응이 긍정적이었다는 유족이 단 1명이 있으며 50명이 불만을 호소했다.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아카데미 (NATIONAL VICTIM ASSISTANCE ACADEMY)는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않고 슬픔에 잠길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취재, 보도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부적절한 시기의 인터뷰 ▲범죄자의 미화 ▲시체를 넣은 주머니나 피를 흘리는 장면등의 영상, 사진 ▲제3자에 의한 소문이나 빗대서 빈정대는 기사 ▲어린이 피해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한다 ▲공식적인 사망고지 보다 취재, 보도가 앞서간다 ▲틀린 곳이 많은 조잡한 보도.

宮澤浩一 중앙대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회가 92년부터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약 730명이 응답)에서 “언론의 취재, 보도에 의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내용을 보면,

▲살인사건 등의 유족 58.5% ▲성범죄를 제외한 신체범(상해, 살인미수 등)의 피해자 36.9%. ▲재산범(절도, 사기)피해자

16.2%.

유족들이 지적한 항목 중 많은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였으며, 인터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만을 호소했다. ▲신문기자는 괴로운 존재이다. 병원의 처치실에까지 밀고 들어온다. 피해자의 입장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장례식에 사진기자가 와서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는 것이 싫었다. ▲약100명의 보도진이 집주변을 둘러쌌다.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보도진이 길을 가로막기도 해서 이웃에 대해 사과했다.

(『新聞研究』, 2000년 7월호)

□

## 영국 PCC, 1999년도 연차보고서 발행

영국의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불만신청접수현황과 해결건수, 보도실천강령에 대한 편집자의 수용 결정사항, 평결내용 등을 담은 9번째 연례보고서인 1999년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1,413,000 파운드의 경비를 지출했으며 2,427건의 불만신청을 접수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불만신청 건수 가운데 약 48%가 전국지였으며, 지역신문 31%, 스코틀랜드지가 약 10%, 잡지가 4%, 북아일랜드지 관련 불만신청이 4%였다.

불만신청 내용의 대다수인 61%가 기사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수치는

역대 가장 낮은 것이었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은 단지 1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슬픔과 충격에 대한 침해(intrusion into grief and shock)와 관련한 불만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전체 불만신청내용 가운데 6%를 차지하였다.

불만신청의 1/3은 PCC의 권한 밖에서 처리되었으며 약 40%는 보도실천강령의 위반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유입된 불만신청 가운데 위원회는 단지 49건에 대하여 평결을 내렸다. 이중 26건의 불만신청이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23건은 기각되었다.

PCC 위원장 Wakeham경은 프라이버시와 사적 공간, 어린이에 대한 보도, 증언에 대한 지불 등 많은 주요 영역에서의 보도기준의 역행을 가로막기 위해 힘썼다고 강조하면서 "1999년은 편집자에게 지침이 되는 새로운 보도실천강령 기준에 기반한 평결의 출발이다"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0년 9월 15일자)

□

## 영국 언론계와 경찰,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의 한계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

영국의 지역신문 기자들 가운데 거의 2/3 이상이 지방경찰이 채택하고 있는 언론정책 때문에 지난 2년간 범죄보도가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ress Gazette가 110명의 지역신문 기자와 신문사 관리자 그리고 43명의 경찰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언론인의 65%가 살인사건에서부터 사소한 절도죄에 이르기까지 범죄사건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 양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이에 관해 보도기능이 위축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공보관의 절반 가량이 범죄사건에 관한 세부적 정보의 제공이 감소된 이유를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legislation) 제정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40% 가량은 이 법은 언론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는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의 조사결과와 모순된다. ACPO조사는 대다수 경찰은 범죄사건과 관련한 세부정보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언론과의 관계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Press Gazette의 조사에 따르면 언론인의 35%는 경찰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상당수가 이미 악화된 관계가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이루어진 Press Gazette의 조사는 지역 언론인과 경찰간의 간극을 부각하고 서로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다루는 것이었다.

특히 대다수 언론인들은 도로교통사건의 희생자나 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정보조차도 ACP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거의 1/3정도가 강간, 살인사건 등을 포함한 중대범죄에 관한 정보 또한 분류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지역 경찰들은 자신들이 정보보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언론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언론인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법률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거의 2/3에 달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52%는 ACPO의 범죄사건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었다.

(Press Gazette, 2000년 7월 14일자) □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비판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해당

동경 소재 정신장애인수용소의 원생과 그 보호자 등 15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매일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한 소송 판결이 지난 6월 21일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의 기사내용이 장애인 보호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매일신문은 1998년 11월 25일 석간에 『장애인에 대한 체벌 횡행』이라는 제하로 수용소 이사와 생활지도원 등이 원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보도한 후 후속 기사를 5회에 걸쳐 보도했다.

원고들은 이 문제의 기사가, 보호자들이 수용소 지도원들과 결탁하여 원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지도원들의 체벌을 묵인 또는 장려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었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재판장은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읽을 때 기사내용은 보호자들이 체벌을 가하고 있다든지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호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사에는 원생들의 성명, 주소 등 보호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기사는 공적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문제이며 따라서 공공의 이해에 관계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사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볼 때 원고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집필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기사 게재가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新聞協會報, 2000년 7월 14일자) □

## 영국 언론계와 법조계, 새로운 보도준칙 제정으로 재판관련 보도를 둘러싼 대립 해소

언론과 법원간의 마찰소지를 항상 안고 있었던 잘못된 재판관련 보도의 제한문제가 판사들과 언론매체간의 전례 없는 협력에 따라 지난 과거의 유산이 될 전망이다.

영국의 순회형사재판소(crown court) 판사들과 편집인들은 보도제한에 관한 새로운 보도준칙을 제정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과 동일선상에서 Dame Heather Hallett 칙선법정

변호사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이 예심법정(magistrates' court)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보도준칙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대법원 판사, 수석 재판장들은, 제한받지 않은 정보와 의견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사법부나 언론매체 가운데 어느 하나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고도 재판장 공개의 원칙은 강화되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호간의 관심사가 가까운 미래에 같은 방향에서 정리되기 바라며, 형사순회재판의 보도 제한을 다룬 새로운 보도준칙의 제정은 이러한 과정의 정점에 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도준칙은 형사순회재판소 판사들에게 공중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매체의 중요성과 일반인에게 재판진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특별한 주의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법조계는 보도제한이 무원칙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편집인들은 판사들이 보도제한을 부담스럽게 고려한다면 이들의 논평을 어떻게 유도하여 판결에 대한 몰이해를 피하고, 판결에 대한 요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할 것이다.

발행인과 편집인이 자신들의 관심과 걱정을 대법원 판사와 함께 나누려 한 시점에서 의견이 도출되었고, 1999년 5월 Society of Editor단체의 세미나에서 대법원 판사의 건의가 계기가 되었다.

Satch 씨는 "공개 재판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보도준칙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재판과 관련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고 밝혔다. □

## 일본인 미국대학교수 살인사건 보도와 관련 손해배상 지급 판결 -일본 동경지방법판소 판결-

미국 샌디에고의 일본인 살인사건을 다룬 '주간신조(週刊新潮)'의 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어 피살자의 아내가 발행사를 상대로 1,50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한 소송판결이 7월 13일 동경지방법판소 민사제44부에서 있었다.

재판장은 문제기사가 원고인 피살자의 처가 살인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인상을 주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언론사에 360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한편 고별식 사진 게재에 대해 그 사진이 1면 크기에 가깝게 원고의 모습이 부각되고 고별식 시작 전에 피살자가 통신사 사진기자에게 사진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전해 준 사실, 사진의 게재가 보도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항소할 방침이다.

(新聞協會報, 2000년 7월 25일자) □

## NBA 경기 보도사진을 판매촉진용으로 사용한 뉴욕타임즈 소송에 휘말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가 인터

넷을 통해 농구경기 사진을 판매한 행위는 언론과의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농구협회(NBA)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신문사 편집실과 신문사 자문 변호사간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문사측의 몇몇 인사들은 신문사측에 농구경기를 촬영한 사진의 상업적 이용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NBA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The Seattle Times의 사진 편집자는 NBA의 주장에 동조의 뜻을 표했으며 이에 Denver Post지 사진부 데스크 인사도 이에 동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신문사 자문 변호사는 NBA의 이러한 제한조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다소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 NBA가 제기한 이번 소송 전략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것이며 설사 NBA가 승소하더라도 기록으로서의 사진은 앞으로 무용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NBA측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뉴욕주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뉴욕타임즈가 온라인상에서 신문 판매촉진용 상품으로 판매한 1999년 NBA 플레이오프 기간의 농구선수들 촬영한 다섯 장의 사진이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NBA는 뉴욕타임즈의 이러한 판매행위는 NBA의 신용과 신뢰를 함께 판매한 것으로 명백한 언론사간 협정 위반이며, 농구 경기를 보도하기 위한 뉴스 사진 이용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또한 뉴욕타임즈가 NBA 경기사진 판매를 위해 NBA로부터 어떠한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ditor & Publisher, 2000년 7월 17일자) □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공표치 마시기 바라며,  
만약 인용할 때는  
가주스·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가 신청인의 부동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등 특혜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경기중재2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모 연 환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0. 6. 20.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경기일보 : 『시의원집 고가매입 '특혜 의혹'』  
(2000년 5월 20일자 14면)

내 용 : 수원시가 시의원 주택을 매입해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겠다고 감정평가액보다 비싼 고가매입을 추진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주택부지가 어린이 놀이터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70여 평에 불과한 데다 수원세무서 등이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상태이고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액수의 근저당이 설

정돼 있으며 세입자도 10가구나 살아 채무관계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시의회 M의원 소유의 팔달구 인계동 552의3 70여 평의 다가구주택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키로 하고 부지매입비 2억7천만원과 놀이터 조성사업비 4천만원 등 3억1천만원을 올 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이어 지난 2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뒤 지난 2일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이 주택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건에 총 2억1천만원이 압류된 상태인데다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경매가 신청돼있고 10가구가 세입자로 살고 있어 공공시설부지로는 부적합한 상태이다.

특히 시는 2차례의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1억1천700만원과 건물 9천200만원 등 총 2억90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도 토지매입비로 2억7천만원을 과다편성, 특혜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이 주택부지는 70여 평에 불과해 놀이터로서는 턱없이 협소하고, 인근 주택가와 붙어있어 민원발생 등이 우려되는데도 지역주민이나 통·반장 등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

지 않은채 매입을 추진, 시민의 혈세를 시의원에 나눠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놀이터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어린이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경기일보 5월 20일자 14면 『시의원집 고가매입 '특혜의혹'』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97년·98년·99년 시정설명회 당시 동네 숙원사업으로서 팽나무 심을 장소와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 이를 계속 건의한 사항으로 숙원사업 중 팽나무고개 옛 경로당자리에 소공원을 만들어 팽나무를 식재하였고, 또한 경로당도 예산확보로 인해 경로당도 수원중학교 후문 부지에 경로당을 지어 지역주민이 사용 중에 있으나 주택가의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 시급히 놀이터 시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근방의 주택가로서 30평~40평 정도의 적은 대지가 산재되어 있어 그 중 대지가 가장 넓은 본인의 대지가 어떠냐고 하여서 본인이 승낙을 하게 되었다.

신청인 소유인 대지 70평, 건평 80여 평으로서 감정가 2억9백만원이라는 소리고 신문을 보고 알았을 뿐이고 시에서는 예산을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할 때는 언제, 무슨 보상이든 감정가액대로 집행하지 어느 공무원이 자기돈으로 주겠는가? 인심을 쓸 사항이 아닌데도 시의원이라 하여 고가로 시에서 매입을 추진하여 특혜를 준 사실도 없고 의혹이 생길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0년 5월 20일 기사를 쓸 당시 수원세무서에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상태라고 하였으나

이미 2000년 4월 12일 체납이 정리되어 압류등기가 해제된 상태이고 감정평가액인 2억9백만원보다 많은 액수로 근저당 설정돼 있다고 하나 근저당 설정금액은 전체 1억8백만원으로서 원금 상환으로 인해 실제 설정액은 6천8백3십만원인데 최고액으로 표시되었고 세입자도 전체 16가구 중 거의다 방을 빼준 상태로서 4가구가 현재 살고 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에 따른 경매가 신청돼 있다고 하나 당시 세를 1천1백만원에 살던 세입자가 경매신청하였으나 원금회수로 2000년 3월 16일 강제경매신청 등기말소 되었다. 또한 토지 매입비로 2억7천만원을 과다편성 특혜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예산은 항상 전년도말에 편성되고 의회 의결을 거치게 하고 편성된 예산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감정평가를 두 곳에 평가 의뢰해 그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하게 되어 있다.

이 주택 부지는 70여 평에 불과해 놀이터로서는 턱없이 협소하고 인근 주택가와 붙어 있어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데다 지역주민이나 통반장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매입을 추진하였다고 하나 당초 계획시 담당공무원 등이 검토했을 시 미니놀이터로서 충분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신청인은 알고 있었다.

또한 시에서 보상금이 수령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인 사람으로서 수령한 것처럼 보도되어 신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중재신청하는 바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5월 20일자 14면 『시의원집 고가매입' 특혜의혹』제하의 기사에서 수원시가 M시의원 소유의 주택을 매입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감정평가액보다 비싼 고가매

입을 추진,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주택 부지는 수원세무서 등이 압류한 상태이고 9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건에 총 2억1천만원이 압류된 상태인데다가 근저당 설정에 따른 경매가 신청되어 있고 10가구가 세입자로 살고 있다. 또한 시는 2차례의 감정평가를 통해 2억9백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도 토지 매입비로 2억7천만원을 과다편성,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시가 M시의원 소유의 주택매입을 추진 당시 6가구의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IMF 여파로 전세금 반환이 원활치 못해 경매신청과 세무서의 압류가 있었으나 경매신청은 올 3월 16일, 세금압류는 4월 12일자로 해제된 상태이며, 근저당설정 최고금액은 1억8백만원이고 실제 부채는 8천여 만원으로 알려져 감정평가액인 2억9백만원보다 비싼 금액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 특혜의혹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20일자 14면 『시의 원집 고가매입 ‘특혜의혹’』제하의 기사 중 수원시가 매입을 추진해온 M시의원 주택부지는 수원세무서 등이 압류한 상태이고 9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건에 총 2억1천만원이 압류된 상태인데다가 근저당 설정에 따른 경매가 신청되어 있고 10가구가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확인결과 당시 6가구의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IMF 여파로 전세금 반환이 원활치 못해 경매신청과 세무서의 압류가 있었으나, 경매신청은 올 3월 16일, 세금압류는 4월 12일자로 해제된 상태이며, 근저당설정 최고금

액은 1억8백만원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일보 2000년 6월29일자 14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소재목(수원세무서 압류상태...)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00년 6월 29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신청인 단체가 대구시 보조금 가운데 교회사업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01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대구향교 (전교 서 영 택)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0. 6. 24.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한겨레 : 『대구향교 시보조금 또 유용』제하의 기사(2000년 6월 13일자 16면)

내 용 : 대구시로부터 해마다 수천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절교육 등을 해온 대구향교가 9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일부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대구시 중구에 따르면 최근 대구향교(전교 서영택)의 99년도 교화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산검사를 벌인 결과 시 보조금 6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이 애초 사업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검사결과 향교쪽은 생활예절 교재를 만들면서 인쇄비 1250만원 가운데 576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충효교실 교재의 인쇄비를 부풀렸다. 또 애초 계획한 사업이 아닌데도 여성유도회 교화사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원했고, 여성유도회쪽은 이를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써버렸다.

향교쪽은 최근 이런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는 가운데서도 올해 또다시 보조금을 요구해 도덕적 비난을 사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을 지원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향교쪽에서 교화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한 금액만큼 돌려줄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대구향교는 2000. 6. 13. (화) 한겨레신문의 대구향교에 대한 왜곡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199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일부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98, '99년 시 보조금을 유용해서 시로부터 시정 조치 또는 어떠한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서류상 어디에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시 보조금이 애초 사업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생활예절 교재비가 이중 지급되었다고 하였는데 '98, '99 어디에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교재비도 이중 지불한 적이 없다. '여성유도회 냉장고구입' 운운은 학생 교육에 교재가 필요하듯 여성유

도회 교화 사업의 핵심인 전통 요리 강습, 꽃꽂이 강습, 전통 다도교육 등등은 그 성질상 냉장고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므로 이를 교화와 동일한 목적이라 해명한 바 있음에도 단순히 '냉장고' 운운한 것은 악의에 찬 왜곡 보도가 틀림없다. 또 '인쇄비를 부풀린.....' 하는 문제도 모든 증빙 자료가 분명하므로 사실이 아닌 왜곡성 보도이다.

그리고, '올해에도 또 다시 보조금을 요구해서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는 내용과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금액 만큼 돌려줄 것을 통보했다'라는 기사도 도덕과 예의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유림에게 치명적인 모독이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왜곡, 날조 보도가 틀림없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 목 : 대구향교 관련 정정보도  
· 본 문 : 본지는 지난 6월 13일자 16면 『대구향교 시보조금 또 유용』제하의 기사에서 “대구향교가 98년에 시보조금을 유용한 데 이어 99년에도 사업에 관련된 인쇄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부풀렸으며, 계획된 사업이 아닌 곳에 돈을 사용했고, 이런 가운데 올해 또 다시 보조금을 요구해 도덕적 비난을 사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대구시 중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유용한 일부 보조금을 돌려 줄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98년에는 보조금 사용과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99년 생활예절 교재 인쇄비는 적정하게 집행됐고 ▲사업 계획에는 없었으나 여성유도회의 '냉장고 구입'은 여성유도회의 핵심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대구시 중구청에서 보조금 일부 반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대구향교, 보조금 유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3일자 지역면에 『대구향교 시보조금 또 유용』제하의 기사에서 “대구향교가 98년에 이어 99년에도 교화사업에 관련된 인쇄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부풀렸으며, 대구시 중구청이 일부 유용한 보조금을 돌려 줄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향교측은 98년에는 보조금 사용과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99년 생활예절 교재 인쇄비는 적정하게 집행됐고, 대구시 중구청에서 보조금 일부 반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2000년 7월 8일자 16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대구향교 시보조금 또 유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대구향교 보조금 유용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2000년 7월 8일자 2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신청인 단체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업무 중인 구청장실을 점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경기중재30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이원준)

피신청인 : 경인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0. 6. 24.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경인매일 : 『구청장실 점거, 집단이기주의 표출』제하의 기사(2000년 6월 13일자 10면)

내 용 :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느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구청장 집무실을 점거하고 구청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욕설과 샷대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12일 오전 10시경 인천시 연수구청장실에는 1백여 명의 부녀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연수구 옥련동 한국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로 인근 우성아파트(총 2백55가구) 신축공사로 인해 두 달 가까이 소음과 분진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서 공사 착수시 구청에 몰려와 시위를 벌인 뒤 이번에는 급기야 업무보고 중인 구청장실에 몰려와 구청장에게 욕설을 해가며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별안간 몰려들어 구청장실을 점거한 주민들, 그리고 이들을 만류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구청 방문객들은 “도대체 무슨 큰 일이 났길래 구청장실까지 몰려가 농성을 하느냐”며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피해주민들은 이 날 자신들이 뽑은 주민대

표의 말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 구청장을 향해 대책을 세우라며 언성을 높였다.(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한국아파트주민으로서 경인매일 6월13일 10면 구청장실 점거, 집단이기주의 표출?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신청한다.

한국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한 것은 소음, 분진뿐만이 아니라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의 위험성과 안전대책의 미흡 등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고, 또한 그날 회의 진행에 있었어도 10시에 시작하기로 한 회의의 진행을 구청측은 장소조차 제대로 정해놓지 않고 장소 변경을 거듭하는가 하면 구청장은 현재 부재 중이라고 하면서 30분이나 늦게 버젓이 집무실에서 나왔다. 회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질의는 잘라버리기 일쑤였다. 그날 구청장의 답변은 안일무사함의 표본이었으며 주민들의 타는 속은 아랑곳없다는 방관자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구청장과 속출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변하나 없는 뻔뻔한 건축주 사이에서 주민들은 과연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신청인들은 이 보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익만 아는 몰상식한 사람들이라고 매도당하고 있으며 또한 이 기사로 인해 발파 작업의 위험성은 슬며시 묻혀버리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경인매일이 지난 6월 13일 10면 『구청장실 점거, 집단이기주의 표출』제하의 기사내용 중 한국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우성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

로 구청장실에 몰려가 시위를 벌이며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한국아파트 주민들은 우성아파트 신축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뿐 아니라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이 인근주민 및 초등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허가자와 비밀리에 진행하여 이로 인한 위험성과 안전대책의 미흡 등을 이유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청장이 주민들과의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연시키고 주민대표의 질문에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구청장실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 점거한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 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이 원 춘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경인매일이 지난 6월 13일 10면 『구청장실 점거, 집단이기주의 표출』제하의 기사내용 중 한국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우성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로 구청장실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아파트 주민들이 우성아파트 신축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뿐 아니라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으로 인한 위험성과 안전대책의 미흡 등을 이유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구청장이 주민들과의 약속시간을 지연시키고, 회의과정에서도 주민대표의 질문에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구청장실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반론보도 신청인 : 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이 원 춘

· 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인매일신문 2000년 7월 7일자 10면에 상자가사로 게재,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와 같은 면(미성년...)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인매일 : 『반론보도』제하의 기사(2000년 7월 7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소비자단체의 뇌물수수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련없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0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정광모 외 2인

피신청인 : 시사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0. 6. 26.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시사뉴스 : 『충격! 암웨이 불매운동, 소비자단체 간부도 뇌물받고 '입씩(?)'제하의 사진(2000년 5월 31일자 28~29면)

내 용 : <사진설명 : 97년 4월, 암웨이 세계의 유해성을 폭로하며 불매운동에 들어갔던 시민단체의 토론회 모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충격! 암웨이 불매운동, 소비자단체 간부도 뇌물받고 '입씩(?)』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한국 부인회 선정 소비자 만족상을 받은 기업으로 암웨이를 추천하는 대신 뇌물을 받은 소비자단체 간부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97년 4월, 암웨이 세계의 유해성을 폭로하며 불매운동에 들어갔던 시민단체의 토론회 모습'이라는 사진 설명과 함께 한국소비자연맹의 정광모 회장, 실험 담당자(한국소비자연맹 이항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송영순)들이 실험하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했다. 암웨이 세계는 희석액을 사용하고 국산 세제는 원액을 사용해서 세제 얼룩이 남는다는 속임방법을 실제 실험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 있는 사진이며 더욱 뇌물 받은 소비자단체 간부가 아니므로 사실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그동안 한국의 소비자운동을 이끌어 온 소비자단체 간부로 정직하게 소비자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한 명예가 훼손되었기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5월 31일자 28~29면에 『충격! 암웨이 불매운동, 소비자단체 간부도 뇌물받고 '입씩(?)』제하의 기사에서 '97년 4월, 암웨이 세계의 유해성을 폭로하며 불매운동에 들어갔던 시민단체의 토론회모습'의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의 인물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은 한국의 소비자운동의 선구자로 한국의 소비자운동의 뿌리가 내리도록 노력했

으며 잘못된 사진을 게재해서 오히려 정광모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크게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실험 관계자들도 전혀 뇌물이나 부정사건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히면서 두 간부에게 사과드립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31일자 P28~P29면 『충격! 암웨이 불매운동, 소비자단체 간부도 뇌물받고 '입씩(?)』제하의 기사에서 '97년 4월, 암웨이 세계의 유해성을 폭로하며 불매운동에 들어갔던 시민단체의 토론회 모습'의 사진(아래)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속의 인물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은 한국의 소비자운동의 선구자로 한국의 소비자운동의 뿌리가 내리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진을 게재해서 정광모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실험 관계자들도 전혀 뇌물이나 부정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밝히면서 두 간부에게도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뉴스 2000년 7월 30일자 35면~40면사이에 이 건 중재대상시사의 사진과 함께 가로 18.5cm 세로 14cm 크기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바로잡습니다)활자 크기는 이 건 중재대상기사 제목(소비자단체 간부도 뇌물받고...)의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의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하며, 사진은 3단편집체제의 2단 크기로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뉴스 :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2000년

7월 30일자 3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0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박 태 군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0. 6. 27.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한국경제 : 『신광기업 적대적 M&G 휘말려』  
 제하의 기사(2000년 6월 24일자 15면)

내 용 : 관리종목인 신광기업이 적대적 M&G에 휘말렸다. 신광기업 주식을 매집한 세력들은 경영권 탈취를 위협하며 그린메일(Green mail)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신광기업의 한 관계자는 “주식공동보유목적으로 45%가까이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태군, 박희장 씨 등 52명의 M&G 세력이 최근 주식을 고가에 되사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주총때 이들 세력이 경영권을 노리고 자신들을 대표하는 5명의 이사를 선임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매입한 단가 이상으로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광기업측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공식 지분은 현재 성덕수 사장(8.79%)과 특수관계인을 합해 모두 32% 정도다.

회사측은 주초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한 뒤에야 이들의 매집사실을 알게 됐으며 주도 세력인 박태균, 박희장 씨의 경우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5%)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식 매집장구는 서울증권 산본지점이며 서울증권 영업창구 직원인 강모 대리가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광기업은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에 박태균, 박희장 씨의 5%를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50명의 주식 공동보유목적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해 놓았다. 금감원의 조사결과는 7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로 오는 7월 14일 임시주총을 열어 다시 이사선임을 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조사결과 5%를 위반한 사실과 주식공동보유목적 사실이 판명되고, 설사 주식공동보유 목적은 밝혀지지 않더라도 경영권 방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권과 관련된 이사수에 있어 회사측 입장이 유리한데다 우호지분까지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피신청인의 2000. 6. 24.자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먼저, 신청인 등은 신광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고가에 사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신청인은 IMF 사태 발생 이전인 1997.초경에 위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주당 매입가격도 20,000원 정도이었기 때문에 위 신광기업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엄청난 재

산적 손실을 입은 바 있다. 현재 신청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수는 136,100주로서 위 신광기업이 발행한 총주식수(2,595,979주)의 5.24%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금융감독원의 사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신청인 등을 비롯한 특수관계자가 최근 45%까지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 등은 위 정기주주총회 당시 신광기업에 대하여 이사 5명의 선임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 이사 선임은 애초 안건으로 발의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런데, 신광기업은 1997. 및 199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등 신광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하여 선의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과도한 매출채권과 화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계회사에 대하여 무리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 등은 법원의 적법한 허가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으나, 신광기업 및 피신청인들은 또다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많은 주주들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단 한번도 신청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허위의 보도를 하였기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 2000년 6월 24일 1면에 기재된 신광기업 관련 기사는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박태균 씨 등은 신광기업에 대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고가로 매수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둘째, 박태균 씨 등이 주식을 매수한 것은 IMF사태 발생 이전인 1997. 초경부터이고, 따라서新光기업이 1998. 7.경 화의인가를 신청한 이후 박태균 씨 등이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셋째, 박태균 씨 등이 주식공동보유목적으로 45%가까이 지분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이고, 다만 박태균 씨는 4.98%(12만 3200주)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200. 3.경新光기업의 정기주주총회 당시 회사측이 발의한 정관변경안에 반대한 지분의 합산율이 32.34%(80만주)에 불과합니다.

넷째,新光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박태균 씨 등이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정기총회에서 이사 선임은 의안으로 발의된 사실도 없으며, 이후 매입한 단가 이상으로 되사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어 이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따라서, 본 신문에서 박태균 씨 등을 그린메일(Greenmail)세력으로 추단하여 보도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고가매수 요구 사실없다”  
신광기업 주주 박태균 씨
- 본 문 : 본지 6월 24일자 15면에 실린『신광기업 적대적 M&G 휘말려』제목의 기사에 대해新光기업의 주주 박태균 씨는 “자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또한 “新光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이 회사가 화의인가 신청을 낸 98년 7월경이 아니라 IMF사태 발생이전인 97년초부터였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박씨는 △주식공동보유 목적으로 45% 가까이 지분을 확보했다는 내용과 △정기주총에서 이사선임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소액주주들에 대해 “공동보유자로서의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밝혀 박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0년 7월 6일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경제 증권면에 2단기사로 게재하되, 제목(“고가매수 요구 사실없다”)의 활자크기는 이 건 중재대상기사 제목(新光기업 적대적 M&G 휘말려)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소재목(新光기업 주주 박태균 씨)의 활자 크기는 동 기사 부제목(박태균 씨 등 52명...)활자 크기와 같게 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고가매수 요구 사실없다”』제하의 기사(2000년 7월 6일자 2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강원도내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자동차관리법의 환경관련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 강원중재 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강원도 자동차부분정비 사업조합

(이사장 이진학)

피신청인 : 시사주간 강원리뷰

종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0. 6. 29.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시사주간 강원리뷰 : (1)『자동차 경정비업체 탈  
법 행위 난무』제하의 기사  
(2000년 6월 19일자 1면)

내 용 : 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하  
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들 중 일부가 법규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관련규정  
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  
반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  
급하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에 제1호의 자동  
차 정비업 시설기준에 따르면 차량정비업의  
사업장 면적의 경우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300  
㎡ 이상, 자동차 부분정비업은 100㎡ 이상, 소  
형자동차 정비업은 400㎡ 이상, 자동차 종합  
정비업은 1,000㎡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비업소들은 그 업종별로 시설 및 장  
비와 검사용 기계 기구, 시험기 및 측정기, 공  
작기계 등의 제반시설을 갖추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중략)

그러나 카센터, 세차장 등 부분정비업으로  
등록 가능한 일부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마치  
면 관리법에 의해 영업을 가능해 편법으로 영  
업을 하는 사례가 많고 관계당국의 소홀한 단  
속의 틈을 이용, 공공연히 차량정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비업체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제반시설을 갖추어야만 허가가

나는 종합정비업 대신,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정비부분을 선호하고  
있다.

많은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  
는 경정비업체들의 문제점은 또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액 회수 재  
생처리의 경우 자체 시설설치를 하지 않고도  
환경관련 위탁업체에 위탁처리 하면 환경관련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탁처  
리를 하고 있는 경정비업체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처  
리, 상당부분이 하수로 흘러 수질오염을 악화  
시키는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카센터나 세차장 등 경정비업체들이  
법령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키지 않고 불법,  
탈법행위를 하고 있으나 각 시·군의 단속은  
미비한 실정이다.

(2)『승차장치 불법 구조변경 등 운전자 안전  
위협』제하의 기사(2000년 6월 19일자 15면)

경정비업체들의 편법·불법행위들에 대한  
위반사례를 보면 유형도 제각각으로 차량소유  
자가 차량의 정비를 요구할 경우 정비시설을  
갖춘 대형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도록 하지 않  
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LPG차량으로의 구조 변경은 장애인 등록  
차량 등 허가를 얻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  
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휘발유에 비해 연료비  
가 저렴한 이유를 들어 불법 구조변경을 하  
는 사례가 많고 불법 구조변경도 자동차 종합  
정비업에서 할 경우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고  
판단, 경정비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는 이같은 경정비업체들의 편  
법·불법영업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위  
반사례도 제보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

리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강원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이사장으로서 시사주간 강원리뷰 6월 19일자 1면 및 15면 『자동차 경정비업체 탈법행위 난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 신청한다.

사실은 부분정비업 및 경정비업체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자가 및 위탁처리 등 적법하게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위탁처리하는 경정비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단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왜곡보도 하였다.

탈·불법행위 난무에 대해서 본 조합은 2000년 1월 11일 강원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강원도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지난 2월부터 자동차불법정비행위 단속요원 5명을 운영하여 탈·불법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고발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단속원 운영으로 인하여 건전한 정비질서를 잡아가고 있으나, 마치 유독 경정비업체들은 탈·불법행위위 온상인 양 사실과 다른 면이 보도되었다.

위 보도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에 의하여 부분정비업소나 경정비업소는 인지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쌓아온 신뢰도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허탈한 심정이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6월 19일자 1면에 『자동차 경정비업체 탈법행위 난무』라는 제하 기사에서 자동차 부분정비업소 및 경정비업체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처리하는 업체는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여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보도하였으며, 자동차 부분정비업소와 경정비업소는 종합정비업보다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부분정비업 및 경정비를 선호하여 작업범위 초과와 탈·불법행위를 일삼는다고 왜곡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강원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800여 조합원업소와 일부 경정비업소의 사실확인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각 시·군에 배출자 신고를 필하고 자체차량 및 계약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 폐기물 처리 증명에 의해 적법하게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부분정비업 또한 종합정비업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록 장비와 시설을 갖춰 시·군에 등록을 필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지도단속원을 운영하여 등록자에 대해서는 초과정비를, 무등록자에 대하여는 불법정비를 고발 조치토록하여 건전한 정비질서를 잡아가고 있으므로, 강원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원 업소의 경정비업소는 자동차관리법과 준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부분정비업소 및 경정비 업체의 탈·불법행위 난무는 허위과장 보도인 바, 일부 무등록 업소에서 발생하는 사항임이 밝혀져 이에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보도내용 : 강원리뷰가 지난 6월 19일자 1면에 『자동차 경정비업체 탈법행위 난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자동차 부분정비업소 및 경정비 업체가 폐기물을 무단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되고 있으며,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탈법행위를 일삼는다고 보도한 데 대해 강원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강원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2000년 1월 11일 강원도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지난 2월부터 자동차 불법정비행위 단속요원 5명을 운영하여 탈·불법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고발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단속원 운영으로 인하여 건전한 정비질서를 잡아가고 있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의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각 시·군에 배출자 신고를 필하고 자체차량 및 계약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 폐기물처리 증명에 의해 적법하게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은 지도단속원을 운영하여 등록자에 대해서는 초과정비를, 무등록자에 대하여는 불법정비를 고발 조치토록 하여 건전한 정비질서를 잡아가고 있으며, 강원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원업소는 자동차관리법과 기타 관련법을 준수하여, 건전한 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강원남부신문사(시사주간 강원리뷰)에 60호 15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 부제목(탈법행위...)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본문과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주간 강원리뷰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00년 7월 2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술을 마신 채 롯데호텔 노조의 농성을 진압했으며, 노조원을 구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1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서울지방경찰청경찰특공대  
(대장 윤 종 기)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0. 7. 5.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MBC-TV : 「뉴스테스크」프로그램(2000년 7월 1일 21:00)

내 용 : ▷앵커 : 이틀 전 롯데호텔 노조의 농성을 진압했던 경찰특공대는 술을 마신 채 진압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농성장에 있던 임산부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 :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노조원들이 머물러 있던 36층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농성 중이던 노조원 40여 명은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맞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공대가 술을 마시고 진압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 술냄새가 제 코를 딱 스쳤습니

다. 분명이 냄새를 맡았구요. 그건 제가 느끼기로는 양주 냄새였습니다.

▷기자 : 경찰은 진압을 앞두고 묵고 있던 호텔 방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양주를 통째로 꺼내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텔측은 경찰의 진압이 끝난 뒤 냉장고 안에서 없어진 양주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한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수증에 따르면 경찰이 있던 6개 객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양주란 양주는 모두 꺼내 마신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모두 160만원 어치입니다.

▷인터뷰 : 경찰 병력들이 투입됐던 방에서 없어진 술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기자 : 경찰 특공대는 또 농성장에 있었던 임산부들에게도 진압봉으로 구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농성 노조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비상통로 등 출입문에 집기를 쌓아 놓고 극렬하게 저항한다는 첩보에 의해 통로 개척을 위해 장애물 제거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술을 먹고 진압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청인들의 임무는 통로개척 임무뿐 노조원 호송, 수색 등은 전혀 하지 않아 노조원 및 임산부들을 구타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전혀 없다. 또한 롯데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양주는 호텔 내 객실에 비치해 놓고 있었는데 당시 30층에는 4개의 객실에 투숙객이 있어 경찰이 음주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노조측에서 제시한 양주용 객실비치품목명세서는 어느 곳에서도 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경찰의 음주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100% 조작된 것이라고 밝힌 사실도 있다.

이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 방송이 지난 7월 1일자 기사에서 '술 먹고 진압했다'는 제하로 경찰특공대가 롯데호텔 노조의 농성 진압시 술을 마신 채 진압했다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한 바, 경찰특공대는 롯데호텔 36층, 37층에서 있던 노조원들이 호텔의 창문을 깨트리고 집기물을 부수어 장애물을 설치하였고 비상 통로를 막아 노조원들이 이미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상태에서 경찰특공대는 진압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 후 현장 기동부대에 인계하고 37층에서 1층까지 비상계단을 이용 도보로 철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노조원을 폭행하거나 음주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특공대는 장애물 제거에 전념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 등으로 보아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7월 1일 뉴스데스크는 롯데호텔 노조의 농성을 진압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술을 마신 채 진압을 벌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경찰특공대는 롯데호텔 36층과 37층에서 노조원들이 집기를 부수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현장 기동부대에 인계한 후 도보로 철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임산부 등을 폭행하거나 음주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 TV 2000. 7. 19, 18:30 뉴스 프

로그래프와 7. 20. 00:00시 이후의 마감뉴스 프로그래프 중에 아나운서의 육성으로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프로그램(2000년 7월 19일 18:30, 24: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무안군이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 군수가 설계변경을 지시했으며,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건축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0 광주중재 1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무안군(군수 이 재 현)

피신청인 : 전광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0. 7. 6.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전광일보 : 『설계변경과정 해명 있어야』제하의 기사(2000년 6월 21일자 11면)

내 용 : 무안군 불무택지지구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불법 매립 건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와 관련 현 군수가 설계변경을 지시하고 변경된 설계에 의해 공사를 시공·마무리하는 과

정에서 쓰레기가 무단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94년 당시 불무지구에 대해 무안군은 매립해 사용하고 있던 운동장을 중심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주위의 외곽부분은 우기의 배수문제를 고려해 수로를 구축키로 했다는 것.

그러나 95년 이재현 군수가 부임하면서 실무자를 교체하고 설계를 변경해 시공사와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기존 설계시보다 공사비가 3~4억 여원이 늘어났으며 공사마무리과정에서 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을 무단 매립해 문제가 야기됐음에도 실무관계자가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불무택지지구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과 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묵인 의혹에 대해 지역민들은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택지조성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 처리에 대해 관계당국은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호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10일 새벽 3시경 택지안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 최모 씨는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군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

한편 지역민들은 사법기관의 적법한 사법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사권에 대한 위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전광일보 6월 21일자 11면 『설계변경 과정 해명 있어야』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 한다.

신청인은 민선자치 출범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600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온 정열을 다 쏟아오면서 군정을 수행한 결과 군민들에게는 전국 최우수군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21세기를 도약하는 새 무안 건설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어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왔던 바, 이 보도로 군정의 책임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됨은 물론 군정에 대한 불신과 군민화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600여 전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전광일보가 지난 6월 21일자 11면에 『설계 변경 과정 해명 있어야』제하의 기사에서 ‘무안군 불무택지 지구 쓰레기 불법매립 군수가 변경 지시...시공·마무리 과정서 무단 매립’의 소재목과 “무안군 불무택지 지구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불법 매립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와 관련 현 군수가 설계변경을 지시하고 변경된 설계에 의해 공사를 시공·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무단 매립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95년 이재현 군수가 부임하면서 실무자를 교체하고 설계를 변경해 시공사와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설계시보다 공사비가 3~4억여 원이 늘어났으며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을 무단 매립해 문제가 야기 됐음에도 실무 관계자가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불무택지 지구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과 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묵인 의혹에 대해 지역민들은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택지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 처리에 대해 관계당국은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호 의혹까지 알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재현 무안군수는 이와 관련 불무택지 지구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와 관련 설계변경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설계에 의해 공사를 시공·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하지 않았고, 부임하면서 실무자를 교체하고 설계를 변경해 시공사와 계약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로 인해 기존 설계시보다 공사비가 3~4억여 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며, 공사마무리 과정에서 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무관계자가 묵인한 사실도 없다.

발견된 폐기물은 2000년 제1회 추경에 3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처리할 계획인 바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아니며, 원인 제공자가 대다수 무안읍민이어서 비호한 사실이 없고, 공사현장에서는 광명주택이 목재류를 일부 소각하였을 뿐 발견된 쓰레기를 태운 사실이 없다.

사실은, 무안군 불무택지 지구 개발은 80년대 당시 시설을 갖춘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지역민들이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매립이 되고 있던 상태에서 88년도 공설운동장(스탠드 없는 시설)을 시설 사용하고 있던 중에 지역개발 차원에서 용도를 변경 95년도에 택지를 조성 공급하여 무안읍민의 주택난 해소와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코자 무안읍 교촌리 127-8번지 일원에 15,869평 규모로 12억8천8백4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조성되었다.

민선자치 이전인 당시 정치환 군수 재임시

(재입기간 : 94. 7. 7.~95. 6. 30.) 94. 11. 30. 택지개발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어 공개입찰 후 94. 12. 31.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150-7번지 혜성건설(주)강성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택지의 계획적인 조성과 원활한 배수 처리를 위하여 인근 무안박씨 종중 토지인 유산정 주변 기존 배수로 개수(석축)공사 대신 홍수량을 검토 단지 상단에서 유수분할 암거 설치 및 불무제 좌·우안 호안블럭을 시설 쾌적한 택지공급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95. 4. 14일 1차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사업지구내 수로를 도로 하단부에 유도수로 암거 설치 및 수로부분을 택지로 편입시키고 전체 계획에 수립된 교촌리 122-4번지 외 6필지를 추가사업으로 시행코자 95. 6. 26. 2차 설계변경 [변경금액 - 1,288,040천원(도급액:898,150천원, 관급자재:389,890천원)]을 하여 당초 계약금보다 4억5천1백2십8만1천원이 증액되었다.

한편 현직 군수인 신청인이 설계변경하기 위해 담당자를 교체하였다함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또한 불무지구는 80년대 초 읍민들의 생활 쓰레기가 자연매립형식으로 매립되어 공설운동장 시설로 활용되어 오던 중 기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95년 택지 조성시 운동장 지구는 일부 낮은 구간에 성토를 시행하고 도로 및 하수도 시설만 하였으므로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쓰레기와 건축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사실이 없으며 실무 관계자의 묵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특히 원인제공자 대다수 읍민들이기 때문에 비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발견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2000년 제1회 추가경영예산에 3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 10일경 소각한 내용은 현재 택지를 분양받아 다세대 주택 건립을 추진 중인

광명주택이 목재류를 일부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택지 안에서 발견된 쓰레기는 2001. 12.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광명주택이 지난 6. 15. (유)천하환경, 6. 20. 금성환경(주), 6. 20. (주)동양환경과 각각 계약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실이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1일자 11면 『설계 변경 과정 해명 있어야』제하의 기사에서 불무 택지지구 조성 관련 95년 이재현 현 군수가 부임하면서 실무자를 교체하고 설계 변경해 시공자와 계약 3~4억원의 공사비가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불무 택지지구 설계 변경은 전임 군수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불무택지지구 쓰레기는 현재 택지를 분양 받아 다세대 주택건립을 추진 중인 광명주택이 2001년 12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며 군에서도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에 3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광일보 2000. 7. 14.자 10면에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광일보 :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2000년 7월 14일 10면)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1일자 11면 『설계 변경 과정 해명 있어야』제하의 기사에서 불무 택지지구 조성 관련 95년 이재현 현 군수가 부임하면서 실무자를 교체하고 설계 변경해 시공자와 계약 3-4억원의 공사비가 늘

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불무 택지지구 설계변경은 전임 군수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불무택지지구 쓰레기는 현재 택지를 분양받아 다세대 주택건설을 추진 중인 광명주택이 2001년 12월 까지 처리할 계획이며 군에서도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에 3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정정합니다. □

### 교통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을 가해자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강원중재7  
 청구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전 용 하  
 피신청인 : 강원일보  
 중재부 : 강원중재부  
 접수일 : 2000. 7. 7.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강원일보 : 『오토바이 받아 돌 사상』제하의 기사  
 (2000년 6월 30일자 19면)

내 용 : 29일 새벽 3시20분께 춘천시 석사동 H아파트앞 교차로에서 강원7가7901호 베스타 승합차(운전:전용하·57·농업)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운전:조현희·19·H대1년)를 들이받아 조군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같이타고 있던 김모(19·H대1년)군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강원일보 2000년 6월 30일자 19면 『오토바이 받아 돌 사상』제목의 미확인 기사가 신청인에게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중재를 신청한다.

위 보도에서 신청인이 “29일 새벽 3시20분께”,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6월 28일 11시20분경이고, 신호기 있는 4거리 교차로에서 강원7가7901호 베스타 직진 중에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 발생하였고, 현재 피의자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로 인하여, 형언할수 없는 많은 심리적 고통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강원일보사가 지난 6월 30일자 19면에 『오토바이 받아 돌 사상』제하의 기사에서 “29일 새벽 3시 20분께 춘천시 석사동 H아파트앞 교차로에서 강원7가7901호 베스타 승합차(운전:전용하·57·농업)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조군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같이타고 있던 김모 군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용하 씨는 이와 관련 교통사고시의 일시는 6월 29일 새벽 3시20분께가 아니고, 사실은 6월 28일 11시20분경이며, 신호기 있는 4거리 교차로에서 강원7가7901호 베스타 직진 중에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피의자와 피해자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 사고의 쟁점 사항인 차량의 신호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반론보도신청인 전용 하

### 합의사항

- 제목 : “오토바이와 충돌” 주장
- 내용 : 본보가 지난 6. 30.자 보도한 『오토바이 받아 들 사상』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용 하 씨는 교통사고의 일시가 6월 29일 새벽 3시 20분께가 아닌 6월 28일 밤 11시 20분께이며, 교차로에서 본인의 강원7가 7901호 베스트 승합차가 직진 중에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와 관련 경찰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강원일보 7월 13일자 19면에 게재되, 제목(“오토바이와 충돌”주장)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오토바이 받아…)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해당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강원일보 : 『“오토바이와 충돌”주장』제하의 기사(2000년 7월 13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신문칼럼을 통해 야당총재에게 지역감정에 기반한 청권획득을 공공연히 주문했다는**

##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2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윤 창 중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0. 7. 11.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문화 ‘윤창중 시론’ 칼럼인가 보고서인가』제하의 기사 (2000년 7월 6일자 9면)

내 용 : 16대 대선을 2년이나 앞둔 현재,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정치방침을 공개적으로 조언하는 시론이 등장했다. 지난달 28일 문화일보에 실린 윤창중 논설위원의 시론 <‘이회창식 중도 통합론’인가>가 그것이다.

윤위원은 “총선 후에 이총재가 범한 가장 큰 오류를 자민련과 신생야당들을 포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총재가 먼저 원내교섭 단체구성 요건완화를 제의해 자민련의 공동여당 복귀를 막았다면 한나라당의 지역기반이 영남권에서 충청권까지 확대돼 명실상부한 다수당이 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영수회담 제의에 응해 정상회담결과를 승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말까지 하고 말았으며 이총재의 전략부재를 아쉬워한다.

의약분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도 김대통령이 상생정치라는 카드를 갖고

이총재를 끌고 가게 만들었다며 “이러니 여론에서는 ‘이회창 씨가 다음 대선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윤위원은 이총재가 계속 패착을 두고 있는 이유를 여전히 플라톤적 도덕주의의 끈을 잡고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권력정치에서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플라톤적 도덕주의가 악의 교사로 매도되는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충고한다. 시론은 한시대의 여론, 당시의 세론(世論)이라는 말이다. 우리 언론이 여론을 참칭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지 이미 오래이므로 시론이라는 단어의 적합성을 갖고 다투는 것이 의미없는 행위라 해도 윤위원의 글은 도를 넘어섰다. 이 글은 ‘시론’이라기 보다는 이총재의 정치 보좌관이 작성해 올리는 ‘보고서’라고 해야 옳다. 낙후된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한 언론인의 관점은 전혀 없이 이총재가 권력장악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데만 목을 매고 있다. 오죽하면 지역감정해결에 앞장서야 할 언론인이 ‘자민련을 포용해 지역기반을 충청권으로 확대’ 하라고 충고하겠는가. 지역기반의 확대는 역대 정권의 선거정책이었던 호남포위·고립 작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결국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권획득을 공공연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현재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미디어 오늘’은 지난 2000년 7월 6일자 9면 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작성한 문화일보 6월 28일자 시론 『이회창식 중도통합론인가』에 대해 제목에서부터 기사에 이르기까지 전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매도·편파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해 언론인으로서의 사회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시론의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내용까지 들먹이면서 신청인의 인격 및 명예를 파괴하는 등 중대한 명예훼손을 가했으며 신청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나아가 언론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등 전형적인 언론의 테러리즘이라고 판단. 정정보도문 게재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문화 윤창중 위원 명예훼손에 깊이 이사와
  - 제목 기사, 사실과도 완전 달라-본보 왜곡·매도 재발 방지 다짐
- 내 용 : 본지 (7월 6일자)는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시론 ‘이회창식 중도 통합론인가’ (6월 28일자)에 대해 제목에서부터 기사에 이르기까지 전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매도·편파함으로써 윤위원에 대해 언론인으로서의 사회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시론의 내용과도 무관한 내용을 거론함으로써 윤위원의 인격 및 명예를 훼손하고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준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또한 언론인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기사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줄 경우 언론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음을 중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본지는 윤위원의 시론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 그리고 정치력 부족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인데도, 제목에서는 물론 기사에서도

“이총재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정치방침을 공개적으로 조언하는 시론”이라는 등 필자가 이총재 개인을 위한 보고서를 언론에 게재하고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권획득을 공공연히 주문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본지 기사는 필자의 인격과 직업적 자질에 근본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물론 소속 언론사의 명예도 침해하는 것으로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윤위원이 ‘이총재의 전락부재를 아쉬워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윤위원의 시론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윤위원이 이총재를 지지하고 있는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 시론의 집필의도를 임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또 본지는 필자가 이총재의 철학과 소신의 부재를 비판하면서 “여권의 반대세력을 우군화하는 정치력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등 이총재를 옹호한 대목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이와 함께 본지는 윤위원이 야당의 지역기반 확대를 주장한 것을 지역 감정에 기반한 정권획득이라고 해석했으나 이는 윤위원이 포용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감정 문제와는 전혀 무관함을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윤위원의 시론이 ‘정치보좌관이 올리는 보고서’ ‘권력장악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데만 목을 매고 있다’고 왜곡한 것은 특히 언론인인 윤위원의 명예와 인격을 크게 훼손했으며, 윤위원의 경력을 편의적·악의적으로 인용하거나 완전히 사실무근인 부분과도 연결시킨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만큼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같은 불공정·편파보도로 인해 윤위원과 소속 언론사에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1 : 문화 윤창중 논설위원의 반박칼럼
- 제 목 2 : 언론의 권력과 ‘테러리즘’에 대해
- 내 용 : 지난 6일 오후 3시쯤이 되자 언론계 지인들로부터 잇달아 전화가 걸려왔다. “여봐, ‘미디어 오늘’ 봤어. 당신의 시론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기사가 나왔네. 빨리 봐.” 사실 그때 나는 시론(‘이회창식 중도통합론인가’ 6월 28일자)을 통해 이총재를 비판한 데 대해 한나라당으로부터 매우 거친 항의를 받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이었다. ‘미디어 오늘’을 찾아 문제의 기사를 읽어 보면서 정말 주저앉을 뻔했다. “아니, 아무리 시각이 다를 수 있다해도 어떻게 A를 B라고 왜곡해 이처럼 무자비한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제목에서부터 기사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자의 예외도 없이 필자는 이총재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목을 매면서’ ‘정치보고서’를 버젓이 신문에 실고, 심지어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권획득까지 공공연하게 주문하는’ 인물로 묘사돼 있었다.

도대체 한나라당에서 항의하는 칼럼을 어떤 시각에서 시론이 아닌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가. 필자는 시론에서 이총재가 지난번 총선후 자민련을 포용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뒤 통일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정치력과 정치적 철학 및 소신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디어 오늘’은 필자의 의도를 완전히 역으로 뒤집어 필자가 이총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왜곡이고 폄하이고 인격적 모독이었다. 모든 대목에서 완전히 엉뚱한 인용을 통해 뜯어맞추기 식으로 비판해 나갔다. 언론을 감시한다는 ‘미디어 오늘’

은 바로 그럴 권력이 있기 때문에 1백% 왜곡기사를 써도 괜찮다는 말인가. 필자는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명색이 언론사 논설위원의 시론을 이렇게 왜곡해 개인의 명예와 인격, 그리고 직업적 전문성을 마구잡이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감시 기능인가.

‘미디어 오늘’의 기사는 결론부분에서 필자의 경력중 일부를 편의적으로 인용하면서 공격의 절정을 이뤘다. 나는 밝히건대, 지난 81년 한국일보사 견습 38기로 언론계에 들어와 코리아타임스 정치부기자, KBS 국제부기자, 세계일보 정치부장 등을 거치는 동안 개인적으로 두 차례의 시련을 겪었다. 세계일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송구스러운 일이다. 나는 세계일보 내 경영진간 불화과정에서 이유도 없이 두 차례 해고를 당했다. 그때마다 몇 개월씩 실업자 생활을 하다가 한 차례는 청와대비서실에서, 또 한 차례는 대통령후보 진영에서 스텝으로 일했다. 언론계를 떠난다는 것이 억울했지만 생활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그런 경력을 비난하는 쪽은 실업자의 고통에 대해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나에게 관심이라도 기울여주었던가. 대통령선거 패배 후에는 또 실업자 생활을 하다가 일본 게이오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었고, 그러던 중 민주당의 K모 씨(당사자의 명예를 위해 이니셜을 사용)가 같은 학교에 있게 됐던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귀국해 4개월간 실업자 생활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언론계에 돌아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밝힐 용의도 있다.

필자는 언론인으로서 이같은 경력을 부끄러

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의 미천한 경험은 내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부한다. 정·관계에 있으면서 나는 언론계에 복귀하지 못할 정도로 부도덕하지도 않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언론계나 학계 인사들이 정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조금도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을 나는 큰 위안으로 삼고 싶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큰 보복이다. ‘미디어 오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인 모두에 대해 사시와 질시가 아닌 애정과 이해의 눈을 가져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언론인의 존경을 받는 신문이 돼야한다. 그래야 언론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미디어 오늘’ 2000. 7. 27.자 4면에 4단크기로 게재하되, 제목1(문화 윤창중 논설위원...)의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이회창 총재에게...) 활자크기와 같게하고, 제목2(언론의 권력과...)의 활자 크기는 동기사 제목(문화 ‘윤창중 시론’ 칼럼인가...) 활자크기와 같게하며, 내용활자 크기는 동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미디어오늘 : 『언론의 권력과 ‘테러리즘’에 대해』제하의 기사(2000년 7월 27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여 CBS전북 FM 방송의 허가를 지연시키고, 민주당 원내총무와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44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최 재 승

피신청인 : CBS-R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0. 7. 31.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CBS-R : (1)「아침종합뉴스」프로그램(2000년 7월 15일 07:30)

내 용 : “방송위원회가 CBS 전주 FM 방송의 허가를 더 이상 지연시킬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민주당 중앙당, 방송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전북교계는 민주당 김옥두 사무총장을 만나서 전주 FM 허가 지연 배경에는 익산 출신 최재승 의원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의원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촉구했습니다.

전북교계는 특히, 국회문화관광위원장이 최재승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국가방송정책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2)「뉴스레이다」프로그램(2000년 7월 21일

08:30)

평소 얼굴을 잘 붉히지 않는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갑작스레 국회의사일정 가운데 문화관광위원회 일정이 빠진 것을 두고 총무실 한 당직자에게 고성과 함께 버럭 화를 내는 바람에 주위를 어리둥절케 만들었습니다.

사태의 배경은 추경예산안을 다룰 상임위는 모두 회의를 개최하도록 정균환 총무가 지침을 내렸는데 유독 최재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문화관광위원회의 경우는 추경예산안이 계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데서 비롯됐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총무와 최의원 사이에는 정균환 총무가 특보단장 재직 당시 공천에서 탈락한 최의원이 총무경선에서 정총무를 지지하지 않는 등 서로의 앙금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새천년민주당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피신청인의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첫째, 피신청인은 CBS전북 FM방송의 허가가 지연된 것은 신청인이 방송위원회 등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에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만 신청인은 당시 익산시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1999년 1월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익산시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협 의원과 공동으로 CBS 사장에게 CBS전북방송의 익산 존치건의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익산기독교연합회의 민원이 있어 그들과 문화관광부

장관, CBS사장, 방송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해주고 문관부 방문시 잠시 배석한 적은 있으나 이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지역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 문화관광부나 방송위원회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방송위원회에 압력을 넣어 CBS전북 FM방송의 허가를 지연케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전북 도내 일부지역 교회목사들의 주장을 전북교계라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전북교계 전체의 의사인 양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 할 것이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와의 앙금이 남아있어 소관 문화관광위원회의 추경예산안 관련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다.

즉, 정균환 원내총무가 민주당 특보단장 재직 당시 신청인은 기획조정실장 겸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재직함으로써 정총무가 신청인을 공천하거나 또는 공천을 배제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또한 원내총무 경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었고, 신청인은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표현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균환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보도를 하였다.

또 신청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문화관광위원회는 예비심사기간까지 의결을 하지 못함에 따라 예비심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여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고, 이러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예산안이 넘어감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엉뚱하게도

신청인이 정균환 원내총무와의 불화로 인하여 그러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1)기독교방송은 지난 7월 15일 방송된 'CBS 아침종합뉴스'에서 CBS전북 FM방송의 허가가 지연된 것은 최재승 국회의원이 방송위원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최재승 의원은 방송위원회 등에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승 의원은 CBS전북FM방송의 허가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이는 기독교계 및 CBS 내부의 문제이므로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다만 최재승 의원이 작년 1월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같은 전북 익산시 출신인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협 의원과 공동으로 CBS사장에게 CBS전북방송의 익산시 존치를 건의한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요청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CBS사장, 방송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문화관광부 방문시 잠시 배석한 적은 있으나 이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 문화관광부나 방송위원회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을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기독교방송은 지난 7월 21일 방송된 'CBS 뉴스레이다 4부'에서 최재승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와의 앙금이 남아있어 소관 문화관광위원회의 추경예산안 관련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최재승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민주당 특보단장 재직 당시 최재승 의원은 기획조정실장 겸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정균환 총무가 최재승 의원을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에 공천을 하거나 또는 공천을 배제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또한 정균환 의원이 민주당 원내총무에 출마하여 경선을 실시할 때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었고, 최재승 의원이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표현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정균환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기독교 방송은 이와 다르게 방송을 한 것입니다.

또 국회의장이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기간을 2000. 7. 8.까지로 지정하였고, 최재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예비심사기간까지 의결을 하지 못함에 따라 동년 7. 10.까지 예비심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른바 4·13선거부정에 대한 국정조사권 요구를 이유로 국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고, 국회법 제84조 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예산안이 넘어감으로써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것이 정균환 원내총무와의 양급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님을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입니다.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7월 15일 「아침종합뉴스」에서 CBS 전북FM 방송사의 허가가 지연된 것은 최재승 국회의원이 방송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승 의원은 작년 1월 지역주

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이협 의원과 공동으로 CBS사장에게 CBS전북방송의 익산시 존치를 건의한 공문을 보낸 바 있고 문화관광부장관, CBS사장, 방송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였으나 이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7월 21일 「CBS 뉴스레이다」4부에서 방송한 기자수첩에 관하여 최재승 의원은 국회문화관광위원회를 적절하게 운영해 왔으며, 당내 갈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CBS-R 2000년 8월 5일자 『아침종합뉴스』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게 낭독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CBS-R : 「아침종합뉴스」프로그램(2000년 8월 5일자 07: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을 부가세 감면액으로 충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경남중재 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유)삼우교통 (대표이사 박 세 곤)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재부 : 경남중재부  
 접수일 : 2000. 8.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1)『사라진 부가세 감면액』 제하의 기사(2000년 7월 29일자 15면)

내용 :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시교통의 택시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내역을 두고 지난 1년여간 회사측과 격렬하게 대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 이모(45·마산시 회원구 교방동)씨 등 운전기사 3명은 시교통의 업주를 상대로 95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1차 시행했던 부가세 경감분의 사용내역이 명확치 않다는 점과 회사에서 직접 사용한 부가세 감면분이 제도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부산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 중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1년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및 마산시청·창원지검과 관할 마산동부경찰서 등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이유로 회사내에서 폭행과 조합원 제명 등 불이익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95년 7월 정부는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해 경감세액을 택시운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쓰도록 했다.(중략)

그러나 이씨 등은 업주가 경찰 조사를 통해 분기당 1200만~1300만원을 부가세 감면분으로 받았다는 진술을 했으며, 실제 회사측이 주장하는 190여 만원의 월 합계금액은 전체 감면분의 50%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는 회사측이 어디에 사용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정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99년에는 98년분을, 올해에는 99년분을 지급하는 변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통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월 190여만원의 부가세감면분 노조지급액은 96년 당시 택시 대당 부가세감면분 산출에 근거한 것이며, 98년 미지급분은 99년 지급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2)『마산 삼우교통 '사라진' 부가세 감면액 휴가비·명절보너스로 지급』제하의 기사(2000년 7월 31일자 15면)

부가세감면분 사용내역을 두고 운전기사들과 대립하고 있는 마산시 양덕동 삼우교통이 '부가세감면분'이라는 명목으로 기사 개인에 돈을 지급하는 다른 회사와 달리 회사측 재원으로 따로 충당해야 할 '휴가비' '명절보너스'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 집행기로 한 부가세감면액 절반도 사용처를 노사간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처우개선'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회사 경상경비로 집행해야 할 '차량 무선호출기 설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우교통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부가세 감면분이 사용된 곳은 하계휴가비·추석선물세트·설보너스·단합대회 경비 등으로 본래 회사측에서 경비를 충당해야 할 명목으로 사용됐다.

이는 매월 혹은 분기별로 부가세 감면분 명목을 적용해 개인별 배분액을 지급해온 마산시 내서읍의 석전택시와 삼성택시, 마산시 봉

암동 신평교통·신흥택시 등의 경우와 비교되며, 이들 회사에서는 휴가비·명절보너스 등이 회사측 재원으로 달리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2000년 7월 29일 경남도민일보 15면에 『사라진 부가세 감면액』이란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일부 운전자의 주장만으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처리 절차를 준비하던 중 7월 31일 경남도민일보 15면에 『마산 삼우교통 사라진 부가세 감면액 휴가비, 명절보너스로 지급』이란 제하의 보도내용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함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회사는 창사이후 현재까지 단체협약에 의하여 부가세 감면분과 전혀 관계없이 별도의 하계휴가비와 명절보너스, 단합대회 경비 등을 지불하여 왔음에도 단 한 번의 확인절차도 없이 부가세 경감분으로 지급한 것으로 허위보도했다.

보다 질 높은 서비스와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사의 명예가 건잡을 수 없이 실추되었으므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는 바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마산 삼우교통 부가세 감면액 노사합의로 정상지급.

휴가비, 명절보너스 등은 회사의 재원으로 별도지급”.

본보 7월 29일, 7월 31일 15면에 실린 마

산시 양덕동 삼우교통의 부가세감면분 관련 기사에 대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부가세 감면분은 노사합의로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부가세 감면분과 관계없이 회사측의 경비로서 하계휴가비와 명절보너스가 별도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기에 본지의 오보를 인정하며 이에 정정보도를 합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 7월 29일자 15면에 『사라진 부가세 감면액』제하의 기사에서 삼우교통이 부가가치세 경감액 50%를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용내역에 의문이 있다고 일부 운전기사가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7월 31일자 15면에 『마산 삼우교통 '사라진 부가세 감면액' 휴가비·명절보너스로 지급』제하의 기사에서 삼우교통은 부가세 감면분을 회사측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휴가비' '명절보너스'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부가세 감면분 중 노동조합분 50%는 노사합의로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부가세 감면분과 관계없이 회사측의 경비로서 하계 휴가비와 명절보너스가 별도 지급되었음이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도민일보 : 『마산 삼우택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2000년 8월 19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운영하는 살빼기 교실 회원 중 9명의 체중이 오히려 늘었으며, 신청인이 회원들의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0 부산중재1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박 종 선  
피신청인 : UBC-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0. 8.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UBC-TV : (1)「8뉴스」프로그램(2000년 7월 12일 20:00)

내 용 : >앵커 : 노출의 계절, 여름이 되면서 살빼기교실에는 여성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살을 빼다는 광고와는 달리 돈만 날렸다는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기자 : 33살 유모 씨는 두 달 전 울산시내의 한 살빼기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살을 빼려고 맘 먹던 참에, 95만원만 내면 두 달만에 최고 9킬로그램을 빼주겠다는 카탈로그에 귀가 솔깃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두달동안 저녁까지 굶었지만 2킬로가 빠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뷰 : 살이 왜 안빠지느냐고 했더니 당초 그런 약속한 적 없다며 한 달 더 다니라고 하더라.

>기자 : 유씨는 그나마 다행인 편. 그대로거나 몸무게가 오히려 늘었다는 회원도 9명이 나 됩니다.

>인터뷰 : 체질분석하겠다고 하더니 컴퓨터 고장났다고하고 무조건 굶이라며. 회원들은 참다못해 집단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회원들의 잘못으로만 떠넘깁니다.(중략)

>기자 :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광고대로 살이 빠지지않더라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 : 계약할 때 일정 체중 빠지지 않으면 어떤 보상받을지 자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기자 : 살을 빼려는 여성들의 욕구가 상술에 이용되면서 피해여성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8뉴스」프로그램(2000년 7월 14일 20:00)

살빼기교실의 과대 광고 실태에 대한 울산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피해 회원들이 이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33살 유모 씨 등 10명은 중구 성남동 모 살빼기 업체가 카탈로그 등을 통한 과대광고로 회원들을 속였다고 환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회원들은 이와 함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허위과대 광고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울산 중구 성남동 190-239에서 “신세계레크레이”라는 상호로 살빼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 업소에서는 광고내용대로 성실히 영

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살빠진 다더니'라는 제하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신청인은 돈을 환불해 달라는 회원들에게 돈을 환불해주지 않은 사실이 없다. 한 회원은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돈을 환불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다른 회원은 돈을 환불 받은 다음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여 몸매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회원들이 집단으로 환불을 요구하는데도 신청인이 돈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청인업소에서 몸매관리를 받은 회원들 대부분은 만족할 만큼 몸무게가 감소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은 거의 없음에도 몸무게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몸무게가 늘었다는 회원이 9명이나 된다고 인원 수까지 지적하여 보도한 것 역시 허위보도다. 또한, 컴퓨터 체질분석도 다 해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얼굴과 신청인 업소의 상호를 방영하여 영업을 그만둘 형편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2000년 7월 12일 20:00 뉴스부터 같은 달 14일 10:50까지 매 뉴스 시간에 방송한 '살빠진다더니'라는 제하의 방송에서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신세계 레그케어 살빼기교실을 지목하여 한 살빼기교실에서 몸매관리를 받았으나 몸무게가 늘었다는 회원이 9명이나 된다. 회원들이 집단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회원들의 잘못으로만 떠넘긴다. 살을 빼려는 여성들의 욕구가 상술에 이용되면서 피해여성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

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확인결과 몸무게가 늘었다는 회원은 한 사람도 없으며, 컴퓨터를 통한 체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록기간 내에 환불을 요구한 회원은 환불을 해주었고, 살을 빼려고 하다가 피해를 본 여성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2000년 7월 12일 20:00 뉴스부터 같은 달 14일 10:50까지 뉴스 시간에 방송한 '살빠진다더니'라는 제하의 방송에서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모 살빼기 교실을 지목하여 몸매관리를 받았으나 몸무게가 늘었다는 회원이 9명이나 된다. 회원들이 집단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회원들의 잘못으로만 떠넘긴다. 살을 빼려는 여성들의 욕구가 상술에 이용되면서 피해여성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 모 살빼기 교실 원장은 "몸무게가 늘었다는 회원은 한사람도 없으며, 등록기간 내에 환불을 요구한 회원은 환불을 해주었고, 살을 빼려고 하다가 피해를 본 여성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0년 8월 21일 20:00 뉴스시간에 1회 앵커멘트로 보도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UBC-TV : 「8뉴스」프로그램(2000년 8월 21일 20: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전공의 파업을 이유로 수술약속을 한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퇴원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0 서울중재 253

청 구 명 : 청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동 석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0. 8. 14.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연합뉴스 : 『“수술도 못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라니요”』제하의 기사(2000년 8월 9  
일자)

내 용 : “반드시 수술해주겠다는 의사의 말  
을 믿고 입원까지 했는데 가족 모두가 다시  
먼길을 내려가야만 하다니요”

병명을 모르는 안과질환 때문에 신촌 세브  
란스 병원에서 오는 10일 수술을 받기로 돼있  
던 이상남(26.여) 씨는 9일 오전 ‘집으로 내려  
가서 기다리라’는 의사의 통보를 듣는 순간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씨는 갑자기 왼쪽 눈이 튀어나오면서 진  
물과 고름이 섞여 나오자 지난 5일 대형병원  
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고향인 대구에서 곧바  
로 서울로 올라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진찰결과 ‘신경외과와 안과의사가 공동으로  
집도하는 수술을 받아야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이씨는 일단 의사를 믿

고 수술대에 오르기 위해 입원수속절차를 밟  
았다.

입원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파업  
때문에 불만에 가득찬 환자들이 얼굴을 보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한  
끝에 의사에게 다시 수술가능 여부를 타진했  
지만 ‘걱정말라’는 의사의 약속을 믿고 이씨  
는 오는 10일 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입원복으  
로 돌아왔다.

그러나 며칠 뒤 일부 회진에 참여하던 전공  
의들과 전임의들 마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데 불안을 느껴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이씨는 이날 아침 담당 의사가 ‘전임의까지  
파업에 가세, 인력이 딸려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수술을 하더라도 치료를 제대로 해  
줄 수가 없다’고 수술연기를 통보하자 망연자  
실해졌다.

순간 이씨는 무책임한 태도로 환자와의 약  
속을 일순간에 저버린 의사의 말을 듣고 마음  
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자신을 병간하던 언니,  
남동생들과 함께 대구로 내려가기 위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연합뉴스 8월 9일 오후  
『수술도 못 받고 고향으로 돌아 가라니요』제  
목의 기사에 나온 환자의 담당 주치의로서  
뉴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중재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직접 취재하지도 않은 환자 상  
태에 대해 과장되고 왜곡된 허위보도를 하였  
으며, 신청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모든 의료진  
이 간단한 질병도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는 무  
능한 의료진으로 비방하였으며, 신청인을 환  
자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어긴 파렴치한 인

간으로 매도하였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를 이간질하는 허위 보도를 하였으며, 현 의료계의 현실과 관계하여 어려운 주변 환경에서도 정성껏 환자를 진료하였던 전공의, 전임의를 폄하하였다. 또한 환자를 위한다는 구실로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환자 가족에게도 큰 정신적 혼란을 주었다.

이에 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보도하여 신청인 및 의료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8월 9일 오후 『수술도 못 받고 고향으로 돌아 가라니요』 제목의 기사에서 “반드시 수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원한 환자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였고 양심 없는 의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퇴원을 시켜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담당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않은 부정확한 사실이었으며 사실 확인결과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지 않았으며 산후의 상태로 응급 수술을 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 퇴원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가족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본지는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환자와 환자 가족의 의사와 무관한 기사를 잘못 왜곡 보도함으로써 환자와 담당 주치의 및 의료진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사과 드립니다.

#### 합의사항

- 내 용 : 정정보도문
- 본 문 : 연합뉴스는 지난 8월 9일자 『수술도 못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니요』제하의

기사에서 “반드시 수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원한 환자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였고 양심 없는 의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퇴원을 시켜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의 내용은 주치의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사실 확인 결과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지 않았으며 산후의 상태로 응급 수술을 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 퇴원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가족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환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환자와 환자 가족의 의사와 무관한 기사를 잘못 왜곡 보도함으로써 환자와 담당 주치의 및 의료진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에 2000년 8월 22일자로 보도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2000년 8월 22일자 23:1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등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중 대학원을 다니면서  
도사편찬위원회 연구원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청청보도)**

사건번호 : 2000 경기중재 3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이 한 규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재부 : 경기중재부  
 접수일 : 2000. 8. 14.  
 처리결과 : 합의

감히 도지사께 묻고 싶다.(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장으로 2000. 8. 7.자 7면의 특별기고 형식으로 보도된 『도사편찬위원회 정상화 시급하다』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고급행정서비스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업무시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한술 더 떠서 출장을 빌미로 서울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구원을 차 운전까지 시킨 사람도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 할 일이다.”라는 내용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나 업무시간 외에 다닌 것이며, 특히 대학원에 가기 위하여 연구원을 차 운전시킨 일은 전혀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중재를 신청한다.

### 보도내용

경기일보 : 『도사편찬위원회 정상화 시급하다』  
 제하의 기사(2000년 8월 7일자 5면)

내용 : (전략)

그런데 경기일보 8월 1~2일자 기사와 사실에 “연구원들을 1년이 넘도록 문화정책과 보조원으로 전락시켰다”는 글에서 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문화정책과 소관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2명이면 도사의 기존 업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말에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그의 말 대로라면 당초(1993년)부터 2명만 있어도 되었다는 뜻이거나, 감원요인이 발생했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 된다.

일부 공무원들이 고급 행정서비스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업무시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한 술 더 떠서 출장을 빌미로 서울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구원을 차 운전까지 시킨 사람도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자신은 근무시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문화정책과에 인력이 부족에서 연구원들을 보조원으로 근무시켰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과연 이런 일이 연구원의 업무인지? 그리고 도사편찬위원회는 문화정책과 눈먼 조직인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 8. 7.자 5면의 기고란에 『도사편찬위원회의 정상화 시급하다』라는 내용 중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고급행정서비스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업무시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한술 더 떠서 출장을 빌미로 서울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구원을 차 운전까지 시킨 사람도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결과 업무시간에 대학원을 다닌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 외 야간에 다닌 것이며 또한 연구원을 차 운전시킨 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내 용 : 본지가 지난 8월 7일자 5면의 특별기고란에 『도사편찬위원회 정상화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내용 중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고급 행정서비스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업무시간에 대학원을 다니고 출장을 빌미로 서울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구원을 차 운전까지 시킨 사람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공무원은 야간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업무시간에 학교에 간 사실이나 대학원을 가기위해 연구원을 차 운전시킨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 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일보 2000년 8월 21일자 5면에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전문위원)와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정정보도』제하의 기사(2000년 8월 19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김희선의 누드비디오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5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조 세 현

피신청인 : 스포츠서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0. 8. 16.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스포츠서울 : 『“김희선 누드비디오 있다-사진작가 조세현 씨 기자회견서 밝혀”』  
제하의 기사(2000년 8월 14일자 1면)

내 용 : “김희선 누드비디오도 있다!”

사진작가 조세현 씨(41)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서빙고동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희선의 ‘누드집 이중계약서 파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씨는 “서울에서부터 김희선과 패션과 누드가 결합된 영상집을 촬영하기로 약속했고, 아프리카라는 장소도 김희선이 정했다”며 “이런 촬영스케치를 캠코더로 찍은 메이킹 필름이 10개의 테이프에 담겨 있다”고 김희선의 나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이 테이프는 현재 법원에서 증거물로 채택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절대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희선 측이 “누드집을 찍는 줄 몰랐고 현지에 가서야 알았으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누드집에 대해 미리 시안을 짰고 김희선이 4~5번 그 시안을 봤으며 딱 한 장면만 못 찍겠다고 해서 그것만 빼 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촬영했다”고 누드 촬영에 문제가 없었음을 역설했다.

조씨에 따르면 김희선이 누드를 촬영한 것은 6일간의 촬영일정 중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패션사진과 누드를 병행해서 찍었는데 첫날과 셋째날은 올누드, 둘째날은 상반

신만 노출한 사진을 찍었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사진작가 조세현으로서 스포츠서울 2000년 8월 14일자 1면『김희선 누드비디오 있다 - 사진작가 조세현 씨 기자회견서 밝혀』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김희선 누드 비디오 있다”라고 기자설명회에서 마치 신청인이 “누드 비디오 있다”라고 밝힌 양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8월 13일 오후2시에 있었던 기자설명회에서 촬영장면을 스케치한 20분 짜리 비디오를 공개, 촬영당시의 분위기를 소개하였다. 이때 이 비디오의 내용은 아프리카 촬영의 일부라고 하였고 이 비디오는 법원에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있다라고만 밝혔으며, 누드 비디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드 비디오는 없다. 신청인은 현재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는 송사 중에 일어난 일이라 이런 허위 기사로 말미암아 재판 당사자간의 감정적 불화의 증폭과 오해가 있어, 대중들과 김희선 측의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스포츠서울) 지난 8월 14일자 1면에 『김희선 누드 비디오 있다-사진작가 조세현씨 기자회견서 밝혀』(유진모 기자)의 기사에서 “누드 비디오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작가 조세현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누드 비디오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진작가 조세현 씨와 배우 김희선 씨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허위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부제목 : 김희선 누드비디오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 내 용 : 본지가 지난 14일자 1면에 『김희선 누드비디오 있다-사진작가 조세현 씨 기자회견서 밝혀』제하의 기사로 김희선 누드비디오 있다고 조세현 씨가 말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사진작가 조세현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김희선 누드비디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서울 2000년 8월 25일자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의 활자크기는 이 건 중재대상기사 우측의 기사 부제목(이종범 5연속경기 안타)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부제목(김희선 누드비디오 있다고 말한 사실 없어)의 활자 크기는 이 건 중재대상기사 부제목(사진작가 조세현씨 기자회견서 밝혀) 활자 크기와 같게 하며, 내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서울 :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2000년 8월 25일자 4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등이 전개하고 있는 조선일보 거부운동의 취지를 왜곡보도해 피해를 입었다(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0/서울중재272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동 민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0. 8. 29.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조선일보 : 『“미군철수 등 반대하는 조선일보에 기고거부”』제하의 기사(2000년 8월 28일자 26면)

내 용 :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언론학), 김정란 상지대 교수(불문학), 시인 김은숙, 노영란 매비우스 교육부장, 이창은 대자보 발행인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성유보 이사장, 최민희 사무총장 등은 7일 오전 서울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1차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 기고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후략)

이 들은 또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선일보의 행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극력 반대하고 있으며 미군철수도 반대하고 있다"며, "조선일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개혁과 평화적인 통일은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를 반대하는 유인물

배포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수구 논객들에 대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조선일보 거부의 날'을 제정해 행사하며 ▲조선일부 거부선전, 서명운동, 항의 집회 등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조선일보 8월 8일자 26면 『미군철수 등 반대하는 조선일보에 기고거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사실은, 조선일보 거부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일보 내의 수구 논객들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뿐이다.

또한 이 기사는 선언문을 거두절미하여 김동민 등이 마치 조선일보를 정부가 비판하기 때문에 거부운동을 하는 것처럼 왜곡해 놓았다. 사실은, 조선일보의 정부 비판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혁을 좌절시키고 평화통일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언급됐던 것이다.

제목도 그렇다. 마치 김동민 등이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군철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마치 우리가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정부에 비판적인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얼토당토않게 조선일보 마라톤대회를 반대한다든지 수구 논객들의 퇴진운동을 벌인다든지 하여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양식을 의심받는 피해를 입고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조선일보가 지난 8월 8일자 26면에 『미군철수 등 반대하는 조선일보에 기고 거부』제하의 기사에서 김동민 교수 등이 “조선일보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연일 맹목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앞으로 조선일보 마라톤대회를 반대하는 유인물 배포,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수구 논객들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동민 교수 등은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사실은, 조선일보 거부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계획하고, 조선일보내의 수구 논객들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뿐이다. 우리는 외부의 수구논객들이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기사는 완전히 작문으로서 선언에 참여한 지식인들의 양심을 의심케 만드는 왜곡된 기사다.

또한 이 기사는 선언문을 거두절미하여 김동민 등이 마치 조선일보를 정부가 비판하기 때문에 거부운동을 하는 것처럼 왜곡해 놓았다. 사실은, 조선일보의 정부 비판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혁을 좌절시키고 평화통일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제목도 그렇다. 마치 김동민 등이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군철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바도 아니며, 주한미군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작은 이유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보 지난 8월8일자 26면에 게재된 『미군철수 등 반대하는 조선일보에 기고 거부』제하의 기사 중 “김동민 교수 등이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계획”이라는 표현은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거북이 마라톤 대회”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수구 논객들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0. 9. 6.자 26면에 게재하되, 제목(바로 잡습니다)의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미군철수 등...)활자크기와 같게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동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2000년 9월 6일자 3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이 사건 각 만평은 풍자만화의 고유한 특징인 풍자, 과장, 은유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필자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7. 28.자 판결 (99다6203)

##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은 2000년 7월 28일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김인호 씨가 경향신문 만평과 관련하여 경향신문사와 김상택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戲畫的)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을 통해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작가의 게재 동기, 사용된 풍자나 은유 기법,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독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사건 각 만평의 장면은 원고 등이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을 공방 출국장을 빌려 희화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이 1997년 12월 20일자 및 1998년 1월 21일자 1면의 경향만평을 통해 원고 등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 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게재하자 마치 원고가 외환위기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거나 도피를 모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1·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237~247면 참조).

## 판결문

사 건 : 99다6203 손해배상등  
원고, 상고인 : 김 인 호(金仁浩)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307동 202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피고, 피상고인 :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홍 성 만  
2. 김 상 택 (金 相 澤)  
서울 노원구 상계 5동  
신동아아파트 101동 707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98. 12. 24.  
선고 98나47575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  
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  
다31356 판결,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  
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  
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

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  
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  
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30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  
음과 같은 요지로 인정, 판단하였다.

가.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피고 김상택  
이 기고한 만평으로서, ① 1997. 12. 20.자  
경향신문 제1면의 '경향만평란'(지면 크기  
약 10cm×10.5cm)에, 출입문에 '미국여행사'  
라고 표시된 여행사 사무실 안에 '前경제수  
석', '姜경식', '前한은총재'로 표시된 세  
사람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서서 그 중 '前  
경제수석'으로 표시된 사람이 오른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이며 항공권을 주문하고 있  
고, '李사철', '鄭형근', '裁'로 표시된 세  
사람이 여행사 문 밖에서 '우리도 가자!'라  
고 말하는 장면과 여행사 사무실 밖에 설치  
된 텔레비전 화면에 한 사람이 오른 손을  
들고 '경제 망친 X를 사그리...'라고 말하  
고 있으며, 여행사 직원들이 항공권을 주문  
하는 세 사람을 쳐다보거나 손가락으로 가  
리키며 웃는 장면 및 컴퓨터 단말기 모니터  
에 'LA 3장'이라는 자막이 나와 있는 장면  
을 담고 있는 제1심판결 제1심판결 별지 제  
1만평을.

1998. 1. 21.자 같은 신문 제1면 같은 난  
에, 공항의 출국장 한쪽 구석에 '尹', '李X  
식', '金인X', '姜경X', '姜'으로 표시된  
다섯 사람이 모여 서서 "'어른'은 살릴 거

야. 퍼뜩 튀자!”고 말하고 있고, 출국심사대에 앉아 있는 경찰관과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다섯 사람이 있는 쪽을 쳐다보고 있으며, 출국심사대가 놓인 벽면에 ‘출국금지 하지만 마약복용’이라고 표시된 출국금지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고, 출국심사대 옆으로 보이는 공항 활주로에 미국 항공기가 착륙해 있는 장면이 담긴 제1심판결 별지 제2만평을 각 게재하였다.

####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외로 도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만평을 통하여 원고 등이 외환위기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거나 도피를 모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각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 다. 판단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戲畫的)으로 묘사하거나 풍자(諷刺)하는 만평(漫評)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隱喻的)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 각 만평의 경우에도 원고 등 3인 또는 5인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 도피를 논하고 있는 장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각 만평이 원고 등이 해외 도피를 계획하거나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만평이 게재된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 등이 실제로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한 적이 없고, 그와 관련된 소문이나 언론보도도 없어서 이 사건 각 만평을 기고한 피고 김상택이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그 무렵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전개된 여론 및 정치권의 동향과 그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내용 및 이 사건 각 만평과 같은 정치만평을 읽는 독자들이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밖에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

건 각 만평은 원고 등이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감사원 특감이 거론되는 한편, 새로 출범한 정부가 경제위기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원고 등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이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항 출국장을 빌려 희화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원고 등이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명한 것일 뿐,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이를 대하는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각 만평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다.

3. 의견이나 논평 또는 만평의 형식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은폐, 왜곡하는 등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28.

|     |     |       |
|-----|-----|-------|
| 재판장 | 대법관 | 이규홍   |
| 주심  | 대법관 | 송진훈   |
|     | 대법관 | 윤재식   |
|     | 대법관 | 손지열 □ |

**판결 2**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군판사인 원고들이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2000. 7. 12.자 판결 (99가합90005)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0년 7월 12일 '병무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군사법원 판사들이 경향신문과 문화일보, 각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소속 기자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 기사의 표현들이 전채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군 검찰관과 군판사들이 병무비리사건 수사과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서 구형량을 일부러 낮추거나 형평성을 잃을 정도의 관대한 판결을 하였던 비리 사실이 적발되었고, 국방부는 이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 사법조직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 기사 중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이유가 군검찰과 군판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 때문이라는 원고들의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허위기사이며, 군 검찰관들이나 군판사들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더욱이 비보도를 요청했던 취재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고 하여,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일보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수사나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통상적인 의혹제기의 범주를 크게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의혹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

고 있는 헌법 취지에 비추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로서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비록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1999년 10월 13일자 경향신문 제1면과 문화일보 제31면에서 “병무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일부 군 검찰관계자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구형량을 낮추는 등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 결 문

사 건 : 99가합90005 손해배상(기)등

원 고 : 1.황 창 근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 13동 301호

2.김 영 석

인천 남동구 만수4동

주공아파트 404동 703호

3.송 병 주

인천 남동구 구월동 258

팬더아파트 8동 305호

4.조 태 천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04

반포아파트 7동 108호

5.장 보 식

서울 영등포구 신길 7동 1167

공군아파트 8동 106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Ⅲ 고 : 1.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대표이사 홍 성 만

2.김 택 근

- 3. 김 중 훈  
 피고 1, 2, 3. 주소 서울 중구 정동22  
 피고 1.,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 4. 주식회사 문화일보  
 대표이사 김 진 현
- 5. 김 호 준
- 6. 김 영 번  
 피고 4, 5, 6. 주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68  
 피고 4., 5., 6.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상 희

변론종결 : 2000. 6. 14.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김택근, 김종훈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0. 13.부터 2000.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향신문'의 제1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고딕체 64포인트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활자로 게재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김택근, 김종훈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 김호준, 김영번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김택근, 김종훈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 피고 김호준, 김영번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피고 경향신문사'라 한다), 김택근, 김종훈은 연대하여 각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이하 '피고 문화일보'라 한다), 김호준, 김영번은 연대하여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경향신문사는 일간신문 '경향신문' 제1면에 제목은 견고딕체 64포인트 활자로, 내용은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활자로 하여, 피고 문화일보는 일간신문 '문화일보' 제31면에 제목은 견고딕체 62포인트 활자로, 내용은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활자로 하여 별지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라는 판결.

이유 :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가.의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제1 내지 제3 기사가 보도될 당시, 군법무관들로서 이른바 '병무비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들이다.

(2) 피고 경향신문사는 일간지 '경향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김택근은 별지 제1, 2 기사가 보도될 당시 피고 경향신문사의 편집국장, 피고 김종훈은 별지 제1, 2

.....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서 각 피고 경향신문사의 피용자들이며, 피고 문화일보는 일간지 '문화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김호준은 별지 제3 기사 보도된 당시 피고 문화일보의 편집부장, 피고 김영번은 별지 제3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서 각 피고 문화일보의 피용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재 및 보도 경위

(1) 피고 김종훈은 1999. 10. 12. 한겨레신문 기자 김도형과 함께, SBS 방송의 1999. 10. 10.자 '병무비리, 기무사 장성들도 연루 의혹'이라는 보도의 진위를 취재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하였다가, 당시 국방부 정책보좌관이던 중장 김인종의 방을 찾게 되었다. 곧이어 국민일보 기자 이동재가 동석하였다.

(2) 김인종은 그 자리에서 피고 김종훈 등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당시 병무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군검찰 내부에 알력이 존재하고 있고, 군검찰이 군 고위관계자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채 SBS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군검찰관과 군판사가 짜고 형량을 마음대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의 비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은 군검찰과 법원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며 이를 손질하기 위해 군 사법기관의 조직 및 인사개편, 비리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위 방을 나온 후 피고 김종훈은 데스크에 위 사실을 정보보고 한 뒤 기사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지 제1, 2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김도형은 군법무의 비리내용 부분은 "비리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정화 작업" 등의 문구로 간단하게 처리한 채 기

사를 작성하였고, 이동재는 김인종의 요청에 의하여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

(4) 이에 따라 '경향신문' 1999. 10. 13.자 제1면에 피고 김종훈이 작성한 별지 제1 기사가, 제 3면에 별지 제2 기사가 각 보도되었다.

(5) 피고 김영번은 '경향신문'에 위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자, 1999. 10. 13. 09:00경 국방부 공보와 김용식 과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김인종 정책보좌관이 자신의 방에 찾아온 기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별지 제3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기사가 같은 날 '문화일보' 제31면에 보도되었다.

2. 피고 경향신문사, 김택근, 김종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이하 이 점에 관하여 관련기사인 별지 제1, 2 기사를 함께 살핀다.

(1) 피해자의 특정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 내용 중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그 기사가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볼 것이다.

살피건대, 별지 제1, 2 기사가 보도될 당시 원고들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로 재직하며 병

무비리사건 재판을 담당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비록 위 기사들에 원고들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들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 병무비리사건 재판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로서는 위 기사들이 원고들에 대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위 기사들의 피해자들로 특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기사들은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기사가 아니고, 군사법조직 개혁과 그 단초가 된 군 사법기관 내의 비리의혹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사들의 내용은 위 비리의혹의 주체가 군검찰관과 군판사라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원고들에 대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 (2)구체적 사실의 취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명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 제목과 전문의 내용, 배치 등을 종합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인상이 어떠한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위 판단 기준을 근거로 별지 제1, 2 기사의 게재 내용을 살펴건대, 별지 제1 기사 중에 사용된 “비리척결핵심, 非理관련자 대대적 인사조치”라는 소제목과 “일련의 병무비리 수사 과정에서 일부 군 검찰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군 법원이 형평성을 결여하는 판결을 양산하는 등 군사법부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혁의 대상은 군검찰, 군 법원, 국방부 법무행정요원 등 군사법기관 전반에 걸쳐 이

뤄질 것”이라는 본문 중의 각 표현, 별지 제2 기사 중에 사용된 “썩은 뿌리는 빨리 뽑아내야”라는 제목과 “수사·재판과정 금품수수 ‘관행’ 만연, 비리 고리 끊으려면 제살 도려내야”라는 소제목, “국방부가 군사법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이들 기관의 비리가 일정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자체적인 원인분석 작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군 사법기관 내에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게 됐다”, “엄격한 계급사회인 군에서 법무관리관이 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관장하는 탓에 두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 결국 비리를 양산하는 「터」가 되고 있다”, “국방부는 또 현재 병무비리팀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감사를 군사법부 전체로 확대해 비리연루자를 뿌리뽑을 계획이다”라는 본문 중의 각 표현들 및 위 각 표현들이 전체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는 별지 제1, 2 기사의 내용을, 군검찰관과 군판사들이 병무비리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서 구형량을 일부로 낮추거나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형평성을 잃을 정도의 관대한 판결을 하였던 비리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러한 비리는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국방부는 이와 같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법조직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므로, 별지 제1, 2 기사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 (3) 명예훼손의 고의, 과실

위 기사들에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

.....

하지킬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이상 위 피고들은 위 기사들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의 사실이 적시된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다.

#### 나. 위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별지 제1, 2 기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하 차례로 살핀다.

##### (1)공익성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당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병무비리 수사에 관련된 것이고,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 (2)진실성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군기무사 측이 제기한 의혹을 기사화한 것인데 그 내용 대부분이 그 후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을 나.의 제1호증, 제2호증의 12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병무비리 수사 진행 중 군기무사와 군검찰 간의 알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고, 1999. 12. 7. '병무비리 수사결과' 발표와 같은 달 28. '병무비리 수사관련 감사결과' 발표에서 군 병무비리사건에 관하여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어 오던 점 및 수사기밀유출 사실에 대한 시인이 있었으며, 그 문책으로 일부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를 바

탕으로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별지 제1, 2 기사 중 군 사법제도 개선안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제1, 2 기사의 내용은 군 사법제도가 개혁될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 제도개혁의 이유가 군검찰과 군판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 때문이라는 점 역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인데, 그 중 원고들의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군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은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허위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전체 기사에서 위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고들이 행하는 직무가 군사법원재판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단순한 과장이라 평가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 할 것이다(이 점에 있어 별지 제1, 2 기사는 별지 제3 기사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나) 위 피고들은 다시, 별지 제1, 2 기사가 군 내부에 존재하는 군 법무에 대한 인식을 기사화 한 것으로 그러한 인식이 존재함은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종훈이 당시 국방부 정책보좌관이던 김인종을 취재하고 이를 근거로 위기사들을 작성한 점에 비추어 군 내부에 위와 같은 군 법무에 대한 인식이 존재함은 사실이고, 위 기사들이 그러한 인식을 전하는 방식으로 기사화 된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 제3자의 말을 전하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기사의 내용이 제3자의 의견이나 인식을 전하는 것

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취재한 사실보도로 이해될 경우에는 사실보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별지 제1, 2 기사도 비록 제3자의 진술을 전언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사 전체의 내용과 사용된 표현, 그 배치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는 제3자의 진술이 어떠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병무비리 수사와 관련한 군검찰과 군관사들에게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있음이 포착되었다는 사실보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에 반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상당성

위 피고들은, 별지 제1, 2 기사들은 군의 최고급 정책담당자 등에 대한 면담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취재원의 신뢰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별지 제1, 2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김종훈이 작성한 위 기사들은 전적으로 김인종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고, 위 기사들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할 가능성이 있는 군검찰관들이나 군관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은 위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바, 위 김인종의 지위가 국방부 정책보좌관이긴 하였으나 그의 진술 중 군검찰과 군관사의 금품수수 등의 비리에 관한 부분은 그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사실확인절차 없이 위와 같은 보도를 내보내데 대하여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취재원인 김인종이 피고 김종훈 등에게 비보도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신속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연성이 있는가도 의문이다. 이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위 피고들의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 다. 손해배상책임

그렇다면, 원고들이 별지 제1, 2 기사로 인하여 무형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군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들이라 할 것인데 위 기사들이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국민적 관심사인 병무비리사건 재판의 신뢰성에 타격을 가한 점, 위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별지 제2 기사의 제목과 소재목이 가져다주는 인상 등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위 피고들에 게 불리한 자료라 할 것이나, 그밖에 위 기사들의 주된 취지인 군사법개혁의 방향 부분은 그 후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

.....

판이 언론의 본래 사명 중의 하나인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정정보도

병무비리사건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별지 제1, 2 기사 중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 사실의 내용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제1, 2 기사가 신문에 게재된 크기, 게재면수,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정정보도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 경향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향신문'의 제1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고딕체 64포인트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신문명조체 10포인트 활자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 3. 피고 문화일보, 김호준, 김영번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명예훼손

앞에서 언급한 판단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에 대해 살핀다.

(1) 비록 위 기사들에 원고들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기사들의 피해자들도 역시 원고로 특정된다 할 것이

다.

(2) 또한, 별지 제3 기사 중에 사용된 "군 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은 최근 병무 비리에 연루된 군의관들이 죄질에 비해 너무 관대한 구형량과 판결을 받은 과정에서 일부 군법무관들이 개입하는 등 비리의혹이 짙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또 병무비리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와 헌병 요원들이 대거 적발된 반면, 법무관들의 비리 연루 사례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내부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각 표현들과 그 표현들이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맥 등을 종합하면, 일반독자의 관점에서는 위 기사의 취지를, 병무비리사건 수사과 재판 과정에 드러난 일부 군법무관들의 비리의혹 때문에 군 사법개혁이 실시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비리를 내부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위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법성 조각의 항변을 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항변이 이유 있다.

(1) 별지 제3 기사의 내용은 군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와 비리 근절을 위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이므로, 위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2) 위 기사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가.의 제7호증, 나.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병무비리 수사과정 중에 군기무사와 군 검찰간의 알력으로 수사에 대한 외압여부가

문제되었고, 군검찰의 수사에 대하여는 축소·은폐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그 후에 실제로 군법부에 대하여 감찰이 이루어져 일부 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았고, 별지 제3의 기사와 일치하는 군사법제도개선안이 발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 김영번 역시 그간 병무비리 사건을 취재하면서 군법부에 대하여 일정한 의혹을 가질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위 기사 중에 제기된 군법무관들의 비리의혹이라는 것도 “병무비리에 연루된 군의관들이 죄질에 비해 너무 관대한 구형량과 판결을 받은 과정에서 일부 군법무관이 개입하는 등 비리의혹의 질다는 지적”으로서 별지 제1, 2 기사에서와 달리 비리의혹 부분의 구체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수준의 의혹제기는 국가기관의 수사나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통상적인 의혹제기의 범주를 크게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언론의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제기에 있어서 그러한 의혹을 제기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의혹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이 사건 의혹의 실체는 아마도 군의관들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면책을 약속하였던 내용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세칭 ‘비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비추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로서는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별지 제3 기사 중 일부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 없

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경향신문사 김택근, 김종훈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제1, 2 기사의 보도일인 1999.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0. 7.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문화일보, 김호준, 김영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00. 7. 12.

재판장    판사 안영률  
          판사 함석천  
          판사 장철익

####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9. 10. 13. ‘군사법개혁’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 소속 군판사들이 병무비리사건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라, 본지는 법원으로부터 국방부 군판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고들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목

본지 1999. 10. 13.자 군사법 개혁 기사에 관하여 국방부 군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본지에 손해배상 판결

2. 내용

본지 1999. 10. 13.자에 게재된 '군사법 개혁' 관련 제하의 기사는 군사법 담당자들의 비리나 잘못에 대하여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임의로 작성하고 편집하여 게재한 것으로, 국방부 군판사 및 군사법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잘못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1기사

軍사법 전면개혁

국방부, 조직개편·비리척결 핵심 이르면 연초시행  
검찰·법원 독립운영...非理관련자 대대적 인사조치

군 검찰 및 군 법원 등 군 사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시작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2일 『군 사법기관의 조직 및 인사개편, 비리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초안을 지난 달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면서 『현재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처럼 군내 사법기관의 개혁을 직접 주도키로 한 것은 일련의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일부 군 검찰 관계자들이 금품

을 받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군 법원이 형평성을 결여한 판결을 양산하는 등 군 사법부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개혁의 대상은 군 검찰, 군 법원, 국방부 법무행정요원 등 군 사법기관 전반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면서 『개혁안은 올해 안에 완성돼 이르면 내년 초쯤 시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우선 군 검찰과 군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키 위해 현행 법무관리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복수화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이 서로 독립돼야 올바른 사법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두 기관을 법무관리관이 관리감독함에 따라 독립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 사법기관은 군 검찰과 군 법원으로 2원화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군 법무조직 전체가 일대 쇄신될 전망이다.

각정 비리를 일삼은 군 법무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 및 대대적인 인사조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일부 군 검찰관들이 피의자들에게 특정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금품을 건네받고 구형량을 낮춰주는 등 사법기관내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자체 감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들을 가려내 전원 징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2기사

“썩은 뿌리는 빨리 뽑아내야”

수사·재판과정 금품수수 ‘관행’ 만연

“비리 고리 끊으려면 제살 도려내야”  
 軍검찰-법원 분리 대대적 조직개편

‘軍사법기관수술’ 배경과 전망

국방부가 군 사법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이들 기관의 비리가 일정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작된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수사 검찰관간의 알력’ 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국방부는 자체적인 원인 분석 작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군 사법기관 내에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내사 결과 병무비리 수사관들의 알력은 수사팀 중 「군 검찰관들의 비리부터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군 검찰관들을 대다수 검찰관들이 「왕따」시키면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군 검찰관들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형량을 낮추는 등의 비리관행이 일부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군 검찰의 한 관계자도 『군 검찰의 비리가 심각한 상태』라며 『군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검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병무비리 수사팀 내에서도 이같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무비리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람이 불구속 처리되는가 하면 뇌물액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사람은 구속되는 등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기무사령부 소속 장성들에 대한 병무 비리 청탁의

혹」도 이같은 맥락에서 터진 것으로 보고 풀이하고 있다. 국방부의 군 사법기관 개혁작업이 시작되자 위기를 느낀 병무비리 수사팀 내 일부 세력이 『기무사 장성도 연루됐다』는 첩보자료를 언론사에 흘려 국방부의 개혁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결과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는 병무비리 수사팀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들이 지휘계통에 보고도 하지 않은 자료들을 특정 언론에 흘리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기무·현병 수사전담팀을 새로 확대 개편해 기무장성 병무비리 청탁의혹을 조기에 매듭 짓고 곧바로 개혁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방부는 개혁의 최우선 사항을 법무조직의 대폭적인 개편에 두고 있다. 현행 군 법무조직으로는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국방부의 법무조직은 법무관리관(소장) 밑에 군 검찰과 군 법원이 공존하고 있다. 엄격한 계급사회인 군에서 법무관리관이 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관장하는 탓에 두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 결국 비리를 양산하는 「터」가 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검찰과 법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현재 병무비리팀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감사를 군 사법부 전체로 확대해 비리 연루자들을 뿌리뽑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말끔히 터를 닦은 곳에는 새 짚을 피울 새 씨를 뿌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달 말쯤부터 군의 사법개혁을 위한 일대 회오리가 해당기관 전체에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3기사

軍 사법 확 뜯어 고친다.  
병몰리 개입 의혹따라  
법무관리관제 폐지 검토

군검찰, 법원 등 군 사법기관에 대한 대  
대적인 개혁작업이 단행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군사법기관의  
조직 및 인사개편, 비리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방침을 최근 조성태(趙成台) 국방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국방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은 최근 병  
무비리에 연루된 군의관들이 죄질에 비해  
너무 관대한 구형량과 판결을 받은 과정에  
서 일부 군법무관이 개입하는 등의 비리의  
혹이 짙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사법조직의 독립  
성 확보와 비리 근절을 위해 현재 통합 운  
영되고 있는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분리, 이  
들 기관을 통합관장하는 현행 법무관리제도  
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또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기무  
사와 헌병 요원들이 대거 적발된 반면, 법  
무관들의 비리연루 사례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내부적으로 은폐했을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강  
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

판결 3

변호사인 신청인이 사건알선과 관련 판·검사에게  
대가성 금품을 지급하는 등 사법정의를 뒤집은 것처럼 인식되는  
보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반론보도하라

대전지방법원 2000. 7. 24.자 판결 (2000카기1303)

사실개요

대전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2000년 7월 24일 ‘대전법조비  
리 사건’ 보도와 관련, 이종기 변호사가 대

전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방  
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며,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은 사건 알선과 관련 신청인이 판·검사에게 대가성 금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검은 관행의 실체가 피신청인이 입수한 신청인의 비밀장부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거나 그와 같은 의미를 암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이 판·검사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대가성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판·검사와 유착하여 사법적 정의를 뒤집은 것처럼 인식되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문화방송이 1999년 12월 26일 '진단충청2000' 연말특집 「격동 99 대전충남뉴스일지」를 통해 부장검사출신의 변호사인 신청인이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교도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1억6천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는 등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판·검사들에게 사건알선과 관련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조관계자들과 유착하여 사법정의를 뒤집은 장본인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심판신청을 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0카기1303 반로보도심판신청

신청인 : 이 중 기

대전 서구 둔산동 1391

서림빌딩 601호

피신청인 :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대전 중구 선화동 381의 171

대표이사 하 영 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현

변론종결 : 2000. 7. 3.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 반론 보도문을 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방영되는 대전문화방송 08:00 뉴스프로그램 '진단충청2000' (프로그램개편시에는 대체프로그램) 시간 말미에 청색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1회 방영하며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자에게 낭독하게 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에게 위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방영되는 대전문화방송 뉴스프로그램 '진단충청2000' 시간 첫머리에 청색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방영하며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자에게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판결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신청인은 1999. 12. 26. 08:00 대전 MBC 일요일뉴스프로그램인 '진단충청2000'의 연말특집프로그램 "격동99" 대전충남뉴스일지'의 중간부분에서 "1월 7일 대

전 MBC 뉴스데스크는 범조계의 검은 관행의 실체를 특종보도해 사법개혁에 불을 당겼습니다. 사건을 처음 보도한 대전문화방송은 이종기 변호사의 전사무장 김현 씨로부터 이변호사가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비밀리에 작성한 600쪽 분량의 수입내역을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비밀장부에는 전현직판검사를 포함한 379명이 사건 소개인으로 올라 있고, 이 중 122명이 대가성 소개비를 받은 내역이 조목조목 기록돼 있었습니다. 부장검사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입하면서 검찰, 법원, 경찰관계자들과 유착된 사실이 범조계를 발각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법무부장관에게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핵심인물인 이종기 변호사와 김현 전사무장은 처음엔 비밀장부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다 자백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결국 수사착수 닷새만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변호사는 지난 94년부터 97년 7월까지 검찰과 법원직원, 경찰관, 교도관 등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사건을 알선받고 대가로 1억6천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입니다. 김 전사무장에게는 폭력과 업무상 횡령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이변호사는 유행어가 돼버린 원초적 관행이란 말을 남겨 범조삼륜의 부패고리가 관행이란 허울에 가려 얼마나 뿌리깊은지 보여줬습니다. 범조계도 친분관계와 돈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사법 정의가 뒤집어질 수 있는 실상 앞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대선 범조비리 사건은 2월 1일 대검의 수사발표와 함께 일단락됐습니다. 검사 25명과 판사 5명 등 30명이 이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 가운데 9명이 웃을

벗었습니다. 또 전현직 검찰직원 12명이 사법처리되고 법원·검찰 직원과 경찰관, 교도관 등 70여 명이 징계 또는 인사불이익을 받았습니다.”라고 대전충남권에 방송 보도하였다.

(2) 피신청인은 이에 앞서 1999. 1. 7. 대전 MBC 9시뉴스를 통하여 신청인의 전사무장 김현으로부터 입수한 사건수입장부 632매를 전격공개하면서 검찰·법원직원, 경찰관, 교도관과 판·검사 등 200여 명이 신청인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비로 한건당 20만원 내지 300만원씩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었고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이른바 ‘대전범조비리사건’이 촉발되었고 대검찰청은 수사를 거쳐 1999. 2. 1.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3) 대검찰청의 위 수사결과발표 중 판·검사의 사건소개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면, 신청인이 작성한 자료에 판·검사의 이름이 사건 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판사와 검사도 사건 소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판·검사의 사건소개부분을 조사한 결과 판사, 검사가 신청인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 친지, 동향사람들로부터 적당한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청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고, 판사, 검사가 신청인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사실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소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 나. 주장 및 판단

(1) 피신청인의 1999. 12. 26. 08:00 ‘진단충청2000’ 시간의 위 보도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적 주장 임은 분명한 바, 신청인은 자신은 전현직 판·검사에게 사건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성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는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결과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며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사건수임장부에 표시된 비용란에 판·검사의 경우에는 모두 "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판·검사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1999. 12. 26. 08:00 '진단충청2000' 시간에 신청인이 판·검사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한 양 허위의 사실을 계속 보도하여 신청인의 법조관계자들과 유착하여 사법정의를 뒤집은 장본인으로 몰아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보도내용의 의미는 신청인이 일부 판·검사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점과 판·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그렇다면 상호 유착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법조개혁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전현직 판·검사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 없으므로 위 보도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로서 신청인이 이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보도내용의 의미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

를 암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보도내용 전체의 문맥과 특히 "법조계도 친분관계와 돈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사법정의를 뒤집어질 수 있는 실상"이라는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도내용은 사건알선과 관련하여 판·검사에게 대가성 금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검은 관행의 실체가 피신청인이 입수한 신청인의 비밀장부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거나 그와 같은 의미를 암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판·검사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그들에게 대가성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판·검사와 유착하여 사법적 정의를 뒤집은 것처럼 인식되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은 나아가 이른바 '대전법조비리사건'은 피신청인의 1999. 1. 7. 대전 MBC 9시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이어 이미 1999. 1. 초순경 다수의 언론기관들에 의하여 보도된 바 있고 신청인이 이로 인하여 구속되어 수사까지 받은 바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피신청인이 연말 특집보도를 통하여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는 과거의 사실을 정리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방송법 제41조 소정의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인에게는 반론 보도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도 내용에는 '신청인이 판·검사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그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주장사실은 앞서 인정한

대검찰청의 99. 2. 1.자 수사결과발표와 배치될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조사나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실사 신청인이나 대전법조비리사건에 대하여 이미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거나 위 사실적 주장이 과거의 사실을 정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론은 변하는 것이고 사람의 기억이나 생각 역시 변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아무런 새로운 법익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방송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피신청인의 보도에 관하여 별건으로 반론보도신청을 하여 위 별건에 관한 반론보도로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중복되어 불필요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 이전인 1999. 12. 20. 07:00 대전 MBC뉴스시간대인 07:30:51부터 07:33:15까지 “기획보도 99결산, 법조! 변혁의 한 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보도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 위 보도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신청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을 거쳐 당원이 2000. 4. 24. 2000카기 595호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판결확정 후 최초로 방영되는 대전문화방송 07:00 뉴스프

로그램시간 말미에 반론보도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999. 12. 20. 방송보도와 이 사건 방송보도는 그 방송시간대와 그 방송프로그램을 전혀 달리하므로 위 1999. 12. 20. 방송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와 별도로 이 사건 방송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영 방법

### 가. 내용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신청인의 보도내용과 이로 인해 침해된 신청인의 법익, 그리고 이 사건의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사실의 진술을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반론보도의 내용은 별지 1기재 반론보도문의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

(2) 신청인은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방영하여 줄 것을 청구하나, 무릇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되(반론보도 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4항),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도록 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방영을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 중 별지 1기재 반론보도문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원방송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평가가 이거나, 신청인의 사실적 진술에 의한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적절히 삭제 수정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제한하여 인용함이 상당하다.

나. 방영 방법

위 반론보도문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방영되는 대전 문화방송 08:00 뉴스프로그램 '진단충청2000' (프로그램개편시에는 대체프로그램) 시간 말미에 청색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1회 방영하며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자에게 낭독하게 하는 것이 원보도문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반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3. 간접강제

한편 피신청인이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위 반론보도문 방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

청인에게 위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24.

재판장 판사 김 선 혜  
판사 최 정 기  
판사 김 선 태

〈별지1 반론보도문〉

대전 문화방송은 지난 해 12월 26일 아침 8시 『진단충청2000』이라는 프로그램시간에 『“격동 99” 대전·충남 뉴스일지』라는 제목으로 “이종기 변호사의 비밀장부에는 전현직 판·검사를 비롯한 379명이 사진 소개인으로 올라 있고, 이 중 122명이 대가성 소개비를 받은 내역이 조목조목 기록돼 있었습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하여 이번 호사는 “이 사건에 관한 99년 2월 1일자 대검찰청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더라도 판·검사가 사진소개와 관련하여 대가성 소개비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별지2 신청인이 방영을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대전문화방송은 1999. 12. 26. 08:00 “진단

충청2000” 프로그램의 연말보도특집에서 “격동 99”제하에 “이종기 변호사의 비밀장부에는 전현직 판·검사를 비롯한 379명이 사건소개인으로 올라 있고, 이 중 122명이 대가성 소개비를 받은 내역이 조목조목 기록돼 있었습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변호사는 “대전문화방송이 마치 자신이 판·검사들에게 소개비를 준 것처럼 보도한 것은 대전문화방송이 사무장 김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중 일부를 은닉한 후 사실을 조작하여 보도한 것이며, 1999년 2월 1일자 대검찰청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더라도 판·검사가 사

건소개와 관련하여 대가성 소개비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전문화방송의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를 응징하기 위하여 방송사 기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모두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문화방송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지난 1월 24일자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에도 불응하면서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판결 4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하면서  
원고로부터 추가적인 동의를 얻거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2000. 7. 4.자 판결 (99나83698)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목영준 부장판사)는 2000년 7월 4일 모범택시 운전자인 원고가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담긴 비디오를 복제, 판매해 온 KBS영상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한국방송공사 방영작품의 판매 및

관권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가 도주차량 운전자를 체포하는 장면 및 원고의 인터뷰 장면이 있는 KBS-1TV의 「일요스페셜-교통사고 현장기록144시간」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복제, 판매하면서 추가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화면처리를 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량 복제, 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

으로 한 것이 아니라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며, “피고가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 교통회관에 교육용 자료로 판매하면서 원고의 초상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반복 방영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해 원고로부터 추가적인 동의를 얻거나 원고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교통회관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방영 금지 등 사적 이용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구입에 있어서의 제한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원고의 초상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반복 방영되었으므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가 도주차량운전자로부터 가해질지 모르는 위협에 노출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협은 피고의 예상범위 밖이며, 피고의 복제, 판매행위로 인해 특별히 현실화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1심에서는 “원고가 인터넷에 응할 당시 초상촬영에 동의한 이상 이는 동시에 초상공표에 대한 동의도 포함되며, 방송프로그램 제작 이후의 복제, 판매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방영 등 여부는 저작권자인 방송사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도주차량 운전자를 체포할 당시나 위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당시와 비교하여 도주차량 운전자로부터의 위해가능성이 증대되었거나 현존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9. 10. 1.자 선고, 99가단 51980).

## 판 결 문

사 건 : 99나8369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김 명 호

서울 송파구 마천동 354의 32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원 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중 현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케이비에스

영상사업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이사 이 민 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현

변 론 종 결 : 2000. 6. 20.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10. 1. 선고  
99가단51980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1. 11.부터 2000. 7. 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는 서울 3아3577호 모범택시(현재는 서울 35바3597호)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1994. 12. 26.경 위 모범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힐탑호텔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을 추적하여 힐탑호텔 옆 이면도로에서 위 도주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그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그런데, 그 무렵 한국방송공사(KBS) 소속 기자가 원고에게 다가와 연말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고 하면서, 원고가 위 도주 차량 운전자를 체포하는 장면의 촬영 및 원고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촬영 및 인터뷰에 동의하여 자신이 위 도주차량 운전자를 체포하기까지의 상황을 답변하였고, 그 후 1995. 1. 29. 20:00부터 방송된 KBS 1TV 프로그램인 「일요스페셜-교통사고현장기록 144시간」을 통하여 원고의 인터뷰 장면이 방영되었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과 제1심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당심의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새마을교통회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위 프로그램상 원고의 인터뷰 장면은 인터뷰 시작으로부터 도주차량번호, 도주차

량과 원고의 모범택시 접촉 직후의 모습, 경찰서에서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조사 모습 등이 순차로 약 18초 정도 나오는데, 인터뷰 장면에서 택시기사 복장을 착용한 원고의 얼굴과 음성이 나타나고 원고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으며 운전자 명찰이 있지만 원고의 이름을 육안으로는 식별하기는 어렵다. 또, 위 도주차량의 차량번호는 나타나지만 원고의 차량번호는 나타나지 않고 원고 차량이 도주차량을 저지하는 장면에서 그 차량이 모범택시임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피고는 한국방송공사 방영작품의 판매 및 판권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문에 의하여 일반인들에게 위 방송 프로그램 「일요스페셜-교통사고현장기록 144시간」을 소정의 대가를 받고 비디오테이프로 복제,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위 복제, 판매시 피고가 추가로 원고의 동의를 얻은 바는 없으며, 피고는 원본 그대로 복제, 판매하였을 뿐 원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화면처리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측의 광고문(을 제2호증의 1, 2)를 보면, 피고가 판매하는 비디오테이프(VHS-Tape)는 사적이용을 위한 가정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를 허가 없이 공공장소(사내방송, CA-TV 등)에서 방영 또는 판매,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로 규제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 내의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인 제1심 공통피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새마을교통회관(이하 교통회관이라 한다. 피고측의 전산자료 및 영수증상으로는 '교통연수원'으로 되어 있음)은 1998. 3. 초경 피고측의 '비디오가이드' 목록을 보고 피고에게 안전운전교육용 자료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위

방송프로그램이 교육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방송 프로그램이 복제된 비디오 테이프 1개를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교통회관은 1998. 3. 10. 위 '교통연수원' 이름으로 대금 22,000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는 그 이름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후 교통회관은 1998년도 서울특별시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과정 중에 시청각교재로서 위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하였다.

그런데, 교통회관은 위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할 당시 피고로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방영 금지 등 위 광고문상의 경고를 전혀 듣지 못하였고, 위 비디오테이프에도 그러한 경고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피고의 위 비디오테이프 판매실적 자료(을 제3호증)을 보면, 피고는 주문에 의하여 위 비디오테이프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위 교통회관뿐 아니라 다른 단체(대한교육보험, 럭키화재, 삼성종합화학 등)에도 개인과 특별한 구분 없이 판매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촬영 및 인터뷰에 동의한 이상 그 이후 위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 판매 및 공공장소에서의 방영 등은 위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 촬영 및 인터뷰 동의에는 그로부터 당연히 예상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 판매 및 방영에 대한 동의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초상권 침해 주장은 이유없다고 다룬다.

### 나. 판단

#### (1) 초상권에 대하여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민법 제75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할 때 모든 국민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하며,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촬영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본인이 동의하고 또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공표, 복제, 판매되는 등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동의 없는 복제, 판매와 초상권의 침해 여부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한국방송공사 소속 기자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촬영 및 인터뷰 요청을 받고서 이에 동의하였고(원고는 위 동의가 매우 급박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동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촬영이 공중과 방송을 통한 초상공표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촬영된 원고의 초상을 공중과 방송을 통하여 방영하는 것은 원고의 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

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교통회관 등에 판매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따로 얻지 않았는 바, 이것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나) 먼저 살피건대, 위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된 이후의 복제, 판매 또는 공공장소에서 방영 등 여부가 위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방송사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는 방송사로 그 저작권을 위임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저작권 행사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위법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 복제, 판매행위가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의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항은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전시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촉탁초상의 저작권자라도 그 전시·복제를 위하여는 초상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한편, 위 개정 후 2000. 7. 1. 부터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 제4항 역시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함에 있어서도 원칙상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공중과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촬영 및 인터뷰 요청에 동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동의는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 판매에 대한 동의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먼저 복제의 경우에 관하여 살피건대, 촬영 또는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보존 등을 위하여 이를 비디오테이프 등의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 자체는 원고의 위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복제 내지 실제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지 사적 또는 가정용 이용을 위한 시청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소정의 대가를 받고 방송 프로그램을 원본 그대로 복제, 판매하는 것은 제작,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원고의 위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달리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위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복제, 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단지 공중과 방송을 통한 일회성 방영에 동의하였을 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영리 목적의 복제, 판매나 반복적 방영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일단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복제, 판매하는 경우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 곳에 제공할 경우에는 위 촬영 동의 외에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원고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복제, 판매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시중에 대량으로 복제, 판매하는 등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교통회관으로부터 안전운전교육용 자료에 관한 문의를 받고 교통회관에 위 방송 프로그램이 복제된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면서 교통회관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주기까지 하였으므로, 교통회관이 위 비디오테이프의 구입자일 뿐만 아니라 위 비디오테이프가 교통회관의 교육용 자료로 사용되어 원고의 초상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방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복제, 판매행위는 원고의 초상이용에 관한 당초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추가적인 동의를 얻거나, 그렇지 않다면 원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원고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주문 판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제, 판매하였고, 교통회관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방영 금지 등 사적 이용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구입에 있어서의 제한(이러한 제한은 일차적으로는 피고측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이나, 원고의 촬영 동의가 미치는 범위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원고의 초상권 보호와도 관련이 된다.)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원고의 초상은 원고의 동의 없이(또는 당초의 위 촬영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방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방송 프로그램을 교

통회관에게 복제,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는 피고의 위 복제, 판매행위로 인하여 자신에 의하여 체포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위 도주차량 운전자로부터 가해질지 모르는 위협에 노출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러한 위협은 피고가 예상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위 도주차량 운전자를 체포할 당시 또는 위 방송 프로그램이 최초로 TV에 방영될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복제, 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없다는 취지로 다룬다.

살피건대,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이므로 초상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이 촬영, 공표, 복제, 판매되는 것 자체로 침해가 성립하고 초상본인은 일정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의 당초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한 이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원고의 가치를 저하시킨다거나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고, 원고 주장과 같은 위협은 피고의 예상 범위 밖이며 피고의 위 복제, 판매행위로 인하여 특별히 현실화된다고도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

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직업, 원고의 초상이 촬영된 경위와 방송내용, 방송시간, 피고가 교통회관에 위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한 경위 및 교통회관의 방영횟수, 방영대상, 원고 주장과 같은 위험의 발생가능성. 이 사건 소송 후 피고의 조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초상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항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9. 11.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0. 7.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별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4.

|     |    |       |
|-----|----|-------|
| 재판장 | 판사 | 목영준   |
|     | 판사 | 윤치삼   |
|     | 판사 | 김상규 □ |

### 판결 5

원심 인용 반론보도문 가운데 신청인이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뜬다는 등의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은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

2000. 7. 13.자 판결(99나61271/99나61288/99나61295 병합)

#### 시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0년 7월 13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원심판결대로 14건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심에서 인용한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신청인을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사실과 신청인이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교한 사실 등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청구가 이유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MBC뉴스데스크」에 대하여 6회분의 반론보도를 신청한 신청인의 청구에 대하여 “나머지 방송이 첫 번째 방송의 요약이거나 신청인 교회신도들의 MBC사옥난입과 관련한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후속보도 정도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두 번에 걸쳐 포괄적으로 행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청구인이 하나님과 자신이 한 몸이라고 선전하고 이단행위를 하며 신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비리에 대한 방송을 하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14건의 반론보도신청을 했으나, 중재결과 14건 가운데 11건이 중재불성립결정되고, 나머지 3건은 기각되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판 결 문

사 건 : 99나61271 반론보도심판  
99나61288(병합) 반론보도심판  
99나61295(병합) 반론보도심판

피신청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  
대표자 당회장 이 재 록

2. 이 재 록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66의 257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승 준

피신청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노 성 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성 하

변론종결: 2000. 6. 22.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10.

14. 선고 99카합 1694.

1754(병합), 1755(병합)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방송시간과 프로그램에서 같은 목록 기재 방송순서 및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 내용을 방송하라.

나. 만일 피신청인이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각 1회 방송분 반론보도문에 대하여 1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문 별지 제3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의 방송방법에 따라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각 반론

.....

보도문에 대하여 1일 금 5,0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당원 99나61271, 61295(병합) 사건에 대한 간접강제를 위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 신청인들 : 제1심 판결 중 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피신청인 :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한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중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피청구인'을 '피신청인'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의 '2.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여부'란 중 '가. 인용하는 부분'란에 다음에 보는 '추가하는 판단'의 가. 항을, ③ '나. 배척하는 부분'란에 '추가하는 판단'의 나. 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하는 판단

가. 한편 신청인들은 6회분의 MBC 뉴스데스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신청하고 있으나, 1999. 5. 12. 뉴스데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보도들은 첫 번째 방송의 요약이거나 신청인 교회신도들의 MBC사옥 난입과 관련한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후속보도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각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두 번에 걸쳐 포괄적으로 행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나. (1) 1999. 5. 12. 06:00 MBC 텔레비전 아침뉴스 2000 (제1심 판결문 15쪽 셋째 줄 다음)

반론보도문 ⑧, ⑨ : 소음 제16호증의 9, 27, 소음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이재록 개인에 대한 지나친 신격화와 극단적인 신비주의 종말론 등을 이유로 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단에서는 1990. 5. 1. 신청인 이재록을 이단으로 결정하였고, 월간지 '현대종교'는 1995. 7월호에서, 월간지 '교회와 이단'에서는 1997. 11월호 및 1998. 7. 8월호에서 각 신청인 이재록에 대하여 이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1999. 4. 12. 신청인 이재록 개인의 신격화와 도덕성, 이단적 계시관, 신비주의 종말론 등을 이유로 신청인 이재록을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인 이재록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1999. 5. 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13. 위 위원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재심신청이 이유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999. 5. 12. 21:00 MBC 뉴스데스크 (제1심 판결문 16쪽 셋째 줄 다음)

반론보도문 ⑨ : 소음 제16호증의 9, 소음 제2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이재록은 1998. 6. 21. 주일예배서 자신이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교한 사실, 교회소식과 각종 환장의 치유사를 알려 주는 신청인 교회에서 발행하는 만민매거진에서는 1998. 9월경 신청인 이재록의 고향에 있는 화정샘물이 신청인 이재록이 기도한 뒤 치료의 생수로 변화되었다고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1999. 5.12. 12:00 MBC 정오뉴스 (제1심 판결문 16쪽 다섯째 줄 다음)

반론보도문 ③ :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4) 1999. 5. 12. 05:00 라디오 5시 뉴스 (제1심 판결문 19쪽 첫째 줄 다음)

반론보도문 ② : 이 반론보도문 중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신청인 이재록이 자신을 신격화 한 점 등을 들어서 신청인 이재록에 대하여 이단판정을 내렸다'는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신청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의 범위 내에서 당원이 인정하는 별지 목록 기재 반론보도문 내용을 같은 목록 기재 방송시간과 프로그램에서 같은 목록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방송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 피신청인이 이 판결 이후에 반론보도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위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는 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13.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박   상   훈  
           판사   한   양   석   □

독일판결

허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재 전파를 금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Bundesverfassungsgericht (연방헌법재판소)  
2000년 2월 23일 결정 - 1 BvR 456/95 (제1부의 1)

판시요지

1. 의견발표의 자유 및 신문의 자유는 유보 없는 보호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률 규정상의 다른 보호하에서 그 한계를 구할 수 있고, 이 일반법률 규정에는 민법 제823조, 제1004조가 속한다.

2. 민사법원은 헌법상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별사례에서 기본권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해 고려해야 하고 이는 통상적으로 형량할 때에 참조해야 한다.

3. 사실의 주장에 관하여 형량할 경우 진실성에 구속된다. 진실한 내용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인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경과

헌법소원자는 일간지 '바디쉐 신문'을 발

행하고 있다. 그는 1993년 9월 30일자 "극우자들이 예의바르고자 하는 바와 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자유노동자당(FAP)의 대표자도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 "신선한 자유(Junge Freiheit)"의 기고가였다고 보도하였다.

그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FAP 극우조직의 대표자가 그 신문의 기고가이고, 연방정부가 극우조직의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같은 인터뷰파트너 또한 그 신문을 읽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헌법소원자의 보도는, "신선한 자유" 신문의 필자에 FAP의 대표자가 있다고 보도한 베를린 신문 '일간지'(Die Tageszeitung)의 1993년 8월 19일자 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사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993년 9월 30일 전에는 공개적으로 항변하지 않았다.

지방법원지원은 "신선한 자유" 신문의 기고가에 FAP의 대표자가 속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금지의 소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이 판결을 변경하였고 헌법소원자는 제안을 따르도록 판시하였다. 중요부분에서 근거가 제시되었다:

금지청구권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특히 주장이 허위이므로 위법성을 가지며 청구권신청자로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주장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입증을 행할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과 연결된 헌법소원자의 어려움은 명백하다. 원고는 과거 및 현재의 동일한 기고가를 증인으로서 언급하여야만 하므로 원고의 전체적 조직구조 및 개인적인 것에 관해 공개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증언언급으로부터 기업에 고유한 비밀유지이익이라 할 수 있는 사실의 존재에 대한 역추론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은,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범위에서 헌법소원자가 진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FAP와 연결되고 있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원고는 모든 기고가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이름의 언급은 헌법소원자에게도 가능하여야만 하는데, 그것을 알아야만 그와 같은 광범위한 주장을 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자가 보도의 시점에서 신중하게 조사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헌법소원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나중에 보도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 주장된 사실이 허위임을 원고가 확인한 다음에는, 헌법소원자는 소송에서 추후조사를 통하여 주장한 사실에 대한 실증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비판받고 있는 바이에른의 “주주 사례”(BVerfGE 85, 1 = AfP 1992, 53)

에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의 사실관계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언론에 있어서 통상적인 조사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기관으로서 헌법소원자는 개인의 경우보다 더 엄격히 논증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리하여 헌법소원자가 민사소송법 제138조 1항의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다음에는, 항소법원은 또한 증거조사를 중지하고 헌법소원자의 위법한 침해가 있었다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미 위법한 침해가 있었다면, 그것을 반복할 우려에 대한 사실적 추정이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소송전에 요구된 보도금지 요청을 거절함에 의거한 반복위험은, 헌법소원자가 마지막 사실심리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보도할 가능성을 갖고자 함으로써 증명된다.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소원자는 기본법 제5조 1항의 1 및 2에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 판결이유

헌법소원은 수용될 수 없다. 수용의 요건(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 a 조 제2항)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자는 원칙적 의미가 있는 헌법적 질문은 제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이 성공하리라는 예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수용될 경우에도 헌법소원자의 기본권의 관철에 대한 전망은 하지 않고 있다.

1. 의견발표 및 신문·출판의 자유와 표현행위에 의한 당사자의 침해에 대한 보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이 요구될 수 있는가에 대해 헌법결정은 명확히 하고 있다(BVerfGE 85, 1, 15f. = AfP 1992, 53; BVerfGE 99, 185, 193 ff.). 이 척도는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판결을 가능케 한다.

2.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93조 1항의 1의 헌법소원기간내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늦게 제시된 것을 고려해 볼때에 헌법소원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비판받은 판결은 기본법 제5조 1항의 기본권에 있어서 헌법소원자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 특히 헌법소원자에게 금지된 표현행위는 그것이 사실의 주장에 관한 것일지라도 기본법 제5조 1항의 1의 보호범위에 있다. 왜냐하면 사실적 주장도 공표된 사실이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경우에는 의견발표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향유하기 때문이다(BVerfGE 61, 1, 8 = AfP 1982, 215; BVerfGE 94, 1, 7과 비교하십시오). 이는 바로 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문제가 된 사실의 주장이 원고가 저지한 신문에 대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외 신문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는지 여부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례에 의하면, 언론의 기능을 행사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신문 인쇄물 자체, 그 제도적-조직적 요건 및 한정조건과 자유언론의 제도에 관한 경우 그럴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이견에서와 같이 일정한 표현행위가 허용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않은지 여부, 특히 제삼자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표현행위를 인용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전과매체를 고려치 않고 기본법 제5조 1항 1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BVerfGE 85, 1, 12f.; BVerfGE 95, 28, 34; BVerfGE 97, 391, 400).

헌법소원자의 조사의무에 있어서 지방법원이 제시한 요건 중 자유언론의 유지에 대한 한정조건의 침해가 있는지 일별해야 할 범위에 있어서, 의견발표의 자유의 기본권의 침해에서와 같이 이와 같은 침해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다.

2)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의견발표의 자유도 유보없는 보호를 향유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자신의 한계를 기본법 제5조 2항에 따라 특히 일반법률 규정에서 찾는다. 이 규정에 민법 제823조, 1004조가 또한 귀속되고, 지방법원은 금지청구권을 이 두 가지 법률규정에 근거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마찬가지로 민사법원이 해야 할 일이다. 민사법을 헌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권에 근거하고 있는 지위들이 충돌할 때에는, 민사법원은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고려하여야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가치를 정하는 의미가 법률의 적용영역에서 부여되는 것이다(BVerfGE 7, 198, 205 ff.과 비교하십시오).

이는 명예 또는 명성의 침해의 중대함과 표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견의 자유의 희생 간에 형량할 것을 통상적으로 요구하는데, 이 형량을 할 때에는 일반법의 해석 여지가 사실요건의 범위에서 행해질 수 있고 사례의 특별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견에서와 같이 사실의 주장에 관한 경우 형량은 진실성에 구속된다. 진실한 내용은 그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것일지라도 인용되고, 이에 반하여 허위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BVerfGE 97, 391, 403).

허위의 사실적 주장의 전파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허위의 사실적 주장이 처음부터 의견발표의 자유의 보호범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정확한 정보는 의견발표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BVerfGE 54, 208, 219과 비교하시오). 그러나 허위임을 인지한 사실적 주장 및 표현행위의 시점에서 이미 사실의 주장이 허위임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기본법 제5조 1항 1의 보호범위 밖에 있다. 의견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통상적인 사실의 주장은 그것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보호를 받는다(BVerfGE 61, 1, 8 = AfP 1982, 215; BVerfGE 90, 1, 15 = AfP 1994, 118; BVerfGE 90, 241, 254 = AfP 1994, 126; BVerfGE 99, 185, 197과 비교하시오).

그러나 진실성은 형량의 경우 절대적 의미가 있다(BVerfGE 94, 1, 8과 비교하시오). 원칙적으로 의견발표의 자유는 명예를 훼손하는 또는 명성을 침해하는 허위의 표현행위에 있어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허위임이 여러 가지 면에서 표현행위의 시점에서는 불확실하고 나중에 비로소 범원에 의하여 밝혀질 경우에는 유의하여야만 한다. 나중에 비로소 허위라고 인식된 표현행위의 제재와 관련하여 기본권행사가 위협되는 효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민사법원의 판례는 표현행위자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과하였다. 개별적으로 설명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즉, 매체에 대하여 보다 더 엄격한 이와 같은 주의의무에 대하여(BGH, NJW 1966, 2010, 2011; NJW 1987, 2225, 2226 = AfP 1987, 597; BGHZ 132, 13, 23 f.과 비교하시

오). 진실의무가 과도하지 않는 범위의 것이라면 헌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기본법 제5조 1항의 규정의 의미에 있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과정이 옥죄어져서는 안된다(BVerfGE 99, 185, 198과 비교하시오).

비교형량은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에 구속된다.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나 나중에 문제가 된 표현이 허위라고 밝혀진 경우에, 표현행위는 표현행위의 시점에서는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처벌, 철회 또는 손해배상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주장이 허위라고 확정된 다음에는, 정당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BVerfGE 97, 125, 149과 비교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행위가 유지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말하자면 첫 번째의 침해위험, BGH, AfP 1986, 241 = NJW 1986, 2503, 2505), 표현행위자는 그 결과 금지판결을 받을 수 있다.

흔히 사실적 주장의 진실성 여부에 관해 조사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제삼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주장에 대한 진실입증의 부담을 표현행위자에게 부과하였다(BGH, NJW 1974, 1710, 1711과 비교하시오). 이와 같은 설명부담은 근거없는 주장의 경우 의견발표의 자유의 보호는 후퇴되어야만 한다는 실체법 규정에 대한 소송상의 일치점을 형성하고 있다. 표현행위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진실입증을 위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주장은 허위의 것으로 취급된다(BVerfGE 99, 185, 199와 비교하시오).

이는 또한 헌법상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설명부담에 대한 실체법상의 주의의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의견발표의 자유의 기본권행사에 대해 위협적

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설득력 갖춘 요건을 제시하여서는 않된다(BVerfGE 85, 1, 21 = AfP 1992, 53).

3) 이것과 관련하여 비판받고 있는 판결은 기본법 제5조 1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법원이 헌법소원자에 대해 요구한 설명요건들은 헌법적 관점에서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헌법소원자의 보도에 FAP의 대표자인 그 기고가의 이름이 언급되어 좀 더 상세히 구체화할 것에 대한 요구는, 그것이 이미 전파된 주장을 회고적으로 게재하는 것에 관한 경우에는 설명부담이 과도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리고 헌법소원자가 다툼이 있는 주장을 그 밖의 다른 발행된 보도로부터 독자적인 조사없이 인용하였을 때, 자신이 언론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의미가 있다. 전문서적에서 비판없는 인용은 지속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비판없는 인용은 보도가 당연히 용인되는 것으로 인정된 말하자면 단순히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4. Auflage, S. 324 f.; Soehring, *Presserecht*, 2. Auflage, Seite 16; Loeffler/Steffen, *Presserecht*, 4. Auflage, §6 LPG, Rd.-Nr. 169 과 비교하시오).

헌법소원자가 다툼이 있는 주장의 보도 이전에 그가 발간한 신문에서 언론인의 주요요구에 관하여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설명부담에 대한 요건에 있어서 그 범위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물론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곳에서는 지방법원이 헌법소원

자에게 금지한 다툼이 있는 표현의 계속적 전파가 단지 장래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자가 새로이 지속적으로 전파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 그 주장을 구체화하여야만 한다는 지방법원의 견해는 헌법적으로 다툼이 없다. 허위의 입증무가 부과된 당사자에 대해 불가피하게 총체적인 주장과 결부된 입증의 어려움에 관한 지방법원의 견해는 고려되고 있다. 그리하여 기고자 전부의 이름을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 존재하는 의심 및 그들 중 어느 누구도 FAP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포괄적인 증명은 원고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헌법소원자가 운영하는 매체와 같이 흔히 조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일간지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38조 1항에 근거하여 상세히 사실의 구체화에 대한 요구는 실증의무에 대한 설득력있는 요구로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 주장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한 원고가 이제까지 이것에 대항하여 항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치저하적인 성격을 지닌 입증되지 않은 사실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별적 가해자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고, 다른 가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피모욕자의 자유이다(BVerfGE 85, 1, 22 = AfP 1992, 53).

불이익이 되는 주장이 처음에 신문에서 부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 개인은 신문보도를 선의로 받아 들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보도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장되었거나 철회된 경우에 비로소 금지의 판결을 내려도 된다(BVerfGE 85, 1, 22 f. =

AfP 1992, 53). 그러나 이견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론 언론기업가로서 헌법소원자는 개인은 갖고 있지 않은 조사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주장에 대한 정확성이 문제가 된 다음에는, 헌법소원자는 더 이상 선의였다고 할 수가 없다. 또한 헌법소원자는 비판없는 계속적 전파를 더 이상 정당화시킬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 일별하면, 새로이 계속되는 전파의 가능성을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종속시키고 더욱 자세히 구체화시키도록 하는 것에 구속시키는 것은 이것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언론에 합당한 주의에 대한 요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Wenzel, a. a. O., S. 13; Loeffler/Steffen, a. a. O., §6 LPG, Rd.-Nr. 163과 비교하시오). 헌법소원자는 여론을 형성하는 신문보도를 통하여 사회적 의사소통과정에 기여하게 되는데, 그 사회적 의사소통과정을 지나치게 좁게 하는 일은 따라서 발생하지 않는다. 주장을 정확히 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자의 조사가능성이 충분치 않고, 그가 문제가 발생한 신문보도를 새로이 전파하는 것을 계속하여 중지하여야만 할 경우, 공적 여론형성과정에 대한 헌법소원자의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자가 특히 타당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지방법원이 민사법원의 판례에 따라 과거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금지요구에 있어서 필요한 반복위험의 근거를 잘못 파악하여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미 위법한 침해가 발생했고, 반복위험의 존재에 대한 실제적 추정이 존재하여야만 하기 때문

에, 반복위험의 수용은 전문법원의 판례 및 문헌상 일치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의가 제기된 보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다(BGH, NJW 1986, 2503, 2505, und NJW 1987, 2225, 2227 = AfP 1985, 597; Wenzel, a. a. O., S.627 f.; Soehring, a. a. O., S.532 f.; Loeffler/Steffen, a. a. O., §6 LPG, Rd.-Nr. 264).

헌법소원자가 보도시점에서 조사를 신중히 하고 그 보도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법원은 물론 분명히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미 행해진 위법한 침해, 이것에 근거한 금지표시의 제시거부 및 헌법소원자가 자신이 행한 보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시에 반복위험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물론 헌법소원은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 하면 헌법소원자는 다시 한 번 발행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보유하고자 한다는 것을 계속하여 언급했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금지청구권을 정당화하는 첫 번째 행위위험이 있음을 수용하였다. 법률위반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손에 잡힐 듯이 존재하거나 명백히 위협이 될 경우에는, 첫 번째의 행위위험이 존재한다(Wenzel, a. a. O., S. 633f.; Loeffler/Steffen, a. a. O., §6 LPG, Rd.-Nr. 269). 이는 특히, 표현행위자가 새로운 전파를 유보한 경우의 사례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와 같은 유보를 헌법소원자는 시작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에서 명백히 주장하였다. □

출처 : AfP(Zeitschrift fuer Medien- und Kommunikationsrecht) 31. Jahrgang, Heft 3-2000, SS. 272-277

번역 : 손원선(법학박사·고려대학교 강사)

##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니더라도 기사내용이 정당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면 원고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Huggins v. Moore  
(미국 뉴욕 주 대법원 1999. 12. 20. 선고)

### 판시요지

여자 배우이자 가수인 Melba Moore의 전 남편이 배우자이던 그녀에게 경제적인 학대를 하였다는 그녀의 주장을 담은 신문 기사가 사실에 관한 것(factual)이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뉴욕주 지방법원 항소부 (New York Supreme Court, Appellate Division)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 이유는, 피고들이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보다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그녀에게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 (economic spousal abuse)'라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토론장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 기사의 내용이 정당한 공적 관심사

(legitimate public concern)에 대한 것이었고, 따라서 피고들이 그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데에 '극히 무책임(grossly irresponsible)'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사건 개요

원고인 Charles Huggins는, 유명 여배우이자 가수로서 Tony상의 수상 경력과 Grammy 상 후보자로 두 번 지명된 경력이 있는 Melba

Moore의 전 남편이다. 원고는 피고 Linda Stasi가 작성하고, 피고 Daily News사의 'Hot Copy'라는 컬럼에 실린 세 가지 기사를 문제 삼아 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기사들은, 원고가 Moore와의 이혼 과정에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에서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그녀의 주장을 다루었다. 그녀는, 원고와 공동으로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에 대한 그녀의 지분을 원고가 그녀를 속여서 빼앗고, 그 결과 그녀를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그 기사들의 내용이 정당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고 볼만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Chapadeau v. Utica Observer-Dispatch 사건(38 N.Y.2d 196, 199)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피고들이 기사의 작성 및 보도에 있어서 '극히 무책임(grossly irresponsible)'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우리의 결론은 긍정적이다.

Melba Moore는 1976년에 원고와 결혼하였다. 원고는 Hush Production이라는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녀의 직업적 및 개인적인 재정 담당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3년 6월 11일에 게재된 첫 번째 기사는, 그녀의 남편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다른 주에서 사기적으로 얻어 낸 일방적 이혼에 대하여 왜 Moore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Moore가 그 이혼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았을 때에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러한 기습적인 이혼이 그녀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Moore는 이어 뉴욕 주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 밖에서 이루어진 이혼(out-of-State divorce)은 무효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원고와 부당한 합의를 하고 말았는데, 그 합의 내용은 원고가 재정적인 문제를 교묘히 조작하는 방식으로 꾸며진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때까지도 원고는 합의금의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그나마 모두 각종 청구서의 결제와 변호사 비용으로 모두 소비되었다. 그녀는 원고와 공동으로 설립한 메니지먼트 회사의 지분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연예계에서 그녀를 배척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녀는 무일푼의 신세가 되었고, 그녀 자신과 딸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한다.

1993년 6월 28일 게재된 두 번째 기사에서는, 원고로부터 받은 학대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틀랜타 주에서 열린 연례적인 흑인 100인 모임에 연사로 초대받았고, 그 곳에서 청중들에게, “나는 내 자신이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라는, 흑인의 흑인에 대한 범죄의 희생자들인 수 많은 여성과 아동들 중의 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자신이 경제적 속박, 억압, 압제, 그리고 육체적, 심리적 및 말에 의한 학대에 대항하여 진지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는다.”

라고 말하였었다. 이 기사는, ‘구타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조직(Battered Women’s Advocacy Organization)’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의회에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계속하여 발언을 해나가겠다는 Moore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Moore가 가정 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일방적인 임시 보호 명령(ex parte Temporary Order of Protection)을 받은 다음 날인 1993년 7월 9일에, 세 번째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 기사는 “Moore가 육체적인 학대를 하는 장본인이라고 우리와 판사에게 말하였던 바로 그 Huggins를 상대로 하여, 또 하나의 보호 명령을 받아내었다.”는 내용이였다. Moore는 또한 원고가 계속하여 그녀로 하여금 말로 하는 학대와 경제적 학대를 겪게 하였고, 그녀의 직업상의 경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그녀와 원고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의 재산을 원고가 횡령함으로써 인해 자신이 빈곤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피고들이 약식 재판(summary judgement)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선서 진술서에서, Linda Stasi는 Tony상을 수상한 가수이자 연예인이라는 스타의 지위에서 가난이라는 벼랑의 가장자리까지 간 Moore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매우 관심있는 내용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기사들을 작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Stasi는 또한 그녀의 이야기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economic spousal abuse)’라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원고는 최초에 이 소송을 Daily News, Stasi 그리고 Moore에 대하여 제기하였는데, Moore가 파산을 신청한 이후 Moore에 대한 소송은 분리되었다. 1심 법원은, 문제된 부분들이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의견의 표현이었음을 이유로 Moore를 제외한 나

머지 피고들이 신청한 약식 재판(summary judgement) 신청을 인용하였다. 항소심은, 사실상 원고가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문제된 몇몇 부분들이 사실에 관한 것(factual)이고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그러한 기사 부분들과 관련하여, 항소심은 Stasi와 Daily News가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소송 가능한 사실문제의 쟁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가 허위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극심한 무책임성(gross irresponsibility)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은, 어떤 진술이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는 필연적으로 핵심에서 무엇이 논의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사자들의 이혼과 그에 부수한 사업상의 합의는 '본질적으로 사적인 일(essentially private affairs)'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항소심은 과실(negligence)보다 더 높은 기준의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대중의 관심사(public concern)의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으로, 항소심은 그 판결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히 어떠한 사건, 특히 이혼 사건이 유명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사건을 헌법적인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공공의 논쟁거리'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의 과거 판례들(Time, Inc. v. Firestone, 424 U.S. 448; Waldbaum v. Fairchild Pubs., 627 F.2d 1287; Krauss v. Globe Intl., 251 A.D.2d 191)을 인용하였다.

우리는, 원고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그 기사에서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는 허위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피고들이 극히 무책임(grossly irresponsible)하였는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기 때

문에, 항소심의 판단을 번복하고, 양측의 주장을 그러한 판단 기준 하에서 다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한다.

### 판결이유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public figure)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그 진술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허위임에 대한 인식이나 진실에 대한 무모한 주의 소홀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9-280;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62) 헌법적인 의미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한, 공적 인물에는 특정한 대중적인 논쟁거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스스로 뛰어들어온 사람들과 같은 '한정된 의미에서의(limited-purpose)' 공적 인물이 포함된다(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5).

피고가 신문사 또는 방송사이고 원고가 공무원이나 대중적인 인물이 아니며, 그 진술이 공적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헌법적인 악의(constitutional malice)를 입증하여야 한다.(Dun & Bradstreet v. Greenmoss Builders) 그러나, 현실적 손해(actual damages)에 관하여는, 각 주(州)가 과실(fault) 없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한, 각 주(州)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에 대한 신문사나 방송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Gertz v. Robert Welch, Inc.).

따라서 적어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 관한 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기관을 상대로 제소하는 개인들은 헌법적으로 볼 때 피고들이 과실(fault)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각 주(州)는 단순한 과실(simple negligence)보다 높은 수준의 귀책사유를 요구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위 Gertz사건의 판결에 따라, 우리는 Chapadeau v. Utica Observer-Dispatch 사건(38 N.Y.2d, 196)에서 기사의 내용이 일반에 대한 공개를 정당화하는 사안과 관련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만한 정당한 공적 관심사 영역 내인 경우, 원고는 신문사 또는 방송사의 '극심한 무책임성(gross irresponsibility)'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문제된 내용이 공적 관심사로 불만한 것을 포함하는 때에는, 원고는 언론 기관인 피고가 책임감 있는 언론사들이 보통 정보의 수집과 전파 시에 취하는 주의 기준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극히 무책임한 방식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보도 내용이 정당한 공적 관심사 영역 내에 포함될 만한 것인지 여부는, 기사의 전체적인 문맥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분리된 개개의 단어, 어구 또는 문장에 의하여 판단되어서는 아니된다(Gaeta v. New York News, 62 N.Y.2d 340, 349).

기사의 주제가 단순한 가십이나 외설적인 흥미에 속하는 것이면, 이는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Weiner v. Doubleday & Co., 74 N.Y.2d 586, 595; Palmisano v. Modernismo Publs., 98 A.D.2d 953, 954; Fitzpatrick v. Milky Way Prods., 537 F.Supp 165, 170). 제한된 관중을 대상으로 한, '순수하게 개인적인 관심사(matters of purely private concern)'도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 게다가 글이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주제가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데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반면 우리는 Chapadeau 사건의 판단 기준이 언론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ournalistic

judgements)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판시해 왔다. 명백한 재량 남용의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무엇이 진정한 공적 관심사인가에 관한 편집자의 결정에 대하여, 사후에 수정을 가하지는 아니할 것이다(Gaeta v. New York News). 이는 글의 어느 특정한 부분이 기사에서 공적 관심사인 주제에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보도된 기사가 정치, 사회, 또는 공동체의 어떤 다른 관심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공정하게 생각될 수 있는 한, '편집자의 재량 남용(abuse of editorial discretion)'이란 존재하지 않는다(Connick v. Myers, 461 U.S. 138, 146).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에, 비록 공적 인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있어 인간적 흥미를 묘사하는 것이더라도, 어떠한 정당한 공적 관심사인 주제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한, 그 사건은 공적 관심사일 수 있다. Weiner v. Doubleday & Co 사건(74 N.Y.2d 586)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Salt Lake 시의 어느 억만장자 살인 사건의 전말을 밝힌 책의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책에 의하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딸을 원고가 돌본 적이 있는데, 그녀는 '항상 그녀의 정신과 의사들과 잠을 잤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 개인들 사이의 이야기도, 그것이 크게 볼 때 통제되지 못한 가족의 병력(病歷)에 대한 묘사, 즉 '딸의 병이 진행되어 살인을 낳기 전에 이를 막지 못한 가족과 의사들의 실패에 대한 탐구'이기에, 공적 관심사이었다. 우리는 Weiner 사건에서, 그 딸과 원고와의 관계가 명백한 편집 재량의 남용에 해당할 만큼 그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극심한 무책임성(gross

irresponsibility)의 책임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마찬가지로, *Cottom v. Meredith Corp* 사건 (65 A.D.2d 165)에서 문제된 방송은, 한 고립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는 보다 큰 문제의 전조(前兆)가 되는 것이었다. 그 뉴스는, 집주인인 원고가 집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여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곧 쓰러질 듯한 농촌 집에서 제한된 재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한 나이든 부부의 사는 모습을 다루었다. 비록 그 방송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어떤 사적인 다툼을 담고 있었지만, 법원은 그 이야기가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둔 것이라는 편집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개인간의 법률 분쟁에 대한 보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당한 공적 관심사인 보다 큰 주제의 실례(實例)가 되는 것인 한, 그 보도에 *Chapadeau* 사건의 책임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문제삼는 기사의 어떤 부분들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일에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백한 남용이 없는 한 뉴스 편집자에게 맡긴다. (*Gaeta v. New York News*) *Gaeta* 사건은, 50,000명의 환자들을 공립 정신 병원에서 자택 간호로 전환하는 어느 주(州) 정부의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이 개인들의 경험에 관하여 *Daily News* 지에 실린 기사에 대한 것이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그 환자들 중 한 명이 신경쇠약을 경험하였는데,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이는 지저분한 이혼(messy divorce)과 자신의 아들이 어머니의 외도 때문에 자살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촉진되었다고 한다. 이 법원은 그 환자의 전처가 제기한 명예 훼손 소송에서 피고의 약식 재판(summary judgement) 신청을 받아

들인 바 있다. 그 사건에서 우리는, 어느 특정 개인 환자가 처음 감금된 이유, 그리고 그 환자의 연도별 병원 수용 기록은 적어도 정당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일이라고 볼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원고와의 '지저분한 이혼(messy divorce)'에 관한 내용은 그 기사의 주제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관심을 묘사함에 있어, 언론 기관은 '곤경을 인간적인 용어로 예시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 개인이 경험한 것들의 특징을 그리는 방식의 익숙한 언론적 기술'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기사 그 자체는 스타의 지위와 부에서 비극적으로 추락한 Moore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더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라는, 퍼지고 있는 현대적 증상의 피해자로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발언대가 Moore에게 주어졌다. 분명히,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라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Stasi가 규정한 것은, 적어도 정당한 공공의 관심사의 영역 내에 속한다고 볼만하고, 따라서 언론의 책임에 관한 *Chapadeau* 사건의 책임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Moore의 '개인적 무용담'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회적 관심사에 관련되어 있다는 Stasi의 편집상의 판단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다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Gaeta* 사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대상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편집상의 판단은 그 대상이 주목을 받는 일이라는 이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 (*Gaeta v. New York News*). 이 사건에서 그 증거는 실로 강력하다. 기록을 살펴보면, Moore의 추락, 그리고 원고가 배신을 하였다는 그녀의 주장은 인쇄 및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판단을 하면서, 항소심은 뉴욕주 대법원 판례들이 요구하는 편집상의 판단에 대한 존중을 용납하지 않았다. Moore와 원고 사이의 분쟁의 '핵심'이 이혼이었다는 사실은 결정적이지 않다. 그 기사는 동시에, 그녀의 재정적 동반자이자 배우자가 그녀를 희생시켜 경제적으로, 그리고 직업상의 경력 측면에서 파멸시켰다는 Moore의 주장을 묘사하였다. 인간적 흥미를 끄는 이 에피소드가 진정한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었다. 부분적으로 원고의 '지저분한 이혼(messy divorce)'을 다루었던 Gaeta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글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된 문장은 편집상의 재량 남용을 구성할 만큼 공적 관심사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는, Moore의 곤궁한 상태에 관한 기사 중 어떠한 허위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피고들이 '극히 무책임(grossly irresponsible)' 하

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원고가 약식재판을 신청하면서 과연 위 책임 기준 하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실 관계를 형성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항소심과 1심 재판부가 심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사건을 되돌려 보낸다.

그러므로, 상소의 대상이 된 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은 의견에 따라 더 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뉴욕주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한다. □

출처 : *Media Law Reporter* 28권 pp. 1601-1605.

번역 : 장상균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원심 판결인 뉴욕주 지방법원 항소부의 1999년 4월 8일 판결 (Huggins v. Moore, 27 Med.L.Rptr. 1691)의 번역 문은 「언론중재」 1999년 가을호, pp.121-132 참조.

## 일본 판결

### 사회적으로 정당한 관심사를 가지는 범죄사건이라면 피의자가 소년일지라도 실명보도 했다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항 소 인 주식회사 新潮社 외 2명

피항소인 甲野太郎

大阪高법 1999(未) 2327호,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2000. 2. 29 민사9부 판결, 취소 (상고)

1심 大阪지법 1998(7) 4322호, 1999. 6. 9 판결

#### 주 문

1. 원판결 중 항소인 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와 관련한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항소인의 부담한다.

답으로 한다.

## 사실 및 이유

본건은 1998년 1월 8일 이른 아침, 당시 19세의 소년이었던 피항소인이 大阪府 堺 시내에서 '신나' 흡입으로 환각 상태에서 자택의 식칼을 들고 나와 등교 중인 여고생을 찔러 중상을 입힌 후, 유치원의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모자 등을 습격,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5세의 소녀를 깔고 앉아 등을 찔러 살해했으며 이 소녀를 구출하려고 감싸안은 어머니의 등도 식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이른바 '堺 시내 노상살인사건'에 관해 항소인회사가 발행하는 월간지 『新潮45』에 피항소인의 실명, 얼굴사진등으로 피항소인 본인이라는 것이 특징되는 내용의 『르포르타지 '유치원생' 학살범인의 일상생활』라는 제목하의 본건기사가 게재되었기 때문에 피항소인이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명예권 등의 인격권 및 실명으로 보도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사의 집필자, 잡지의 편집장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청구한 사안이며 다툼이 없는 사실 등 및 쟁점은 원판결의 '사실 및 이유'의 '사안의 개요' 기재대로 이므로 이를 인용한다.

## 당재판소의 판단

1. 본건 기사에 있어서 피항소인의 이름, 나이, 직업, 주거, 용모, 그 밖의 것에 의하여 피항소인이 본건사건의 피의자라고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의 기술과 함께 피항소인의 중학교 졸업때의 얼굴사진 등이 게재되고 동시에 피항소인의 출생내력, 비행경력과 일상

생활에 관한 상황의 기술도 상당한 정도로 상세하게 되어있다는 사실, 이 기사가 게재된 본건잡지가 전국의 서점에서 판매되어 피항소인이 거주하는 大阪府 堺 시내를 위시하여 전국의 공중의 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위 제2에서 인용한 원판결의 '사실 및 이유'의 사안의 개요' 기재대로이다.

2. 피항소인은,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및 명예권은 모두 헌법 13조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적인 인격권으로 사람은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및 명예권 등의 인격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실명보도가 되지않는다는 인격적 이익'을 갖고 있으며 특히 소년의 경우 소년법 61조가 있으므로 위 인격적 이익은 '실명으로 보도되지 않을 권리'로까지 특별히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그러면 본건 기사를 게재한 본건잡지의 발행이 피항소인이 주장하는 법적이익 및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이하 검토한다.

1)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및 명예권은 그 권리 및 법익의 내용, 성질, 대상이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모두 일반적으로는 헌법 13조에 그 근거를 구할 수가 있어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 권리를 인격권으로 보느냐, 인격적 이익으로 보느냐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한편 헌법 21조1항은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표현의 자유에는 국민이 스스로 그 당사자로서 사상, 신조 등을 표현하는 자유와 그 수용자로서 신문, 텔레비전, 서적, 잡지 등을 통해 표현행위를 향수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 내재적인 제약을 포함한다고 하나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이므로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의 체계속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항상 다른 기본적인 권에 우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표현행위에 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및 명예권이 침해된 경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와의 조정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의 위에서의와 같은 지위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판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와의 조정에 있어서는 표현행위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또한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며 위법한 프라이버시권등의 침해는 되지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인지의 여부는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상황과 대상이 되고있는 사안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죄의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내용·성질에도 기인하지만 범죄행위와의 관련에 있어서 그 프라이버시는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반대로 정당한 관심사라고 하더라도 표현행위가 그 내용·방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다음은 실명보도를 당하지 않을 인격적 이익 및 실명보도를 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인격권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

는데 있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함부로 실명을 공개당하지 않을 인격적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 특히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않은 사생활상의 사정이나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실명보도 또는 그와 유사한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와는 별도로 함부로 실명을 공개당하지 않을 인격적 이익이 법적 보호에 값어치 할 이익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그 보도의 대상이 되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 사회생활상 특별히 보호되어야만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는 한 실명보도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서 인용된다고 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소년법 61조에는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된 소년 또는 소년시절에 범한 죄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하여는 이름, 나이, 직업, 주거,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사건의 본인이라는 것을 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 기타의 출판물에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 규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며 비행소년에 대하여 성격의 교정 및 환경의 조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소년법의 목적에 따라 장래성이 있는 소년의 명예·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장래의 갱생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기사 등의 게재를 금지하는 것이 재범을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라는 견지에서 공공의 복지와 사회정의를 지키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년법 61조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는 소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목적과 소년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여 특별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형사정

책적 배려에 근거를 두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61조가 신문지 기타의 출판물의 발행자에 대하여 실명보도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보도의 대상이 되는 당해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상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기는 하나 애당초 동조(同條)는 위에서와 같이 공익목적이나 형사정책적 배려에 근거를 둔 규정이므로 동조(同條)가 소년시절에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실명으로 보도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령 실명으로 보도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소년법이 그 위반자에 대하여 아무런 벌칙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조(同條)가 당연히 우선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소년법 61조의 위반자에 대하여 아무런 벌칙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있어서의 '언론출판 등의 자유'의 규정에 대한 고려 및 소년법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의 준수를 가능한 한 사회의 자주적인 규제에 위임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신문 기타의 출판물의 발행자는 소년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양심과 양식을 가지고 자기억제를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표현행위를 향수(享受)하는 수용자측에도 본조의 취지에 반하는 신문 기타 출판물과 그 발행자에 대해서는 엄한 비판이 요청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신문협회의 보도준칙으로서 "20세 미만의 비행소년의 이름, 사진 등은 지면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① 도주 중으로 방화, 살인 등의 흉폭한 누범(累犯)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② 지명수배 중인 범인수사에 협력하는 경우 등 소년보호 보다는 사회적 이

익의 보호가 강하게 우선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름, 사진의 게재를 인정하는 제외례(除外例)로 하도록 당국에 요망하고 동시에 이를 신문계의 관행으로 확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신문계가 이 준칙을 지켜 신문지상에 소년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는 보도를 하여 온 자주적 자세는 귀중하기는 하나 소년법 61조의 해석으로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으며 반대로 예외가 위에서와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와의 조정에 있어서는 소년법 61조의 존재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 표현행위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동시에 그 표현행위·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며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위법적인 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이상을 전제로 본건을 보면, 본건사안은 이른아침, 통학 도중의 여고생 및 유치원생과 유치원생의 어머니가 노상에서 살상된다고 하는 악질중대한 사건이며 피의자로서 체포된 피항소인이 '신나'를 흡입 중이었고 피해자 등과도 아무런 인연도 없는 자 였다는 것도 어울어져 피해자 및 범행현장의 가까운 이웃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인들도 어떠한 인물이 위와 같은 범죄를 범했으며 또 어떠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건기사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관심사였다고 인정된다.

4) 다음은 본건기사의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①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의 이름이 시민의 '알 권리'의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아직 범인으로 단정되지 않았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범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영향이 있고 본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범죄사실의 보도에 있어서는 익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는 범인이 성인이나 소년이나에 의해 차이가 있을 이유는 없다.

한편 사회일반의 의식으로서의 위 보도에 있어서의 피의자 등의 특징은 범죄뉴스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범죄사실과 함께 중요한 관심사라고 해석되므로 범죄사실의 양태, 정도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지위, 특질, 혹은 피해자측의 심정 등으로 보아 실명보도가 허용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일의적(一義的)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흉악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때와 같은 경우에는 실명보도도 정당한 것으로 시인된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이를 본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건범죄사실은 앞서서와 같이 극히 흉악중대한 사건이며 피항소인이 위 범죄사실과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과 피항소인과 아무런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하게 살상된 피해자측의 심정을 고려하면 실명보도를 한 것이 바로 피항소인에 대한 권리침해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피항소인은 실명 등으로 소년이 특정되는 것과 같은 보도를 하는 것은 소년의 장래의 갱생을 저해하는 것으로 언제나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분명히 사건관계자 이외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명 및 사진 등으로 소년이라고 특정되는 보도가 되면 언젠가는 지역에 돌아가 생활을 하게 될 소년에게 있어

서는 범죄보도에 의하여 '비행소년' 또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히게 되어 갱생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피항소인의 주장대로이다.

그러나 본건 범죄사실은 앞서서와 같이 극히 흉악중대하며 실명으로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항소인의 범행사실을 목격한 사람도 많고 게다가 신문,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에 연일 보도되어 소문으로 알려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되므로 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본건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피항소인의 실명이나 본건범죄사실을 소상하게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 지역주민 이외의 일반시민은 본건기사에 의해 피항소인의 실명을 알았다고 생각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항소인을 모르는 일반시민이 피항소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혹시 일부의 시민이 피항소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곧바로 피항소인의 갱생이 방해를 받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본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범한 피항소인이 사회에 복귀하였을 경우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진실로 피항소인의 갱생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 본건기사에 실명이 게재되어 그의 갱생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피항소인은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건기사에 피항소인의 실명이 게재된 것으로 인하여 피항소인이 사회에 복귀한 후의 갱생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추상적으로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갱생의 방해가 되는 추상적인 가능성까지도 배제하는 것이 소년법 61조의 입법취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항소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

거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않으면 안 된다.

④ 본건기사는 항소인 등의 주장에 의하면, 본건기사의 “표층을 도려내어, 피의자로 되어 있는 피항소인의 모습을 그 성장사, 환경, 가족과 주변과의 관계속에서 부각시키려 한다”는 목적으로 한 ‘조사보도’였다고 해석되고 있는 바, 항소인 高山文彦(이하 ‘항소인 高山’이라고 한다)의 취재방법의 적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피 항소인도 본건기사의 내용이 허위이고 그로 인해 피항소인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있지 않으므로 본건기사의 내용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

또 본건기사에는 피항소인의 친족에 관한 기재도 있으나 그들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피항소인에 관해서만은 그 성장이력, 환경, 가족과 주변과의 관계를 스스로 발로 뛰어 취재한 자료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이며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시 될만한 곳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항소인등은 항소인 高山이 본건사건에 대하여 실명보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년’의 존엄을 인정, 익명성속에 묻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소년’에게 자신이 한 행위를 명확하게 인식시켜 알아차리게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분명히, 본건사건의 중대성 뿐만 아니라 피항소인의 성장이력 등에 접한 항소인 高山이 익명성속에 묻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쓸 것을 결심하게 된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나 본건기사에 있어서 실명에 의하여 피항소인을 특정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내용의 가치에 변화가 생긴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항소인 등이 본건기사

의 뒷부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건기사의 본질이 숨겨지고 말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본건기사에 의하여 피항소인에게 자신이 한 행위를 인식시켜 알아차리게 하는 일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항소인 등에게 그러한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도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인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⑤ 그러면 다시 본건기사가 피항소인이 주장하는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함부로 사생활을 침입당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않은 사생활상의 사실, 정보를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인데 앞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의 조정에 있어서는, 표현행위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또한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며 위법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는 앞서와 같이, 본건기사는 표현행위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그 표현내용·방법도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항소인에 대한 권리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항소인이 주장하는 성명초상권은 이른바 초상권과 같은 뜻으로 생각되는데, 초상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용모나 자태를 촬영당한다든지 촬영된 초상사진을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침해와의 조정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이 표현행위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동시에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위법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앞서와 같이 본건기사는 표현행위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기는 하나 본건 범죄사실의 피의자가 19세라고는 하지만 소년이고, 본건기사에 있어서 얼굴사진에 의하여 피항소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내용의 가치에 변화가 생긴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며 더구나 사용된 사진이 피항소인의 중학교 졸업때의 앨범사진이었고 본건범행때 보다 꽤 오래전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본건기사에 당해 사진을 게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자 등의 특징은 범죄뉴스의 기본적 요소이며 범죄사실과 함께 중요한 관심사라고 해석되는 점과 본건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본다면 당해사진을 게재한 사실을 가지고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피항소인에 대한 권리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않으면 안 된다.

또한 명예권은 사람이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 즉 사회적 명예인데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가 있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위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가 있는 보도는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표현행위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또한 그 표현행위가 진실이면 그 표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위법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앞서와 같이 본건기사는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본건기사의 내용은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표현행위에 위법성은 없다.

5) 소년법 61조에 명백하게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상당성도 없이 항소인 회사가 본건 기사를 동사 발행의 「新潮45」에 게재한 데 대하여, 법무부가 인권침해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하여 발행원인 항소인 회사에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죄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소년법 61조를 위반한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즉각 그 보도의 대상이 된 당해소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와의 조정에 있어서 표현행위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또한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며 위법한 프라이버시권 등에 대한 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본건기사는 피항소인이 주장하는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피항소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항소인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67조2항, 6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判例時報』, 2000년 7월 11일자

번역 : 한 동 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프랑스판결

# 사생활권은 당사자에게 고유한 권리이므로 상속되지 아니하나 의료상의 비밀과 관련된 사자의 사생활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룬 서적의 간행은 금지된다

O. Orban et Société des Editions Plon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 1999년 12월 14일

### 사실관계

프랑수와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1981년-1995년간 재직)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Le Grand Secret' (엄청난 비밀 혹은 큰 비밀)이라는 책이 플롱사(Plon)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을 출간할 당시 프롱사의 발행인 겸 사장은 올리비에 오르뱅(Olivier Orban) 씨였다. 한편 클로드 귀블러(Claude Gubler) 씨는 미테랑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의료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책의 공동 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은 사생활 침해와 의료상 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엄청난 비밀'이라는 책자의 출간 및 배포금지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파리고등법원의 판결 요지

첫째, 모든 사람은 그 신분·출신성분·재산·직위가 여하하든 간에 사생활존중권을 갖는다. 사생활을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생존

자에게만 인정된다. 따라서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추억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이 책이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의 사생활을 일부 침해한 것은 인정된다. 즉 제1심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는 미테랑 전 대통령 유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테랑 전 대통령이 그의 부인에게 자신의 병에 관해서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한 것과, 미테랑 전 대통령이 숨겨 놓은 딸(혼외자)인 피노(Pigneot) 양에게 주치의인 귀블러 씨를 가끔 보냈다는 점, 미테랑 전 대통령의 부인이 있는 데서 그의 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점, 미테랑 전 대통령과 그의 딸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점, 1981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압에 걸린 사실을 부인과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민법 제9조에 의거한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비록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엄청난 비밀'에서 적시한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 관련된 내용은 책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가지고는 이 책의 출간 자체를 금지시킬 정도는 아니다.

셋째, 1996년 7월 5일의 제1심판결에 의하면, 의료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귀블러 씨는 직업상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직업상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일정한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일반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수한 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은 자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가 자신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그 내용에 관한 신뢰에 관한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므로 직업상의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특히 의사는 환자의 병을 진찰하고 이에 따른 처치를 행하게 되는 바, 이 경우 환자는 의사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르게 되는 바, 바로 이러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은 노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에서, 의료상의 비밀은 “의사가 직업으로서의 의사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지득한 모든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뿐만 아니라 의사가 보고 듣고 이해한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귀블러 씨는 미테랑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환자에 관해서 알게 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생활 및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주장하는 바, 문제의 책은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후에 출간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이 책의 출판 계약은 미테랑 전 대통령의 생존시점인

1996년 11월 8일에 체결된 점이 인정된다.

넷째, 표현의 자유의 행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europeenne des droit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제10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 그것은 헌법적 가치를 갖는 원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동반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의 행사는 법률상 규정된 일정한 양태·조건·제한과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필요한 요건은 민주사회에서 상호간의 신뢰에 기초한 정보를 폭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특히 건강·명예·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간행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책의 판매금지를 통하여 민·형사상의 책임문제는 궁극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켜 이미 40,000권 이상이 판매되었음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

## 주 문

Olivier Urban씨는 책임이 없다.

Mitterrand의 유가족들이 Mitterrand의 사생활 침해에 따른 배상청구는 이유없다.

Claude Gubler씨와 Les Editions Plon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는 미테랑 대통령의 부인인 Danielle Mitterrand에 대하여 100,000프랑을 지불할 것을 명한다. 그 외에 3명의 Mitterrand 유가족에게는 각기 80,000프랑의 지불을 명한다.

1996년 1월 8일 파리지방법원장이 명한 이 책의 배포금지명령은 1996년 3월 13일 판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바와 같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Claude Gubler 씨와 Les Editions Plon 사가 부담한다.

### 파기원(대법원)의 판결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파리고등법원은 폴롱사와 귀블러 씨에 대하여 의료상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고 동시에 문제된 '엄청난 비밀'이라는 책의 판매 금지를 명하였다. 그런데 파리고등법원은 귀블러 씨가 침해한 의료상 비밀이 의료상 비밀의 폭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생활을 침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이 향유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판매금지청구권이 미테랑의 사후에도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분명히 실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서 이 판결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 제10조를 적시하고 있는 바, 그것은 정치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순전히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련된 이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특히 의료상 비밀의 누설이 상속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미테랑 전 대통령의 주치의인 귀블러 씨가 의료상 지극한 비밀을 누설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된 책의 판매금지를 통하여서만이 이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원심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

이 사건에서 파리고등법원이 사생활 침해는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에 고유한 사생활 침해에 관한 권리는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

에 사자의 상속인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상속인에 고유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경우 및 상속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은 정당하다.

폴롱사의 발행인인 오르뱅 씨의 행위는 폴롱사의 발행인으로서 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파리고등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르뱅 씨는 귀블러 씨와 공모하여 이 책을 출간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으며,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이 오르뱅 씨를 상대로 제소한 이상, 오르뱅 씨가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파리고등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점이 인정된다.

### 주 문

파리고등법원의 판결을 일부 파기한다.

### 평 석

이 판결은 파리고등법원의 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이다. 이 사건은 미테랑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제기한 바 있는 일련의 쟁송사건의 최종심 판결의 한 예이다. 그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그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책의 출판이나 또는 그의 사망 직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의 보도 등과 관련하여 그의 유가족에 의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법원과 마찬가지로 고인(사자)의 사생활 침해와 상속인의 사생활 침해를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생활보호를 위한 쟁송권(원고격적)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게 되지만, 실제로 사생활보호를 위한 쟁송은 상속인들이 그들의

고유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제기한 사자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쟁송 그 자체는 일단 수리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권은 생존자의 고유한 권리인지 아니면 사자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연히 상속될 수 있는 권리인지에 관해서 이론적 대립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생존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상속인이 향유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것은 사생활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인격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흔히 사자의 가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상속인이 사자의 사생활권에 기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한 사생활권의 침해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판결에서 일단 상속인의 제소를 적법한 것으로 수리한 다음, 본안 판단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안에서 파리고등법원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이 책에서 미테랑 전 대통령의 상속인의 중요한 사생활 침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당연히 사생활 침해에 기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다른 한편 의료상 비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상 비밀 존중권은 사자가 생존시에 발생한 권리이므로, 문제의 책을 발행하기 전이라도 사자의 생존시에 책의 발간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헤아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생활의 비밀과 의료상의 비밀을 구별한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약 이 책과 같이 미테랑 전 대통령이 생존시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망 후에 준비된 책이라면 의료상의 비밀존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의료상 비밀에 관한 한 준비 여부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행위당시에 의사가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료상 행위에 관한 내용을 출간하는 한 그 준비는 객관적으로 의료행위 당시로 소급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준비행위 여부에 관한 한 의사의 주관적인 의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책을 출간한 출판사의 발행인에 대하여 출판사와 더불어 법적 책임을 추궁한 대법원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발행인의 업무와 출판사 그 자체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발행인과 출판사에 대하여 동시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 □

출 처 : LEGIPRESSE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통권 169호, 2000년 3월호(제2호), pp. 27-28.

번역·평석 : 성 낙 인(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국사례 1

사진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신청인 가족의 장례식 사진을 게재한 것은 보도실천강령 위반

영국 맨체스터의 소송대리인 Carol Smillie 씨는 선데이메일지 2000년 1월 16일자 기사가 보도 실천강령 제5조 슬픔과 충격에 의 침해 조항을 침해했다며 불만을 신청하였다.

선데이메일지는 Smillie 여사의 모친 장례식에 대한 기사를 1면과 내지 2면에 걸쳐 보도하였으며 이 가운데 화장터 외곽에서 촬영한 사진도 게재되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진이 외부에 알려진 Smillie 여사의 슬픔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촬영자들은 장례식장인 교회에서 떠나 줄 것을 요청했고,

화장터에서 사진기자들을 목격한 조문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진은 분명히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장례식에 관한 보도는 허용되는 것이며 특히 저명인사나 그 가족의 장례식에 대한 보도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사 소속 촬영기자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촬영장소를 떠났었고 어떠한 촬영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유기고가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아 보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진기자가 현장에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

한 신청인에 대한 침해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신청인은 장례에 대한 비교적 짧은 기사만을 보도하였으며 그 후 비탄에 빠져 있는 유족들에 대한 고통을 유발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평 결

PCC는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하여 불만신청 사항을 살펴보았다.

먼저 소속 기자가 떠날 것을 요청 받았다는 사실과 가족들이 사진 기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편집자의 인지 여부이다. 이는 사진기자의 존재는 유족들에게 불쾌할 뿐 아니라 그 현장에 대한 촬영과 공표를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위원회는 장례식이 신문에 널리 알려졌으며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 가운데 유명 인

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러한 사실은 공적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과 관련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조문객 중 유명인사는 없었으며 유명인이나 신청인의 친척들은 장례와 관련한 내용의 공표를 원치 않았고 사적인 행사로 유지되기 원했다. 따라서 이 신문 기사는 “사적인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었다.

셋째, PCC는 기사의 공표는 편집인의 자유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려했다. 일반적인 상

황과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에 PCC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시기에 관한 것이며 보도 실천강령에 따르면 이러한 기사 내용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한 기사의 공표는 보도실천강령 위반의 결과를 낳았다. 또한 PCC는 이후 후속 보도의 논평에 관해 신청인의 침해에 대한 충분한 회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

대한 소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딸과 윌리엄 왕자가 연인이라고 보도하지 않았으며 단지 이미 보도된 사실과 루머를 보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청인의 딸이 윌리엄 왕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기회를 두 번이나 가졌지만 오히려 논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 평 결

PCC는 신청인의 딸과 윌리엄 왕자가 서로 만나 교제를 가져왔다는 루머가 사실로서 각인된 것이 신청인의 주된 불만내용임을 주시했다. 또한 신문사측이 신청인의 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장을 항변할 기회를 제안했으며 공중에게 널리 유포된 소문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실천강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보도에 있어 신중할 것을 편집자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PCC는 밝혔다. 또한 기사의 공표전 보다 사실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기해야 했으며 두 사람이 교제를 가져온 은밀한 관계였다는 신청인 딸의 친구와 왕궁 관계자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 영국사례 2

###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사화하여 그릇된 인상을 남기게 한 것은 잘못

원체스터의 신청인은 선데이 익스프레스(Sunday Express)지 2000년 2월 20일자 『이사벨라, 윌리엄 왕자와 결혼 가능성』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제1조 정확성의 위반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의 딸이 윌리엄 왕자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하였다. 왕궁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신청인의 딸이 왕자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신청인 딸의 친구들 또한 이

커플이 지난 해부터 교제를 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의 주 대상은 문제 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딸과 윌리엄 왕자의 로맨틱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한 영향이 주된 것이다. 신청인은 이 두 사람이 결코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Tatler지가 신청인의 딸이 “장래의 윌리엄 왕자 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내용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잡지는 물론 에딘버그대학 내에서도 이 커플에

지적했다.

PCC는 루머나 가십을 보도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를 분명히 하고 특히 젊은이들과 관련된 루머를 보도

함에 있어서는 보도 전,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실의 진위여부 확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영국사례 3

## 범죄피해자의 상해 상태 등 불필요한 내용까지 보도하여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신청인은 자신의 오빠의 죽음을 다룬 영국의 데일리스타(Daily Star)지 2000년 4월 4일자 기사와 4월 5일자 후속보도가 보도실천강령 제5조(슬픔과 충격에 대한 침해)와 제1조(정확성)을 위반한 무신경하고 부정확한 기사라고 불만신청을 하였다. 신청인의 불만 신청은 수용되었다.

문제기사는 신청인 오빠가 그의 교도소 수감동료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범죄희생자의 신체절단 및 상해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살인사건을 유명한 공포영화에 비유한 보도태도는 이 범죄를 경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살인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묘사는 극도로 충격받은 유족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오빠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의를 표하고 신청인 어머니에게 조화를 보내며 기사공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할 용의가 있음을 제의했으나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 평 결

이 사건의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실천강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픔과 충격에 빠진 보도대상자에 대한 경솔하고 무신경한 보도의 금지 사항을 고려했다. PCC는 신청인

오빠의 사망 다음날은 신청인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보도실천강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픔과 비탄에 빠진 시기임이 분명하며, 문제기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PCC는 기사 내용이 범죄사건을 불필요하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내용은 보도실천강령 제5조 위반에 해당, 신청인의 불만을 수용한다고 평결했다.

보도의 정확성과 관련한 신청인의 불만신청 사항을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피살자, 즉 신청인의 오빠가 아동학대자이며 아동학대(child abuse)로 인해 수감된 죄수라고 단언하는 보도를 했으나 사실 그는 아동경시(child neglect)죄를 범했을 뿐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오빠가 6개월 동안 수감된 것 자체가 그가 범한 범죄의 심각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PCC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오빠가 범한 범죄를 '경시(neglect)'가 아닌 '학대(abuse)'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제의 보도내용은 보도실천강령을 위반하는 부정확한 것이었다고 평결했다. □

## 호주사례 1

## 언론은 사회감시기능의 수행에 있어 보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반론을 보장해야

호주신문평의회는 반(反)부정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 : 이하 ACC)가 웨스트오스트레일리언(West Australian)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불만은 ACC의 활동과 관련한 신문기사와 사실, 그리고 ACC의 활동을 반대하는 주장과 이와 연관된 사람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ACC의 활동과 주장과 관련한 일련의 기사와 사실을 게재한 피신청인은 ACC에 대하여 극히 비판적이었다.

이 신문은 1면 표지면에 연방경찰의 두 명의 여자 요원과 ACC 출신 인사가 한때 조직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기관의 수사대상인 자동차경주장의 유명인사(speedway identity)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보도 전에 신청인 즉 어떠한 반론도 구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피신청인은 조직범죄가 ACC에 침투했고 ACC의 고위인사가 마약유통과 관련된 범죄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경찰노조 변호사인 존 키글레이 씨가 주장을 2면 머릿기사로 보도하였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ACC가 부인했다는 내용도 함께 실었다. 또한 그 사람이 범죄용의자와 유람선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신청인의 자체 조사결과도 게재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인 단체에서 1997년에 잠시 근무했던 선임변호사가 위원회의 고위인사라고 신원을 밝힌 두 기사의 잘못으로 인해 ACC의 다섯 명의 임원과 단체 전체에 누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문제의 보도가 신청인 단체를 반대하는 신문캠페인의 일부이고 신문시설의 지지를 통해 왕실위원회를 소환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명예훼손을 우려했고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요구가 투명성의 부족에 의해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신문사의

주요한 관심사는 ACC의 기능이지 그 변호사의 근거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범죄혐의자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고발이 있던 때는 그 변호사가 ACC를 대신해 조사를 하던 1997년이였다. 그 때까지 그는 위원회와 연관되지 않았다. 변호사와 범죄자들간의 친밀한 개인적 관계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1998년에 국회위원회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그는 무혐의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그 때 피신청인이 이것을 보도했다.

ACC가 주장하는 바로는 1997-1998년 고발사건과 퀴글레이씨의 신문인터뷰에서 드러난 사실, 위원회 고위인사가 마약유통이 연루된 범죄조직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본 사실은 본질적으로 모두 같다는 것이다.

신문사는 똑같은 변호사가 연루된 새로운 혐의가 있다고 믿었다. 기사화된 사실과 주장은 특히 두 혐의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하더라도 그 해결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신문사에서 알고 있는 두 번째 혐의가 새로운 것으로 판명됨과 무관하게 변호사에 대한 첫 번째 혐의는 기각됐다. 신문평의회는 이러한 사실이 첫 번째 면에 보도가 됐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 혐의에 대한 논평을 신청인 단체에게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논점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부수적인 불만신청 또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신청인 단체가 피신청인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것인데, 보도내용에 명백하게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문보도가 부정확하다는 편지의 주장은 보도되지 않고 신청인 단체의 행위가 뉴스기사의 일부분 보도된 것 이상으로 그 편지내용에 통계자료를 담고 있었다. 신문사는 부정확하다는 주장을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불만은 경찰의 집과 경찰서에서 작성된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의 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문사는 경찰이 신청인 단체가 정보의 누출을 통해 그 권한(Act)을 넘어서는 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 단체는 그 누출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신문사의 편집장은 신청인 단체가 무엇을 말했든 아니든 그 내용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신문평의회는 신청인 단체의 권능부여조례(enabling Act) 사항이 유효하든 아니든, 신문사에서 이를 기사화했어야 한다고 믿었다.

불만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신문사는 명예훼손법과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기밀유지에 대한 경향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공익적 사안에 대한 논쟁이 초래할 혼란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신문평의회는 이러한 피신청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그러한 혼란을 피하고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주의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참가한 사업가들에 대해 신랄한 논조로 보도했다. 또한 부동산 회사의 대표가 엑소더스 재단(Exodus Foundation)으로 잘 알려진 한 자선단체의 대표에게 수표를 건네주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엑소더스의 자선공연”이라는 표제로 함께 게재했다.

신청인은 그 기사가 여러 면에서 사실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판단을 호도하고 균형각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의 기사는 경매인으로부터 나온 보도자료에 명백하게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 추론은 그 행사가 있던 날과 그 기사가 나간 날 사이의 16일 동안의 시간의 공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청인은 그 행사에는 단지 250여 명 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반면 신문기사에는 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된다. 또한 신문기사에는 경매가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신청인은 엄청난 광고가 나가고 나서야 주식이 겨우 반이 팔렸다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신청인은 신문사에 자신의 불만사항을 담은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인의 항변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으며, 신문사는 신청인과 연락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신문사 편집장은 세

## 호주시례 2

### 사실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를 지적한 독자편지 또한 무시한 것은 잘못

호주신문평의회는 이너웨스턴 서브브큐리어(Inner Western Suburbs Courier)지가 1999년 12월 27일자 보도한 기사에 대

해 존 콜린스씨가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신청인은 애쉬필드 공원에서 열린 부동산 경매와 그곳에

번의 편지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신문평의회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신문평의회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일치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보도 기사내용의 결점은 명확하다. 애쉬필드 의회가 공원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해도 괜찮다는 결정을 한 것은 지방에 관한 문제이다. 그 날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공원에서 '우리의 공원'이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세 명의 경찰간부가 의회 무

장 순찰대원들을 따라 주의회나 적어도 시의회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신청인에 따르면 두 상호 이익집단간의 반감은 극명히 드러났다.

부동산 회사가 그 논쟁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경매는 공원의 단지 2%만 차지할 거고, 주말 활동과 조화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회사의 원칙이 신문에 인용되면서 논쟁을 더 유발했다. 시위에 대한 더 이상 언급은 없었다.

이런 불균형한 보도와 신청인이 불만을 담은 편지내용을 게재하지 않았던 신문사의 실수로 이 불만신청은 받아들여졌다.

### 호주사례 3

#### 경쟁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기 위해 공정성을 상실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여 불만신청 수용

호주신문평의회는 모디알록 첼시뉴스(Morkialloc Chelsea News)지의 편집장이 경쟁사인 첼시 델버른 변두리 지역 신문사인 첼시 인디펜던트(Chlsea Independent)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수용하였다.

자본시장에서 신문사들의 경쟁이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상호

비판시 호의를 베풀지 않고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인 특히 균형과 공정성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첼시뉴스의 편집장은 첼시 뉴스가 지난 주에 첼시에 있는 주 응급국(State Emergency Service)이 등록되지 않는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지에 보도한 사실을 비판한

인디펜던트지의 2000년 3월 20일자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인디펜던트지는 첼시 주 응급국(SES)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직원으로부터 첼시뉴스지가 보도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비판을 전하면서 첼시뉴스지의 새로운 편집장이 되기로 한 사람이 주응급국(SES) 간부에게 원래 사실이 아니라고 시인했다는 보도를 했다. 게다가 인디펜던트지는 첼시 주응급국(SES)이 첼시뉴스지에 정정을 요구할 때 만족스런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지는 보도가 되기 전에 첼시뉴스지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첼시뉴스지의 편집장은 불만이 있었지만 요구자료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변론에서 인디펜던트지는 불만이 담긴 그 기사는 전적으로 그 기사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악의를 가진 거라고 느꼈던 첼시 주응급국(SES)이 부추겼다고 했다. 그렇지도 모르지만 그 주장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책임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장을 신문에 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문평의회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의회는 지적했다. 신문평의회는 인디펜던트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정당한 언론의 기능을 스스로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

# 위원회소식

## 9월 1일, 임시총회 열려

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신임 중재위원 4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임기만료로 결원된 감사,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 등을 선출했다.

### ◆ 감사

이건용, 이영조 위원

### ◆ 운영위원

황성재, 강금실, 허광욱, 이기수 위원

### ◆ 시정권고위원

송선무, 양삼승, 이상훈 위원



## 신임 중재위원 명단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법원인사이동과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중재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중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제주중재부

김창보 제주지법 부장판사

8월 26일자

### 서울제1중재부

길기봉 서울지법 부장판사  
김용학 변호사

### 서울제2중재부

황성재 서울지법 부장판사

송선무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박동섭 변호사  
이종욱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서울제3중재부

윤재운 서울지법 부장판사  
양삼승 변호사  
최상현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 서울제4중재부

이상훈 서울지법 부장판사  
신동식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용배 전 한국일보 이사  
이건용 변호사

### 서울제5중재부

주동홍 광운대 신방과 교수

### 부산중재부

류수열 부산지법 부장판사  
오장희 변호사  
이성해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이의자 경성대 신방과교수

### 대구중재부

김수학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정한영 변호사

### 광주중재부

정갑주 광주지법 부장판사  
허광욱 전 전남일보 논설주간  
곽준흠 변호사

### 대전중재부

윤병구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주봉 변호사  
차재영 충남대 신방과 교수

### 경기중재부

김영갑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건영 전 경일일보 대표이사

최 중 현 변호사

강원중재부

조 해 섭 춘천지법 부장판사  
한 영 달 전 강원도민일보 전무  
김 종 식 변호사  
부 경 히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충북중재부

허 근 녁 청주지법 부장판사  
우 종 인 전 청주 MBC 보도국장  
김 재 중 변호사

전북중재부

송 기 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 장 협 변호사  
권 혁 남 전북대 신방과 교수

경남중재부

박 기 동 창원지법 부장판사  
장 권 현 변호사  
임 경 숙 YWCA전국동부지역위원장  
박 춘 서 경남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이 병 섭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제주중재부

강 정 홍 전 제주일보 편집국장  
현 순 도 변호사

이상 9월 1일자

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오보발생의 중심주체는 기자라며, 바르고 책임감 있는 기자 배출과 양성을 위해 기자총원과정의 개선과 교육과 훈련의 체계화, 기사실명제의 확대, 심의기능의 제도화, 대기자제도의 확대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위원회의 200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내부 회계감사가 7월 21일 진행됐다. 이한수, 공병진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무처가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중 정액경비 이외의 비교적 고액지출 부분인 사임비, 운영경비, 기타 자산관리현황 등을 특히 유의하여 검토했으며, 검토결과 실행예산은 모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출됐고, 예산범위 내에서 간축적으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토론회 성공적으로 마쳐

언론중재제도의 홍보와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26일 부산 코모도호텔 대회의실에서 가진 부산지방토론회가 각계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보의 발생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한 서정우 부위원장(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겸 영남대학원장)은 오보의 발생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오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보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국가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오보발생의 배경은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2000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사규칙과 보수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 지역언론사 대표들과 간담회 가저


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과 9월 29일 수원과 대구에서 각 지역 언론사 대표를 초청해 적극적인 언론피해구제구제를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On-Line 중재 상담실

## 무용학원을 퇴폐교습소로 보도

저는 무용학과 전공 후 스포츠 댄스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 한 신문기자가 방문, 스포츠 댄스는 무용학원 허가로 강습할 수 없다는 법을 모르냐며 수치심을 주고, 신문에 잘못된 학원허가 관련 기사가 아니라 무허가 퇴폐댄스 교습소를 운영하며 고객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기사를 실어 너무 억울해 문의 드립니다. 보도 후 교육청으로부터 학원운영 정지 15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용학원으로 허가 후 스포츠 댄스도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제 불찰로 인한 이러한 행정처분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퇴폐댄스 교습소, 고객 부당이익은 너무 억울하고, 신문에 학원명, 주소, 저의 이름이 모두 실명으로 보도되어, 20년 무용을 공부한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오명을 벗을 수는 없는지요?

### 송재선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바른 사실내에 중재신청을 하시어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재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담당자(02-732-60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실명을 보도한 경우

8월 4일자 모 일간지 사회면에 구속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한 기사를 비판합니다. 저의 짝

은 지식으로는 기사에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범법자의 실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실명을 기재한 것은 가족과 당사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명이인의 가족들의 입장 또한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물론 그들에게도 적지않은 피해가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자는 별 생각 없이 기사를 작성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 되고있습니다. 부디 이 일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meiren96@hanmail.net

 말씀하신 기사에 대해서 만일 보도된 혐의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보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재판결과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관련 안내'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라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혹은 추후보도 청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분업에 대한 편파보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 방송국 뉴스에 의약분업과 관련 의료계의 비협조 속에 환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약사들을 애먹이는 희귀약 처방도 눈에 띄고 있다며 한 약사가 AAP정이라는 약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AP정은 아주 흔한 약이고, 심지어 약품명으로도 나올 정도인데, 기사내용을 보면 사람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의사가 이상한 약을 처방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AAP가 몇 가지나 되는지는 세어보지 못했지만 족히 백가지는 넘을 정도입니다. 약사들이 AAP가 뭔지 모르리라 생각하는 의사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되고, 그 의사가 만약 한영에이에이피정을 처방하지 않았다면 저와 같은 생각으로 그냥 AAP정이라고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약분업을 하지만 역시 AAP라고 적습니다. 역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기사의 분위기는 전적으로 파업한 의사들과,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심술 때문에 환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억지로 기사내용을 끼워 맞추다 보니 이런 AAP의 내용이 나왔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그 처방전을 발행하신 분께서 문의하시는 게 옳겠지만, 저도 한 사람의 의사로서 이런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R** 귀하의 메일을 잘 보았습니다. 귀하는 방송의 내용이 편파적이어서 의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보도내용에 대해 의사들의 입장이나 주장을 보도하라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신청은 의사 개인보다는 의사단체나 협회 등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사회와 상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 합니다.

저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우수사이버몰이라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인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지난 7월 18일 모 방송 9시 뉴스와 대표적인 중앙일간지인 두 신문 7월 19일자에 난 인터넷쇼핑 의류제품의 47%가 불량이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를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본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중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 기사들은 한결같이 본원의 우수사이버몰 인증(현, eTrust 인증)은 제품품질에 대해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 인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인증자체가 품질에 대해서도 보장했는데 실제로는 불량이 많았다는 식의 기사를 전체 내용중에 일부 포함하여 본원의 인증마크제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업체의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우수사이버몰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 시험결과는 우수사이버몰 인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bspark@kiec.or.kr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문제가 된 보도원문을 확보하시고 중재신청이유서, 게재를 원하는 보도문과 함께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정보도 크기와 시간의 기준은?

해당 언론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정보도를 하는 크기(신문,잡지)나 시간(방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도된 기사만큼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가요?

반론보도의 경우, 그 보도만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정보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사실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한번 입은 피해는 회복하기가 힘든데, 만약 같은 크기로 보도될 경우,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yeh16@chollian.net



정정보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원문 기사나 보도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정보도만으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게재할 의사가 있다면 협의를 해 보시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중재위원회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732-6031입니다.



### 원조교제로 구속됐다고 허위보도

저는 iTV경인방송에서 <경찰24시>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입니다. 그런데 지난 6/16일자 00뉴스 속보에 제가 원조교제를 하다 구속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 잡혀오며 나를 사칭한 모양인데 담당기자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없이 속보에 올렸고, 한술 더떠 제 인터넷기사까지 허위게재했습니다.

이에 담당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 그렇게 조치되었는줄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제 주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제가 방송교실 선생님이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정보문화센터에서 학생들과 학부형들께 해명을 해야 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특성상, 이런 경우 학부형들의 의구심을 100% 털어내지 못합니다) 2)내 프로그램의 취재활동 도중, 출연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해줘야 하고, 3) 모 방송 프로그램 담당작가로부터 원조교제에 관한 프로그램 섭외가 오는 등...

그러나 정작 더욱 두려운 것은 나에 대해 속으로 분노하고 있을 불특정다수와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수치심 아닌 수치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덮어두려 했던 문제가 자꾸 불거져, 자세한 정황을 되짚어 보니 00뉴스의 속보를 받아 스포츠지 등 일간지와 몇몇 주간지에 내 기사가 허위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원조교제'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면 저와 관련한 기사가 검색됩니다. 언제까지 제 신상명세가 불쾌한 검색어로 검색당할 지 두렵습니다.

기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담당 기자, 언론사 등에 한 시민의 분노를 전하고 싶는데 어찌해야 할지... 또 언론중재 이후에 추가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셨는데, 허위 사실을 보도한 방송과 통신, 신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이며, 피해구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거나 방송에 보도되어야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터넷 상에 올려진 것만으로는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신문에 게재되지 않았으나 언론사 인터넷상에만 올려진 기사는 중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롯데호텔 파업관련 보도에 대한 항의

저는 경찰가족입니다. 이번 롯데호텔 파업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 관련하여 모 방송사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경들의 음주진압설은 말 그대로 노조측의 주장인 진압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이 이러한 가정을 마치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함으로써 전국 15만 경찰과 경찰가족에게 큰 분노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상황논리로 볼 때도 노조측의 주장에 무리가 있음에도 경찰측의 말은 일축하고 노조측의 논리만 그대로 사실처럼 방영하여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는 해당 방송사의 모 기사가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데 대해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복성 보도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들이 양주를 모두 마셨다는 보도는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한 만큼 마땅히 경찰조직전체에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그대로 보도한 방송사측에 공식사과보도를 요청할 수 있을지

요? 또한 경찰가측도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TNTLDK@hitel.net



경찰의 음주진압설 보도에 대해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은 보도의 직접당사자인 경찰관서 단체가 할 수 있으며, 그 가족은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압을 했던 경찰관서의 관계자와 상의하여 중재신청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재신청,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중재신청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중재신청 방법에 대한 글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접수를 하라는 것인지, 인터넷으로 되는 건지 아닌지...

명확한 방법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B@mail.wizit.com



언론중재신청은 서면으로 소정의 언론중재신청서와 중재대상기사(신문기사나 방송의 경우 녹취문과 방송테이프 그리고 게재나 방송을 원하는 정정보도문(혹은 반론보도문)을 작성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지방신문이나 지역방송 지역잡지의 경우는 각 해당 지역 사무소)에 인편이나 우편접수하시면 되며, 팩스나 인터넷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캠페인 방송도 중재대상이 되나요?**

정부가 만약 캠페인을 왜곡하여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나 특정단체가 특정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내용의 캠페인을 10여 년 전에 했다면 그것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의 하나가 공익방송이라는 이름으로 TV캠페인을 통해서 일부사람들의 이익에 치명적 해가 되는 내용의 잘못된 캠페인을 한다면 그것도 언론중재위

원회를 통해서 해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제 생각엔 언론이나 방송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정부에서 일방적 지시로 인하여 어쩔 수없이 방송된 것이므로 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캠페인도 시정 할 수 있나요?  
leejames@hanmail.net



저희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이름테면 뉴스)이라면 중재신청의 대상이 됩니다만, 광고나 기타 언론사의 견해와 상관없는 형태였다면 중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보도된 지 얼마나 지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며, 늦어도 보도가 있은지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귀하의 말씀처럼 10년된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방법이 없군요.

끝으로 저희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시책 등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론보도는 실명으로만 가능한가요?**

저는 잘못된 언론기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언론기사에는 성만 나오고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반론보도문에도 이름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지요? 기사자체가 이름을 실지 않았으므로, 반론보도문에도 기사에 나온 대로 성으로만 표시하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명을 밝혀야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실명을 밝히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상 반론보도를 못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문 보도에 본인의 실명이 게재되지 않았고, 신청인 본인이 반론보도에 자신의 실명이 게

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을 보도

99.11.23. 한 지방일간지에 사기꾼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신문에 게재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2심의 판결 요지대로 신문에 게재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측의 주장을 보도해 삼척동자도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보도기자와 만나 지금 3심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을 하고 반론보도를 신청했으나 보도기자는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일간지의 게재된 내용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phs1201@netsgo.com



귀하께서는 99. 11. 23.자 지방 일간지가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라면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언론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언론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명백히 지났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민법에 의한 정정보다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의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보도 인용



어떤 회사 사이트에 2000년 5월 25일자 모경제신문을

인용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신문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허위 내용인데 신문기사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였지만 위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를 통해 항의하고자 합니다. 야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저의 실명이 내용과 함께 검색되어 오해를 사고있습니다

무책임한 실명거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오보하고 있는 모 사이트에 내용삭제와 함께 정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때 이를 접수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방송법 등에서 언론매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 의한 피해는 저희 위원회가 도와 드릴 수 없습니다.



### 중재불성립결정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재심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이라고 나왔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가 불가능한 사건 심리입니까? 심리가 1차, 2차 길으면 3차까지도 간다던데 중재불성립 결정이면 심리는 이것으로 종결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언론사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지요? 그러면 시시비비는 법원의 소송으로만 가능한지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생**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6항에 의하면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부가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재신청이 접수된 지 14일 이내에 1차 내지 2차에 걸쳐 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불성립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심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는 사건에 따라 다

를 수 있습니다. 중재불성립 결정이 났다고 해서 언론사에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의 최종적인 확인은 법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위원회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Q 언론사의 범위?**

언론이라함은 어디까지 인지요? 예를 들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방송사 등만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사보, 조합일보, 교회소식지 등 전문 언론사가 아닌 일부 한정된 독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발행한 출판물 등도 언론으로 보는지의 여부가 궁금 합니다.

dongm385@yahoo.com

**R 언론이라는 개념은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는 대상 매체는 인쇄매체의 경우 '정기간행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매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기업의 소식지, 학교의 학보 등도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이 정하는 지상파, 위성, 종합유선 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Q 문제의 기사입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울진 주민 이모(34) 씨는, ... 울진 군민들이 모르는 지역주민 대표는 있을 수 없다며, 한 명의 군의원도 참여하지 않고, 고작 10여 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회정책연구소의 원전 분과위원인 조○○ 씨와, 원전반투위도 해체된 상황에서 원전반

투위원장을 지냈던 남○○ 씨 만이 점검단에 합류한 건 대표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질의 첫 번째는 지역주민대표 부분으로 조○○은 지역 주민대표가 아니었는데 기사는 이를 주민대표로 기술하였기에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당일 발언한 이모 씨의 말 중 '고작 십여 명 정도의...'부분은 이모 씨가 현장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는 기자가 임의로 기술한 것입니다. 결국 조○○은 주민대표가 아님에도 주민대표로 되어 대표성까지 의심받았으며, 사회정책연구소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sunsakan@kornet.net

**R 귀하의 메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지역대표가 아님에도 보도에는 지역대표인 것처럼 보도되었고, 울진 주민 이모 씨가 "고작 1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책연구소"라고 발언하지 않았는데 ○○신문이 이말을 넣어 기사화하여 사회정책연구소와 귀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정보도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울진주민 이모 씨가 점검단의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인데, 이모 씨가 귀하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만이 점검단에 참여하여 점검단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는 귀하가 지역대표가 아닌데도 지역대표인 것처럼 보도되었다고 주장하시었는데, 다소 기사를 오해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기사는 귀하를 지역대표라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문이 이모 씨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회정책연구소가 고작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신뢰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했다는 점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정책연구소의 명의로 회원 수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시거나 사회정책연구소가 원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실이 있음을 알리는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중재신청의 종류

#####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

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

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계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계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

**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방 송 법

**제9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결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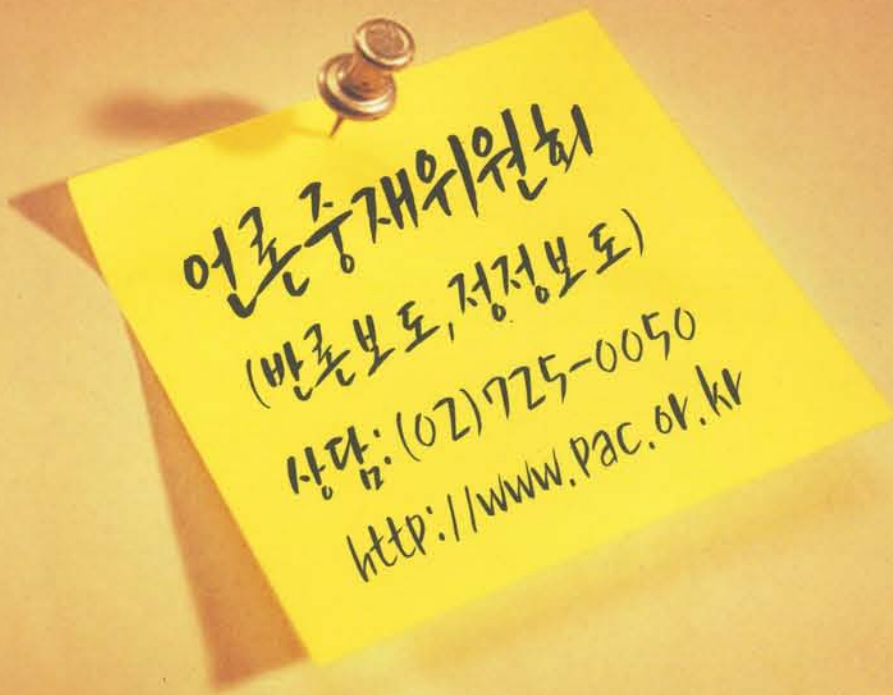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



찾아가기: <http://www.pac.or.kr/>

# 언론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 신청기간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14일(직권 중재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국 15개 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02)725-0050, (02)732-6031

<http://www.pac.or.kr>